

연구보고 2006-0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서 문 희
나 정
최 혜 선

연구보고 2006-0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 방안 연구

서문희
나 정
최혜선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동이다.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고 빈곤이나 하위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일찍부터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정책, 보육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기나 가정의 누구에게서도 그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문별 및 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 없이 이들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이 아동권리 보장의 핵심 이념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도시근로자평균소득 70% 수준까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39%를 정부가 부담하고 61% 정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공적 보육·유아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설별 지원 등으로 정부의 보육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에 드는 부모 부담 비용, 정부의 지원 등에서 소득계층별,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과 여성가족부 「새싹플랜」에는 이러한 집단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의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기본보조의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주체별 격차 등을 완화하고 부모와 아동의 형평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에

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득계층 등 부모 특성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따르는 격차 현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2010년까지의 중장기 육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육아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보다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육아비용 지원정책 추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정부와 보육 및 유아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욱**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내용

- 이 연구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사회적 격차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지원제도 및 재정 투입, 정부 등 비용분담 현황을 시설유형별·지역별로 파악하고 격차 현황 제시
 - 영유아 보육, 교육 등 육아지원서비스와 사교육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과 이에 따른 비용을 소득계층별, 지역별, 모학력 및 직업특성별로 분석하여 제 요인에 따른 집단간 격차 현황 제시
 - 외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중장기 육아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전망과 과제 제시
 -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적정 비용 분담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로 정부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집단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

나. 연구방법

- 연구는 문헌 연구, 기존 조사자료 분석, 정책대안별 시뮬레이션,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추진되었음.
 - 통계청,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종 기존 통계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를 수집·검토함.
 -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 자료 중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 및 영유아에 대한 육아서비스 이용 및 비용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부분적으로 농어촌 지역 보육 재정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및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의 일환으로 발표된 재정 지원 방안,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안에 기초하여 재정규모와 분담정도를 파악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함.

- 관련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정 추계 등을 실시함.
-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2. 영유아 보육·유아교육에서의 사회적 격차 및 대응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 제공에서 현격한 차이를 낳게 되어,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선진국들은 영유아가 출생 이후 부모의 사회적 격차로 인한 차별이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잉글랜드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Fair Start)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저소득층 등 열악한 계층에 대한 교육정책을 교육우선지역 설정으로 접근하는 예로는 프랑스 ZEP, 영국 EAZ 및 EiC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확대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기회는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계층 등 부모 특성별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의 집단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3.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 현황

가.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의 중앙-지방 정부간 및 정부-부모 분담

-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양육비 지원 등 정부의 2005년도 육아 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총 2조 2952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0.29%임. 이는 2002년 0.12%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06년은 0.3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현재 보육예산은 GDP 대비 0.20%, 유아교육예산은 0.08%
- 육아지원 예산의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분담비율은 각각 33.7%, 66.3%임.
 - 보육예산은 중앙 38.4%, 시·도 및 시·군·구가 61.6%를 분담함.
 - 유아교육은 중앙 22.5%, 지방이 77.5%를 부담함.

- 농어민 양육비 지원은 국고와 지방의 분담률은 50:50임.
- 보육과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005년 4조 8171억원으로 추정됨. 이 중 61%를 부모가 부담하고 39%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 보육비용은 정부 분담 40.2%, 부모부담 59.8%로 분석되었음.
- 유아교육 비용은 정부가 34.4%를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함.

나. 육아비용 지원의 운영주체별, 지역별 격차

- 운용주체별 공적자금 투입의 차이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공립에 비하여 부모 부담은 많지만, 1인당 총 소요비용은 더 적음.
- 보육은 2005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만 1세 미만 아동을 보면 정부지원 43만원, 부모부담 30만원으로 총 73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을 받는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 아동은 부모부담은 35만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15만원이므로 보육비용은 총 50만원임. 2006년에 영아의 기본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용의 80% 수준임.
- 유치원도 2005년 원아 1인당 연간 정부 예산이 공립 350만원, 사립 46만 8천원으로 차이가 큼.
- 사업예산의 지역간의 격차도 존재함.
- 보육사업의 경우 2006년도에 시·도 특별사업 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13%인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사업예산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로 가장 높고,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최저 수준임.
- 시·도별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예산은 공립유치원은 전라북도가 연 5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강원도가 높으며 대전이 227만원으로 가장 낮음. 사립유치원은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이 72만원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가 31만원으로 가장 낮음.

4.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이용 및 비용의 격차

가.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소득분위별 이용률은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음.
- 소득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5.8배,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는 3배, 개인양육지원은 약 2배임.

- 비용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보면 육아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영아의 비용 격차가 더 큼.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14.7%로 가장 높고, 10분위는 7.2%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감소함.
 -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0분위가 1분위의 전체는 3.8배, 영아 11.0배, 유아는 3.1배임.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8.6%로 다소 높고, 그 이외는 분위별로 거의 차이가 없음.
- 소득이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15.3%임.
 - 이외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 변수가 유의하여 이들 변수를 포함하면 설명력은 21.5%로 증가함.

나. 가구 단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75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1.9배가 됨.
 - 아동수 1명인 가구는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이 각각 6.6%, 9.2%이고, 2명 이상은 12.4%, 16.4%로 비율이 높아짐.
- 가구 단위 소득 10분위의 총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은 1분위 대비 4.0배로 아동 1인당 비용의 격차 3.8배와 유사한 수준임. 아동수별로는 아동 1인 가구는 4.4배, 아동 2인이상 가구는 3.4배임.
 -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짐. 여기에 영유아수가 포함되면 20.4% 증가하고, 모취업여부 변수를 다시 포함되면 27.0%가 되고 이에 거주지 및 모 학력 변수가 포함되어 29.5%가 됨.
- 영유아 가구 전체의 육아지원비용은 소득 대비 8.4%이고 지출 대비 11.4%임.
 - 전체 가구의 10분위 육아지원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7.9%이고 1분위는 9.8%임. 지출 대비 비율은 10분위 13.3%이고 1분위는 9.3%임.

다. 서비스유형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차이

- 보육교육기관 중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음.
-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음.
 -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아짐.
-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가 높음.
 -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
- 반일제 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고,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서 이용률이 높음.
-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음.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음.
 -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 이용률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임. 방문지도나 그룹지도는 10분위가 타 집단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음.
 -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임. 그러나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은 0.3, 0.6으로 분위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음.
-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함.
 -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 혈연 모두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짐.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임.
 -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함. 유아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 비용의 10분위의 1분위 대비율은 전체는 5.0, 영아는 3.3, 유아는 4.3배임.

5. 외국 국가들의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이용 지원

- 공보육 국가들의 영유아 보육교육 공적재정 투자 규모는 매우 큼.
 - 스웨덴은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 대비 1.7%(2004년)임. 취학 전 교육과 방과후를 포함하면 2.0%로, 총비용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함. 부모 보육료 상한선으로 평균소득 3% 이하로 조정하고 있음.
 - 프랑스 보육비용은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는 부모가 부담함. 유아교육은 무상 공교육으로 1인당 공적비용이 초등학생과 거의 같은 수준임.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 대비 1.0%(2004년)임.
 - 호주는 소득수준별 차등 보육급여로 보육비용의 6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은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로 중앙정부가 주 재원임. 유치원은 지방정부의 시설별 지원 비중이 크고 부모가 22% 정도를 부담함.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 대비 0.45%(2002년)임.
 - 일본 중앙정부는 보육비용의 50%를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부모가 내게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추가예산의 투입으로 실제 부모 부담은 20~30% 수준으로 파악됨. 유치원은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큼.

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계획과 과제

가. 육아비용 지원

1) 대상 아동

-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는 통계청이 2004년에 수정 추계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요율을 추정하였음.
- 보육 수요율은 2010년 42.1% 추정되고, 아동수는 2010년 122만명 정도로 추정됨.
- 유아교육 수요율은 2008년 44.7%, 2010년 52.6%로 추정되고, 유아교육 아동수는 2010년 74만명 정도로 추정됨.

2) 육아 비용 지원 내용 및 소요예산

- 모든 육아기관 이용 아동에게 기본보조 지원

-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는 다수인 민간시설의 낮은 서비스 수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임.
 - 국공립기관에는 일찍부터 인건비 형태로 기본보조 지원이 있음.
 - 여성부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산출한 「표준보육료·교육비」는 보육과 교육이 다르고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이었음.
- 영아는 종전의 영아 지원을 2006년부터 ‘기본보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의하였고, 유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본격 지급한다는 계획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0년에 목표치에 도달함.
- 아동 중 만 2세아는 3.0%, 유아는 8.0%가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소요예산은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는 2008년 2조 2765억원이고, 2010년에 3조 5431억원으로 추정됨.

□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

- 0~4세아 보육료·교육비 재정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어 차등 지원함.
- 0~4세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에 따른 총 비용은 2006년 7410억원이며, 2010년에는 1조 98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됨.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 만 5세아에 대한 지원은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07년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로 만 5세아 전체 아동의 70%를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체 아동의 8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소요 예산은 2006년 5027억원이 2010년에는 7772억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새싹플랜(안)에서 제시된 중앙정부의 12세 이하 장애아 지원아수는 2010년 25,000명임. 장애아 유아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음.
- 소요예산은 2010년도 25,000명의 장애아동 보육에 12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다자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 아부터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비율을 현행 비용의 20%에서 2007년부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50%까지로 확대함.
- 다자녀 육아비용 지원 예산은 2006년 40,000명에 261억원이 아동수 및 지원 비율 증가에 따라 증가해서 2010년에는 993억원으로 추정됨.

□ 농어민자녀 육아 비용 추가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 농지 소유 농·어업인에 대해 부가적으로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함.
- 농어민 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7년 442억원, 2010년 약 398억원으로 추정됨.

□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 새싹플랜(안)에서는 2007년도부터 입양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계획함. 아동 규모는 약 2,000~2,500명의 아동을 목표로 함.
- 2007년에 2,000명 대상으로 만 3세아 보육료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소요 예산이 약 42억원임.

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국공립기관 확충

-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모두 2007년부터 이용아동을 전년도 대비 연 10% 확대함.
- 보육시설 설치 비용은 부지 비용을 포함하여 2010년 예산은 1588억원으로 추정되고, 유치원 신증설 예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 이상 확대하면, 2010년 예산은 132억원으로 추정됨.

□ 종일제 유치원 확대

-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와 시설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강사 수당은 2007년부터 적용함.
- 종일제 유치원의 확대를 감안하여 2007년은 해당 교사의 90%, 2008년부터 대상자에게 연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면 총비용

은 2010년에 1431억원이 됨.

□ 시간연장형 보육 확충

- 시간연장형 교사를 2005년 2,000명에서 2010년 1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함.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여 2007년 520억원 규모이지만 대상 교사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 2006년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및 인구 30만명이하 소도시 소재 사립유치원 교사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학급담임수당을 2008년에 교사의 50%, 2009년 75%, 2010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2010년 아동수를 반당 20명으로 가정하고 해당 유치원 교사수에게 모두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342억원이 소요됨.

다. 성과 및 과제

1) 성과

가) 예산의 확충

-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교육비,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등 7가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규모는 6조 576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내용별로는 기본보조에 가장 많은 53.9%의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차등비용 지원에 30.2%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국공립유치원 인건비 등 시설별 지원을 유아교육 총비용에 포함하고, 이를 기본보조에 포함시키면 총 비용이 7조 793억원 정도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총 비용의 GDP 대비 비율은 0.65%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육아비용 분담 비율이 국민 기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임.
- 보육의 경우 추정 결과를 보면 총 비용은 2006년 정부가 48.1%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에는 총 보육비용은 6조 100억원인데 이 중에서 68.6%를 정부가 부담하고 31.4%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10년 총 유아교육비용은 2조 7793억원인데 이 중에서 78.7%를 정부가 부담하고 21.3%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와 부모의 부담이 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임.

□ 가구의 육아비용 부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임.

- 2010년 기준으로 0세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의 비율이 14.9%~49.7% 수준이지만 정부가 지원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4.4%~8.4%에 분포함.
- 2004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17.7%만이 월평균 가계지출의 5% 이하를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고, 31.7%가 월평균 가계지출의 6~10% 이하를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육아지원 서비스 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는 소득수준이나 조세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규모나 부모와 정부의 부담, 가구소득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이 현재 호주의 지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국민 1인당 GDP는 경상가격 26,000불로 추정함. 이는 OECD 선진국의 2000년 수준임.

나) 서비스 수준 제고

□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됨.

-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됨.

다) 아동, 부모 및 시설간 형평성 증가

□ 공적 부문에서는 아동 1인당 비용, 정부 부담 및 부모 부담의 격차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증가로 설립 운영주체가 다른 시설간의 교사 인건비와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임.

라) 가격규제 예외 등 육아지원기관의 다양성 확대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 나타나게 됨. 기본보조가 고소득계층에도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일부 고소득계층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은 비용을 자율화하여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적 격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망됨.

2) 앞으로의 과제

- 제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 소득별 격차나 시설유형별 격차는 대부분 완화될 것이지만 낮은 지원단가 수준,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지원 차별화, 이용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등이 과제로 파악됨.
- 지역별 격차, 사교육비 격차는 그대로 남게 됨.

7.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향후 정책 대안

가. 기본 방향

- 정부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 달성되면 공적영역에서 소득계층별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장기 방안을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형평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의 부담 완화,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 상향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함.

나. 육아지원 정책 대안

1) 형평성 제고

-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 수정
 - 단기방안으로 소득계층별로 소득 대비 육아서비스 비용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부분 조정함.
 -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육아서비스 비용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2009년 이

후 유아는 2009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30% 가정의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축소하고 영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00% 가정의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5%로 증가시킴.

- 2010년 예산은 정부 예산이 당초안보다 보육은 218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유아 예산은 감소하지만 영아 예산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총 예산은 증가함.

□ 지원체계 일원화 및 차등지원 계층 세분화

- 현재 5계층 차등지원은 동일 계층내 형평성 유지에 한계가 있고,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의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개념 및 행정상 혼돈 초래
- 중장기적으로 차등지원 단계를 세분화하고 기본보조와 차등 지원금으로 나누어 있는 정부 지원을 일원화하여 계층별로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분담액을 매년 정액 또는 비율로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

□ 지역간의 재정 격차 완화

- 지역별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상태를 반영하여 국비 배정 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두어야 함. 중앙정부는 시·도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시·도는 시·군·구 재정상태 차이를 반영하여 재정을 차등화하여 배분하여 지방교육재정도가 균등화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스웨덴의 지방세입 균등화(Income Levelling System)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됨.

□ 사교육 격차 완화

- 소득계층별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전체적인 보육이나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강화하여 부모와 아동의 건전한 특별활동 욕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설별로 지원하거나 또는 부모와 분담이 필요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개인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0년부터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의 실시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함. 0세아와 만 1세아 취업모 자녀에 한하여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 조부모, 친인척 등이 일정 기간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함.

- 0세아와 만 1세아의 약 10%인 6만명 정도에게 보육 기본보조에 준하여 연간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 240억원 정도가 필요함.

2) 효율성 제고

□ 모 취업여부 등 조건에 의한 이용시간 이원화

- 모 취업여부별 등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이용시간과 비용을 종일제와 연장제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 이 경우 재정 부담 축소 규모는 2010년 3881억원임.

3)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 완화

□ 영아 보육료 상한제와 이용시간 이원화 및 부모부담 상한제

- 만 2세아 보육료인 25만원(2005년 기준)을 상한액으로 하여 0세아와 만 1세아의 부모부담을 만 2세아 부모 부담액과 동일하게 하고 차액은 모두 기본보조로 지원함. 앞에서 제안한 이용시간 이원화에 따른 보육비용의 이원화를 그대로 적용함.
- 이 경우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에 비하여 2010년도에 3302억원이 감소됨.

□ 취업모 지원

- 모의 취업여부가 육아비용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육료나 교육비 소득공제 이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음.
- 취업여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바람직함.

□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

- 출산력 제고 방안의 관점에서 2008년부터 출생순위만으로 두 자녀는 50%, 세 번째 자녀는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함.
- 기존 부모 부담 중 22.7% 정도를 부모 대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이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함.

4)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교사 근무여건 개선

- 육아지원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대체인력 결여로 인한 휴가나 교육 불참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인력을 확

보험.

-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대체교사 확보 2가지 요인이 모두 개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보육은 인건비는 27.8%의 상승효과가 발생함. 이렇게 할 경우 정부의 총 보육비용은 7조 5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소요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209억원이 증가되고 부모 부담도 동일하게 증가됨. 그러나 총 비용 대비 정부의 부담 비율은 2.84%가 낮아질 전망이다.
- 유치원 교사는 담임수당을 중장기 방안에 포함함.

8. 맺는 말

-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상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부모는 비용의 30%만을 부담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0년 우리는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26,000불로 추정한다면 소득수준 대비 육아지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성과는 몇몇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육비용 지원을 모두 달성하려면 2010년 기준으로 단년도에 6조 6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함.
- 앞으로는 서비스 수준 향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활용여부가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5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9
II. 양극화와 육아분야에서의 대응	11
1. 양극화의 개념 및 현황	11
2.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교육 지원 정책	19
III.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27
1. 육아비용지원 제도	27
2. 육아지원 재정	35
3. 정책시사점	52
IV. 제 특성별 육아지원 이용 및 비용 격차	54
1.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54
2.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70
3.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및 비용	79
4. 정책시사점	101
V. 외국의 육아비용 지원	104
1. 스웨덴의 육아비용 지원	105
2. 프랑스의 육아비용 지원	109
3. 호주의 육아비용 지원	114
4. 일본의 육아비용 지원	122
5. 정책시사점	127

VI.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계획과 과제	128
1. 육아비용 지원	128
2.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150
3. 성과와 과제	154
VII.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향후 정책 대안	170
1. 기본 원칙과 정책 대안 개요	170
2. 형평성 제고 방안	173
3. 효율성 제고 방안: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방안	181
4.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완화 방안	187
5. 서비스 질적 기준 제고 방안: 교사근무 여건을 중심으로	192
VIII. 맺는 말	195
참고문헌	197

표 목 차

〈표 I-2- 1〉 소득분위별 소득 인정액 상한기준 및 평균 가구소득	4
〈표 II-1- 1〉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경상소득	14
〈표 II-1- 2〉 연도별 지니계수	14
〈표 II-1- 3〉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보충교육비 지출)	17
〈표 II-2- 1〉 We Start 사업 사례(안산 초지동)	24
〈표 II-2- 2〉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 중심 교육사업	26
〈표 III-1- 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28
〈표 III-1- 2〉 소득수준별 ·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30
〈표 III-1- 3〉 보육료 지원 아동: 2003~2005	31
〈표 III-1- 4〉 교육비 지원 아동: 2004~2005	32
〈표 III-1- 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4~2006	33
〈표 III-1- 6〉 보육·교육비 지원체계: 2006	34
〈표 III-2- 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35
〈표 III-2- 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6	36
〈표 III-2- 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36
〈표 III-2- 4〉 보육 예산: 2002~2006	37
〈표 III-2- 5〉 유아교육 예산: 2002~2006	37
〈표 III-2- 6〉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 내역: 2004~2005	37
〈표 III-2- 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6	38
〈표 III-2- 8〉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39
〈표 III-2- 9〉 2005년 총 육아지원,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GDP 대비 비율	39
〈표 III-2-10〉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2~2005	40
〈표 III-2-11〉 교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41
〈표 III-2-12〉 육아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41
〈표 III-2-13〉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분담(2006년 기준)	44
〈표 III-2-14〉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교육비 지원액	44
〈표 III-2-15〉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교육비(2003년 세출 기준)	45
〈표 III-2-16〉 보육 및 유아교육 국고지원 사업비 중앙 및 지방 분담 비율	45

〈표 III-2-17〉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47
〈표 III-2-18〉 시·도별 보육예산 중앙-지방 분담 현황: 2006	48
〈표 III-2-19〉 시·도별 보육사업 총예산 및 아동 1인당 예산: 2004, 2005	49
〈표 III-2-20〉 읍·면지역 시설유형별 보육료	50
〈표 III-2-21〉 시·도별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4~2006	51
〈표 III-2-22〉 시·도별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5	52
〈표 IV-1- 1〉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55
〈표 IV-1- 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56
〈표 IV-1- 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57
〈표 IV-1- 4〉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58
〈표 IV-1- 5〉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59
〈표 IV-1- 6〉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1
〈표 IV-1- 7〉 영아와 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1
〈표 IV-1- 8〉 전체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62
〈표 IV-1- 9〉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 아동 지역별 비용 및 비율	62
〈표 IV-1-10〉 취업모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62
〈표 IV-1-11〉 전체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3
〈표 IV-1-12〉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4
〈표 IV-1-13〉 전체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64
〈표 IV-1-14〉 비용 지불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율	65
〈표 IV-1-15〉 취업모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율	66
〈표 IV-1-16〉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6
〈표 IV-1-17〉 영아와 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67
〈표 IV-1-18〉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68
〈표 IV-1-19〉 비용 지불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68
〈표 IV-1-20〉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69
〈표 IV-1-21〉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70
〈표 IV-1-22〉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70
〈표 IV-2- 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률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1
〈표 IV-2- 2〉 영유아 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2
〈표 IV-2- 3〉 모취업 가구 영유아수 및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3

<표 IV-2- 4> 전체 가구 영유아 수 및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4
<표 IV-2- 5> 취업모 가구 영유아 수 및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4
<표 IV-2- 6> 영유아 가구 영유아 수 및 가구주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5
<표 IV-2- 7> 취업모 가구 영유아 수 및 가구주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5
<표 IV-2- 8> 영유아 가구 영유아수 및 가구주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6
<표 IV-2- 9> 취업모 가구 영유아수 및 가구주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6
<표 IV-2-10>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 회귀분석 최종모형	77
<표 IV-2-11>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78
<표 IV-2-12>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78
<표 IV-3- 1> 영유아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2004	80
<표 IV-3- 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기관 이용률	80
<표 IV-3- 3>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82
<표 IV-3- 4> 영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3
<표 IV-3- 5> 영아와 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3
<표 IV-3- 6> 영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84
<표 IV-3- 7>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5
<표 IV-3- 8>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5
<표 IV-3- 9>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86
<표 IV-3-10>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7
<표 IV-3-11> 영아와 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8
<표 IV-3-12>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88
<표 IV-3-13>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89
<표 IV-3-14>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90
<표 IV-3-15> 소득계층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92
<표 IV-3-16> 지역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93
<표 IV-3-17> 모 학력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94
<표 IV-3-18> 모 직업특성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94

〈표 IV-3-19〉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95
〈표 IV-3-20〉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97
〈표 IV-3-21〉 지역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98
〈표 IV-3-22〉 영아와 유아 지역별 개인양육지원 이용 비용 및 비율	98
〈표 IV-3-23〉 모 학력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99
〈표 IV-3-24〉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100
〈표 IV-3-25〉 모 직업특성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100
〈표 IV-3-26〉 영아와 유아 모 직업특성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101
〈표 V-1- 1〉 스웨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106
〈표 V-1- 2〉 스웨덴 부모부담 비용	107
〈표 V-1- 3〉 가족 및 소득특성별 부모부담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107
〈표 V-1- 4〉 스웨덴 국가 지원 아동수당: 2006	108
〈표 V-1- 5〉 육아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109
〈표 V-2- 1〉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110
〈표 V-2- 2〉 프랑스 보육 유형별 이용률 및 비용: 2002	112
〈표 V-2- 3〉 프랑스 아동 및 가족 수당제도	113
〈표 V-3- 1〉 호주의 3~5세 유치원 이용률과 0~4세미만 아동 보육 이용률: 1996~2005	115
〈표 V-3- 2〉 호주의 연도별 종일제 보육시설 1주일 보육료: 1995~2004	116
〈표 V-3- 3〉 호주의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116
〈표 V-3- 4〉 호주의 0~12세 아동 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별 부모 부담: 2005	120
〈표 V-3- 5〉 호주의 영유아 이용서비스별 주당 비용 부담 분포: 2005	120
〈표 V-3- 6〉 호주의 가족조세급여 A형 최대 수준: 2005~2006	121
〈표 V-4- 1〉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	124
〈표 V-4- 2〉 연간 일본 유치원 교육비	125
〈표 V-4- 3〉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비 부담 기준	126
〈표 V-4- 4〉 일본 요코하마시 보육운영비: 2006	126
〈표 V-4- 5〉 유치원 비용 분담: 2003	126
〈표 VI-1- 1〉 영유아 인구수 추정: 2006~2010	128
〈표 VI-1- 2〉 보육수요율 추정: 2006~2010	129
〈표 VI-1- 3〉 보육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130
〈표 VI-1- 4〉 유아교육 수요율 추정: 2006~2010	131
〈표 VI-1- 5〉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131

〈표 VI-1- 6〉	보육시설 이용여부별 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132
〈표 VI-1- 7〉	유치원 이용여부별 유치원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132
〈표 VI-1- 8〉	표준보육료 및 교육비	133
〈표 VI-1- 9〉	보육·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133
〈표 VI-1-10〉	연차별 민간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금 지원 계획	135
〈표 VI-1-11〉	연차별 시설유형별 영아 보육비용	136
〈표 VI-1-12〉	연차별 시설유형별 유아 보육비용	136
〈표 VI-1-13〉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는 비율	139
〈표 VI-1-14〉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	139
〈표 VI-1-15〉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1	140
〈표 VI-1-16〉	연령별 보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1	141
〈표 VI-1-17〉	연령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소요예산 추정1	141
〈표 VI-1-18〉	영아와 유아 기본보조 소요예산 총괄 추정1	141
〈표 VI-1-19〉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2	142
〈표 VI-1-20〉	연령별 보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2	143
〈표 VI-1-21〉	연령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소요예산 추정2	143
〈표 VI-1-22〉	영아와 유아 구분 기본보조 소요예산 총괄 추정2	143
〈표 VI-1-23〉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비교: 0~5세	144
〈표 VI-1-24〉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안)	144
〈표 VI-1-25〉	보육과 유아교육 차등보육료·교육비 소요예산 추정: 0~4세	145
〈표 VI-1-26〉	영아와 유아 차등보육료·교육비 소요예산 추정	145
〈표 VI-1-27〉	5세아 무상보육·교육 소요예산 추정	146
〈표 VI-1-28〉	장애아 보육 지원 비용 추정	147
〈표 VI-1-29〉	다자녀 육아지원 비용 추정	148
〈표 VI-1-30〉	농어촌 육아지원 비용 추정	148
〈표 VI-1-31〉	국내외 입양아수	149
〈표 VI-1-32〉	연도별 입양아 무상보육·교육 대상 아동	150
〈표 VI-2- 1〉	연도별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확충	151
〈표 VI-2- 2〉	연도별 종일제 운영 지원	152
〈표 VI-2- 3〉	연도별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	153
〈표 VI-2- 4〉	연도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	154
〈표 VI-3- 1〉	보육·교육비용 소요예산 총괄	155
〈표 VI-3- 2〉	보육·교육비용 지원 소요예산 총괄	155

〈표 VI-3- 3〉 보육비용 추정	156
〈표 VI-3- 4〉 유아교육비용 추정	157
〈표 VI-3- 5〉 연령별 보육비용 분담 추정1: 2010	158
〈표 VI-3- 6〉 연령별 사립유치원 비용분담 추정1: 2010	158
〈표 VI-3- 7〉 제 특성별 보육·교육 비용 중 정부 부담의 적정비율에 대한 의견 ...	159
〈표 VI-3- 8〉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 비율: 2006, 2010	159
〈표 VI-3- 9〉 월평균 가구 지출 대비 양육지원서비스 비용 비율에 대한 의견	162
〈표 VI-3-10〉 각국의 연도별 국민 1인당 GDP 비교	163
〈표 VI-3-11〉 각국의 연도별 육아지원 재정의 GDP 대비 비율 비교	164
〈표 VI-3-12〉 각국의 평균 근로비용 대비 조세 비율 비교	164
〈표 VI-3-13〉 일본 표준보육단가 산출 항목	167
〈표 VII-1- 1〉 제시된 정책 대안	172
〈표 VII-2- 1〉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과 대안	174
〈표 VII-2- 2〉 보육과 유아교육 소득수준별 차등 소요 예산: 2009~2010	175
〈표 VII-2- 3〉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소요 예산 비교: 2009~2010	175
〈표 VII-2- 4〉 소득단계별 소득 및 소득 대비 부모 부담 비용 비율의 최소 최대: 만 2세아, 2009년	176
〈표 VII-2- 5〉 영아 보육비용의 정부와 부모 분담: 2007	177
〈표 VII-3- 1〉 영아와 유아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	181
〈표 VII-3- 2〉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182
〈표 VII-3- 3〉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183
〈표 VII-3- 4〉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183
〈표 VII-3- 5〉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비용 절감 비율	185
〈표 VII-3- 6〉 취업여부별 보육시간과 비용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186
〈표 VII-3- 7〉 취업여부별 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186
〈표 VII-3- 8〉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187
〈표 VII-4- 1〉 연차별 영아 기본보조 지원 계획	189
〈표 VII-4- 2〉 연차별 영아 부모 비용 감소 및 기본보조 증가 규모	189
〈표 VII-4- 3〉 영아보육비용을 만 2세 수준으로 통일 시 소요 예산: 0~1세(2008~2010)	190

〈표 VII-4- 4〉 영아보육비용 만 2세 수준으로 통일 시 소요예산 비교: 0~1세(2008~2010)	190
〈표 VII-5- 1〉 정원 79명 보육시설 기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보육비용 상승	194
〈표 VII-5- 2〉 정원 79명 보육시설 기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보육비용 상승	194
〈표 VII-5- 3〉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위한 상시교사 도입에 따른 보육비용 분담	194

그 립 목 차

[그림 II-1-1] 학력별·임금계층별 근로자 구성비	16
[그림 II-1-2] 연도별·학력별 임금수준 분포	16
[그림 III-2-1]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40
[그림 III-2-2] 유아교육·보육 재정 구성도	42
[그림 IV-1-1]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55
[그림 IV-1-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57
[그림 IV-1-3] 비용 지불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59
[그림 IV-1-4] 취업모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60
[그림 IV-2-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71
[그림 IV-3-1]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81
[그림 IV-3-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82
[그림 IV-3-3]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86
[그림 IV-3-4]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과 사교육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92
[그림 IV-3-5] 전체 및 비용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96
[그림 IV-3-6] 개인양육지원 비용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97
[그림 V-3-1] 호주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 체계도	117
[그림 V-3-2] 호주의 아동보육급여 지급 전후 주당 가처분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비 비율	119
[그림 VI-1-1]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구성도: 2007	134
[그림 VI-1-2] 0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분담 비율 변화	137
[그림 VI-1-3] 만 3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분담 비율 변화	137
[그림 VI-3-1] 각 연령별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율: 2006, 2010	161
[그림 VII-2-1] 당초안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173
[그림 VII-2-2] 대안 시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1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는 주로 경제양극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 주거, 건강 등이 결합되는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4분기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의 가구소득이 하위 10% 가구소득의 18배이고, 사교육비는 10배가 된다.

양극화 현상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동이다.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고 빈곤이나 하위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은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과 관심의 결여, 문화 결손 및 박탈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교육과 복지 차원의 조기중재가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39%를 정부가 부담하고 61% 정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공적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설별 지원 등으로 정부의 보육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에 드는 부모 부담 비용, 정부의 지원 등에서 소득계층별,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계층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고 그 대상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소득계층별 보육서비스 및 유아교육 이용 형태나 소득 대비 비용 부담 비율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소득계층 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제 특성에 따라서도 보육서비스 및 유아교육 이용과 비용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기관간의 격차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인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각기 다른 제도의 적용으로 지원의 규모, 재원이나 지원방식이 서로 다르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각각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도 설립, 운영 주체별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시설 및 일부 전담시설 중심이고 그 외 시설은 시설별 지원이 없다. 따라서 보육료가 이중구조이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시설 및 일부 전담시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설별 지원이 없는 민간시설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나 부모의 국공립시설 선호도를 고려하면 이는 시장체계로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다. 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정부 지원이나 교사 신분상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아동 1인당 비용, 부모 비용부담 및 정부의 지원에 차이가 나서 부모 부담 비용과 서비스 수준이 모순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되어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에 많은 격차가 있다. 보육의 경우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특별시는 지방정부의 특별사업의 비중이 국고 지원사업의 60%를 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은 이러한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서의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기본보조의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이용 기관의 운영 주체별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육아분야에의 격차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과, 또한 정부의 중장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따르는 소득계층별, 지역별, 모의 특성별 격차 현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지원제도 및 재정 투입, 정부 등 비용분담 현황을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파악하고 격차 현황을 제시한다.

둘째, 영유아 보육, 교육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아동단위, 가구단위 및 서비스유형별로 이용률과 이에 따른 비용을 소득계층별, 지역별, 모학력별, 모 취업여부 및

직종별로 분석하여 제 요인에 따른 집단간 격차 현황을 제시한다.

셋째, 외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정부의 중장기 육아지원 계획안을 검토하고 적절성 관점에서 전망과 과제를 논의한다.

다섯째, 형평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모형을 제시하여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단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나. 연구방법

1) 기존 국내 보육료 지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가계조사, 여성가족부의 보육통계,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통계 등 국내 기존 통계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를 수집·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외국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정책 및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제도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2) 2004년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 및 영유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표본조사구에서 11,7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¹⁾로, 이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아동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비용이고, 독립변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모의 사회적 특성, 거주지역 등이다. 복지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은 두 시점간의 소비와 재산권의 가치변동, 즉 소비와 경제력의 순 증가분의 합이라고 정의된다(이정우, 1997). 보다 실질적으로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의미한다(통계청, 2002). 본 분석에서는 소득 조사자료의 한계 상²⁾, 자산을 고려

1) 2004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전국 200개 표본조사구 11,7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3,560 가구였고 이 중에서 94.6%에 해당하는 3,369 가구 및 여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 5,474명에 대한 보육실태 및 육구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로 표본은 전국 대표성을 가짐.

2)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이 일정한 소득수준(예를 들어 200만원, 250만원 등)에 집중 분포되어 10분위 구분이 어려움.

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였다.³⁾ 소득인정액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나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⁴⁾

〈표 1-2-1〉은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소득인정액 10분위 상한액과 각 분위별 평균소득, 그리고 2004년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근로자 소득 10분위별 평균 경상소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본 조사가구의 평균소득이 다소 낮다. 이는 본 자료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통계청 조사 대상 가구보다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표 1-2-1〉 소득분위별 소득 인정액 상한기준 및 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소득인정 분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본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92.2	150.7	197.4	241.7	291.3	355.6	424.6	533.5	726.3	-	-
본 가구 평균소득	80.6	133.1	170.0	199.0	223.8	256.1	288.4	342.2	404.8	557.1	271.9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경상소득	75.1	139.3	180.0	213.5	246.5	282.7	326.1	379.4	457.1	673.6	297.4

자료: 통계청, KOSIS

여성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모의 학력 변수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이하대학, 4년제이상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모의 취업 및 직종변수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노무직,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서의 집단간 차이 및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육아 지원 계획에 기초한 모형별 시뮬레이션

현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차등보육료·차등교육비 지원과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등 재정 지원 계획 및 방안에 기초하여 비용 지

3)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소득: 귀택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각종 정부 보조금, 친지·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004년 예상되는 연 소득을 추정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 주십시오.

자산: 200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귀택의 재산(동산, 소유/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은 얼마나 되는지요? (* 재산 산정 시 부채를 감안하여 계산)

4)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text{소득} + ((\text{재산추정액} - 3000\text{만원공제}) * 0.0417/3)$ 임.

원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정하고, 부모와 정부간의 재정 부담 정도를 파악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비용의 부담 모형을 제안하고, 모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정 추계 등을 실시하였다.

4)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전화조사

취약지역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읍·면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350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유형별 보육료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5)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학계와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회의와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육아지원 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재정 및 단가에 관한 연구, 집단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관련 연구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재정 규모 및 단가 관련 연구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연구로는 재정규모나 정부의 부담률을 추정한 연구들이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재정 규모는 총 2조 3,000만원정도 이고,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수준은 2004년 기준으로 3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서문희 외, 2005).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나정 등(1996)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총 재정을 8조 9,680억원으로 추정하고 당시 정부 부담률 42.1%는 58.9%로, 학부모 부담율 52.4%는 37.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유아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당시 교육예산의 1% 수준인 유아교육 예산 1,749억원을 2005년까지 4% 수준인 14,169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나정 외, 1997). 최근에는 정미라 등(2005)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무상교육, 접근성 확보, 서비스 제고 및 지원체제 구축 등에 5년간 총 7조 742억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유아교육이 1984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자율화한 데 비하여, 보육료는 지방정부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는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보육비용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우선 표준보육비용⁵⁾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요인들의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시 최초로 산정된 이후 재산정 없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액시켰는데, 그 비율이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니 단가가 낮게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보육시설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교사 실제 경력에 비하여 낮은 호봉을 보육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변용찬 외, 1998; 이상헌, 1999). 이외에도 대체교사 인건비가 고려되지 않은 문제, 보육아동 급식비를 시설 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이상헌, 1999; 정영숙, 1996; 조홍식, 1995), 또한 연령별로 보육료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서문희, 2002; 이상헌, 1999) 등이 지적되었다.

표준비용을 산정하려는 연구로는, 삼성복지재단(2000)에서 서울특별시 표준보육비용을 39인형, 79인형, 131인형으로 구분하여 최저 및 표준으로 구분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고, 변용찬 등(2002)은 시설규모별⁶⁾로 구분하여 연령별 보육료를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도 1984년(이연섭, 1984)에 시작하여 1994년(중앙교육심의회)부터는 초중등학교 교육비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공은배 외, 1995, 2001, 2005). 유치원 표준교육비에 대한 접근으로, 강경석 등(2001)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필수경비의 관점에서 교육비를 산출하고, 공은배 등(2005)은 일정 규모의 학교가 교직원, 시설설비 등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최저 비용으로 규정하고, 교수-학습활동경비와 공통운영경비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2005년(박기백 외, 2005)에는 여성부가 지원한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보육료와 교육비를 전면 재산정하여, 각각 연령별, 시설규모별로 2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료와 교육비를 함께 다루었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는 데서 종전 연구들과 차별된다.

2) 사회적 격차 및 지원 관련 연구

보육 및 유아교육분야에서 집단간 격차 관련 연구로 소득계층과 관련된 연구들

5) 표준보육단가는 1992년도에 산정되어 중앙정부가 제시하다가 2000년부터는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만을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보육료 상한기준은 시·도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그러나 사실상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는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이고 과거 중앙에서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이 각 시·도의 보육료 상한선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6) 소규모(32인형), 표준형(79인형), 대규모 시설(131인형)로 구분함.

이 비교적 많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서문희(2001)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소득수준이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및 학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소득수준별 영아와 유아 육아기관 이용 비용 규모 및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4년(서문희 외, 2005)에는 부모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 정도를 검토하고 소득계층별 보육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 2003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 구조화된 분석틀에 의한 정책 검토, 외국의 차등보육료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등의 방법으로 현 보육료의 산출 근거 및 새로운 산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차등보육료 확대 실시 모형을 개발하여 모형별 장단점을 제시하고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1997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의 선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구 증감률, 노령화 지수, 시설 수용률 등과 연계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 지역을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연구를 실시하였다(나정 외, 2001). 2003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나정 등(2004)은 서울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영유아 부모 면접 실태조사, 유아의 일과 관찰 조사, 외국 저소득층 지역복지사업 파악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의 가정환경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일과와 부모의 자녀 교육실태 파악, 저소득층 지역 보육·교육기관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일반지역 및 저소득지역의 유아 일과를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재택 등(2004)도 부산지역 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영유아의 교육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 외에, 이혜영 등(2002)이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욕구 조사의 일부분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시간운영과 교육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박기백 등(2005)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가구를 소득 10분위별로 비용지출 가구 영유아의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4가지 유형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보육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보육재정 지원 방식의

문제와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여 왔다. 즉,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만큼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반면에 민간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받아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는 이론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재정수지는 맞추어져 있으나, 불평등 그 자체가 불러오게 되는 재정수지상의 괴리는 이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설 차원에서 운영비 수준의 차이를 계수로 환산하여 민간시설의 수입은 실제 보육료와 현원율을 적용하면 수입상대지수는 0.77이 된다(서문희 외, 2002).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아동별 지원방식이 제기되어 왔고(백선희·김교성, 2001; 변용찬 외, 1998; 서문희 외, 2002), 2004년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보고한 제1차 육아지원방안에서 이를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 1997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유아교육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국공립 수준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하되,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후 1999년 후반기부터 도입된 만 5세 무상유아교육은 보육까지 확대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한 유아의 부모에게 일정액의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⁷⁾ 또 나정(2005)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에 공적재정지원을 받는 유아의 비율 및 유아 1인당 교육비와 보육료에서의 격차,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교육비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비간의 격차가 큼을 지적하고 재정지원 측면에서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는 시·도별 특수사업 규모나 보육아동 1인당 보육비용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서울을 제외한 일률적 재정분담률이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재정분담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백선희·김교성, 2001; 서문희 외, 2005).

나. 기존 연구와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주로 소득계층별 차이를 완화하는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모 학력별, 모 취업여부 및 직종별, 지역별 격차를

7) 행정편의상 유치원에서 일괄 수령함.

분석하고, 격차를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보육·교육의 재정지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단간 형평성 제고 및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2006년부터 민간시설 영아보육 지원이 기본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고, 차등보육료도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연구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박기백의 연구가 2004년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박기백의 연구는 가구 단위로 4가지 종류의 기관 이용에 드는 가구당 총 비용만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를 소득수준에 한정하였으므로 연구의 범주나 내용면에서 본 연구와 차별된다.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명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양극화 관련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과제명에서는 양극화 용어 대신에 사회적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양극화가 상하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쏠리는 현상을 설명한다면 격차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 제도권 영역에서 그동안 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르는 보육이나 유아교육 기회의 제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소득계층이나 시설유형 등 제 기준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육아는 그 범주를 제도권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학원, 선교원 등 유사 보육·교육기관, 혈연·비혈연에 의한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 그리고 특기나 보습을 위한 학원, 개인교습과 같은 사교육 영역도 모두 연구범주에 포함하였다.⁸⁾ 이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모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8)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서는 부모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공부방, 초등학교 방과후, 문화센터 등 기타 기관 등 8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타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 3가지 비혈연 보육제공자, 개별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및 기타 등 총 20개의 자녀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음. 반일제이상 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을 의미하며, 일반학원은 피아노, 미술처럼 특정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이용하는 학원임.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보습학원도 일반학원에 포함하였음. 동일한 하나의 학원에서 대상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구분임.

는 서비스 부분에서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가도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보조」와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관련하여 아동 1인당 들어가는 총비용을 보육비용으로 표기하고, 이 보육비용 중 정부가 아동에게 자산조사 없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기본보조로 개념화하고,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정부와 부모가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을 보육료로 개념화하였다. 즉,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기본보조 제도는 당초 보육의 경우 아동별 지원으로의 지원방식 일원화를 전제로 구상되었으나,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에 인건비 지원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서 기본보조 비용인 보통명사로서의 기본보조금이 민간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고유명사화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유아교육 비용을 「기본보조」로 표기하고 민간시설 기본보조는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으로 표기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향후 정책 대안들의 전망, 과제 및 시행을 위한 문제 극복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남긴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II. 양극화와 육아분야에서의 대응

1. 양극화의 개념 및 현황

가.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polarization)는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사회 내의 집단이 상하양극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결과적으로 소득, 지위, 기회 측면에서 중간층의 축소 혹은 소멸, 그리고 상층과 하층 지위의 고정화, 즉 계층이동의 차단현상이 모두 포함된다. 즉, 중간층은 약화되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분리된다.

양극화는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경제 양극화이다. 이는 소득이나 임금이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나누어지고 그 차이가 증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양극화는 주로 사회적 기회 혹은 지위의 양극화를 지칭한다. 즉, 인종, 교육, 주거, 의료, 복지, 성 등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기회와 지위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내의 약자 소외그룹이 고착화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경제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김홍중, 2005).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시된 이후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기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채택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던 각 나라들이 경기회복 이후에도 빈곤율이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장기실업 청년 실업층이 등장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신빈곤이라는 용어 이외에 사회적 자격 박탈, 사회적 분리, 사회적 절연 등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 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또한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회적 기본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중 구조 사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중구조 사회가 되면 계급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사회의 역동성이 낮아지며, 사회 통합성을 저해하여 사회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 가능성이 높다(강영혜 외, 2005).

나. 양극화의 현상 및 원인

사유재산제가 도입된 이후 거의 모든 사회는 부자와 빈자 간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1970년대부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 전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영역에서 다면적·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빈곤탈출을 돕고 있다. 영국은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의 임금격차가 양극화로 작용하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를 통해 숙련노동의 비율을 늘리려는 정책을 사용해 왔으며, 고등교육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독일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이탈리아는 지역간 격차, 아일랜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양극화 현상 등 양극화의 형태는 다양하다(김홍중, 2005).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후 양극화가 진전된 데에는 무역자유화, 기술변화, 자본자유화, 고령화,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극화는 지식 및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개인간 소득격차의 심화를 기본으로 한다. 즉,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지식격차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격차가 심해지고 시장경쟁이 치열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승자독식의 원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양극화 현상의 특성은 경기순환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 위기를 겪은 국가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김홍중, 2005; 삼성경제연구소, 2006).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배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처방

을 한꺼번에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양극화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면, 양극화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① 단순노동자 재교육 기능 강화, ② 빈곤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지원, ③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한 고급기술인력 양성, ④ 중소기업(SMEs)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실시하고 있고, 기존의 양극화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① 절대빈곤층의 해소를 위해 빈곤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강화, ②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증대 유도 등이 있다(김홍중, 2005).

다.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되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양극화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선진국에서는 개별적으로 나타는 양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크다(김홍중, 2005).

최근에 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는 주로 경제 양극화로, 소수의 국민이 다수의 부를 차지한다는 경향과 연결된다.⁹⁾

양극화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임금, 교육 분야에 한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에서는 불평등과는 차별되는 양극화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임금이나 교육 영역은 양극화 개념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격차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소득의 양극화

경제양극화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빈곤¹⁰⁾이나 불평등¹¹⁾ 현상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1분위와 10분위의 소

9) 이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Federico Damaso Pareto)가 말한 “파레토의 원칙(Pareto Principle)”, 혹은 “80:20 법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음. 파레토는 1906년 이탈리아 토지의 80%를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그 후 파레토는 이 80%와 20%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파레토의 원칙(Pareto Principle)”, 혹은 “80:20 법칙”으로 알려지게 됨. 이는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 중 20%에서 비롯되었다는 법칙임. 즉, 부, 노력, 투입량, 원인의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부, 성과, 산출량,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임.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향, 국민의 20%가 전체 부(富)의 80%를 차지하는 경향, 직장에서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는 경향 등이 그것임. 그러나 파레토의 원칙은 단순히 ‘힘없는 주류’와 ‘강한 비주류’ 사이의 현상을 증명한 것만은 아니고, 인간이 이런 객관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를 반증하기도 함.

10)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임. 그러나 빈곤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이외에 주관적인 빈곤, 정책적으로 정한 이론적 빈곤 등 그 개념이 다양함(여유진 외, 2005).

11) 불평등 개념은 자원의 분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불평등 상태의 완화가 반드시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이준규, 1992).

득격차, 지니계수, 빈곤율¹²⁾ 등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양극화는 이러한 빈곤이나 불평등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최근에 소득의 양극화 및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자료로 1분위 소득과 10분위 소득을 비교하는 자료를 분기별로 발표하여 왔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4분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686만 5,495원이고,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은 37만 6,714원으로, 10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18.2배이다.

〈표 II-1-1〉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경상소득

단위: 원

소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4분기)
1분위	373,719	401,271	415,577	376,714
2분위	995,230	1,047,520	1,060,841	1,047,025
3분위	1,415,969	1,480,170	1,514,425	1,505,597
4분위	1,765,130	1,852,919	1,916,819	1,922,757
5분위	2,069,680	2,189,537	2,270,225	2,312,122
6분위	2,402,657	2,550,941	2,660,166	2,726,005
7분위	2,805,804	2,974,113	3,099,172	3,191,090
8분위	3,285,653	3,508,013	3,636,699	3,740,335
9분위	4,015,394	4,266,219	4,415,871	4,558,031
10분위	5,977,623	6,335,004	6,570,547	6,865,495
평균	2,510,852	2,660,768	2,756,250	2,824,634
10분위/1분위	16.0	15.8	15.8	18.2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 결과.

〈표 II-1-2〉 연도별 지니계수

구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임금소득	0.301	0.273	0.288	0.301	0.303	0.305	0.312	0.314
가계소득	0.295	0.284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에 대한 완전균등선과 실제 소득의 누적분포 곡선(로렌즈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냄(0: 완전균등, 1: 완전불균등).

자료: 통계청(2004). 2004년 임금구조 실태 분석.

12) 빈곤율은 빈곤선으로 정하여 전체 대비 그 이하 계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선은 국가나 국제기구마다 차이가 있음.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2004년에 0.314로 나타났으며 1997년 0.278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임금소득 불균등도가 심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가계소득 지니계수도 1999년 급격하게 증가된 후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2004년에 0.310을 기록하며 2003년보다 증가하였다(통계청, 2004).

또한, 소득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의 40~60%를 빈곤가구로 보고 이 비율의 증감을 주시하여 왔다.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의 빈곤가구의 비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6년 8.7%에서 2000년 13.0%, 2003년 15.5%로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4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에도 2003년 10.5%를 넘어서고 있다(여유진 외, 2005).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6)는 소득의 양극화를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 극단으로 밀집되는 현상으로 소득 불균형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전체소득에 대한 각 소득계층간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나 소득분배율로 양극화를 측정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연구소에서는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Wolfson지수나 ER(Estaban & Ray) 지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이후 1993년까지 양극화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1993년 이후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2001년 이후에는 양극화 지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1997년 이후 중산층이 5.3%p 감소한 반면에 하위층은 3.7%p, 상위층은 1.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병유(2005)도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1997년 이후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지니계수에 비하여 양극화 지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고 보고하였다.

2) 학력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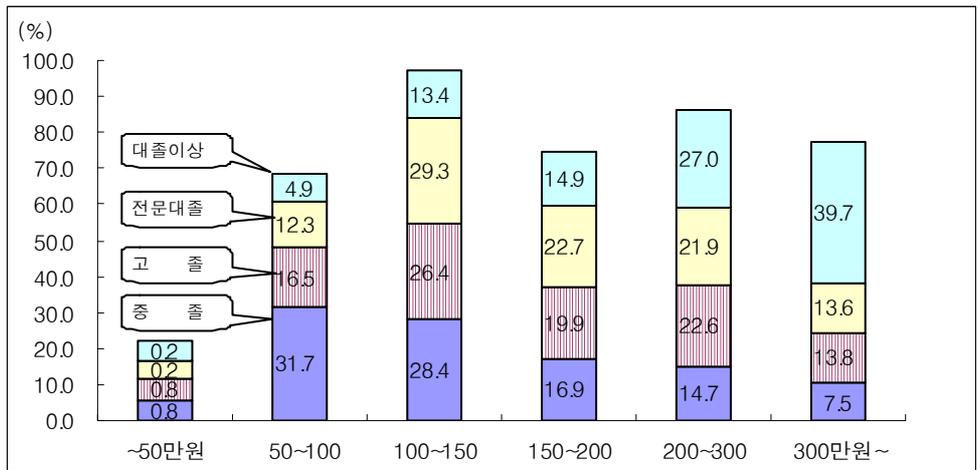
소득의 양극화는 임금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를 학력별로 보면 전형적으로 저학력자는 저임금, 고학력자는 고임금 현상을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의 학력별 임금수준 분포가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은 2004년의 경우 학력별 월 급여액 수준 및 격차가 고졸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액¹³⁾을 100으로 하였을 때 대졸이상 월급여액은 15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전문대졸 급여수준은

13) 월급여액은 정액급여 + 초과급여액 기준이며, 상여금 등 특별급여액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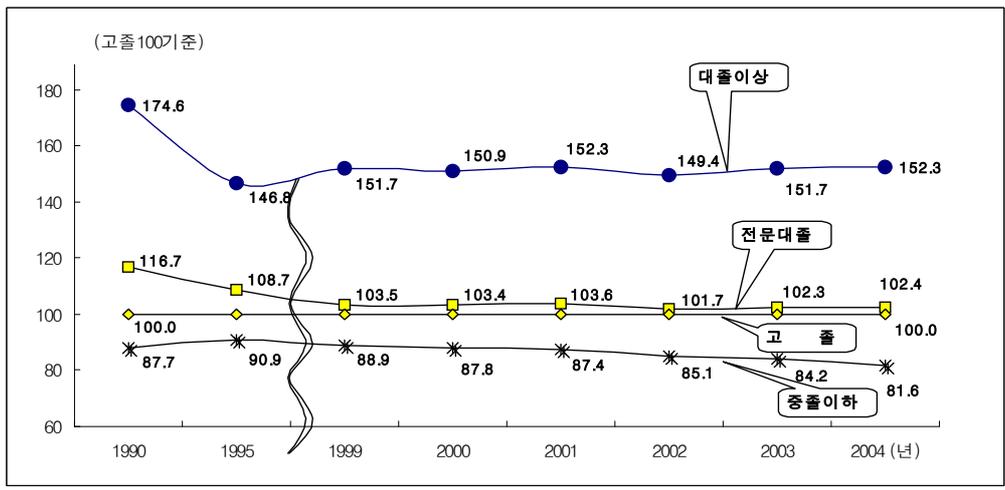
고졸에 비해 급여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은 이는 임금결정 요인에 있어 전문대졸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등이 고졸에 비해 크게 낮은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중졸자의 경우는 점차 지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그래프 안의 값은 학력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층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2004). 2004년 임금구조 실태 분석.

[그림 II-1-1] 학력별·임금계층별 근로자 구성비



자료: 통계청(2004). 2004년 임금구조 실태 분석.

[그림 II-1-2] 연도별·학력별 임금수준 분포

3) 교육 격차

교육의 양극화는 진학률과 학업성취도 등에서 빈곤층 자녀들과 부유층 자녀들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그 중간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양극화가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교육 기회 양극화로 연결됨을 나타낸다.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됨을 의미한다(강영혜 외, 2005).

교육비 격차를 분석한 연구(강영혜 외, 2005)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평생 교육에 걸쳐 계층별, 지역별 격차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기대수준, 교육지원활동, 문화활동,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며, 이러한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누적될 가능성을 보인다. 가정배경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로 이어지며,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가정배경은 고등교육의 기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서,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대학 미진학률이 40%를 넘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4%에 그친 반면, 대학원 이상 학력 부모의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1.4%를 보여 중졸이하 부모를 둔 경우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3〉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보충교육비 지출)

단위: 원

소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4분기)
1분위	35,133	34,556	39,703	34,411
2분위	43,498	46,076	49,665	44,108
3분위	62,703	68,229	68,914	66,822
4분위	87,371	100,869	100,736	103,528
5분위	114,067	107,357	117,582	141,469
6분위	127,086	141,274	146,428	159,336
7분위	147,016	157,388	169,940	187,636
8분위	154,760	174,394	198,289	198,764
9분위	187,683	213,195	234,394	246,246
10분위	228,738	257,553	292,602	339,375
평균	118,812	130,095	141,833	152,177
10분위/1분위	6.5	7.5	7.4	9.9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조사 결과.

통계청의 2006년 1분기 전국 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 관련 지출이 최하위 계층의 10배에 달하는 등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 9,375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3만 4,411원의 약 10배나 된다. 이는 2005년 1분기 6.3배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이다(표 II-1-3 참조).

4) 원인 및 해소방안

우리나라의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 70~80년대의 불균형 압축 성장 전략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소득격차와 분배구조의 악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06)는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성장률 저하, 내수 수출간의 차이 및 노동시장의 변수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경기변동은 방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더욱 감소시켰으며, 임시직의 증가 비율 등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노동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졌다.

한규택(2005)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첨단 대기업과 전통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고소득 자영업과 영세 자영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사회재생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06년 주요 업무의 하나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각 분야에서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나 육아지원 또는 고용 서비스 선진화 등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가 큰 사업이 제시되었다(정홍상, 2005). 류정순(2005)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투자를 인적자본투자와 사회적 투자로 그 인식을 바꾸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규택(2005)은 내수침체의 결정적인 원인인 소득의 양극화 및 가계부채에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교육 지원 정책

앞서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들의 소득수준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 제공에서 현격한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닌 사회경제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고 빈곤이나 하위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결식 아동 등 아동의 빈곤문제가 표면화되었던 것도 결국 아동이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나타내는 단면이다.

빈곤은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과 관심의 결여, 문화 결손 및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빈곤아동이 가정에서 방치되면, 이는 지능의 저하와 학습곤란으로 이어지고,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 산만, 불안 등의 정서장애 발생률은 일반 가정 아동보다 높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 과(過)의존성 등 무력감을 나타낸다. 아동이 어리고 빈곤 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은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일찍부터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정책, 보육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초기 정책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점차 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의 대상이 확대·변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1960~1974년 사이의 여러 국가들이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아동 부양과 관련한 조세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각국이 출산력,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가족수당제도의 개혁 등이 추진되었다(Gauthier, 1996). 특히 198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일정한 수준의 출산력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정책이라는 용어의 확산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근로자와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왔다.

한편, 1990년대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기나 가정의 누구에게서도 그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문벌 및 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 없이 이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이 아동권리 보장의 핵심 이념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본 절에서는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아동 중심의 스타트 운동과 지역 중심의 교육우선지역 사례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가. 아동 중심 스타트 운동 사례

아동이 출생 이후 부모의 사회적 격차로 인한 차별이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미국의 헤드 스타트, 영국 잉글랜드의 슈어 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1) 헤드 스타트¹⁴⁾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출생 후 만 5세 아동, 임산부와 그 가정을 위한 포괄적 발달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는 저소득 아동의 학습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65년부터 저소득계층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994년에는 임산부와 신생아 및 만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동교육과 보육은 물론 의료서비스, 치과진료, 정신건강, 급식서비스, 영양 및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아동과 가정의 발달, 윤리, 문화, 언어적 유산과 경험을 반영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아동발달, 가족발달, 지역사회기반 구축, 중사자 발달의 네 가지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지원 단체로 정보센터, 협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헤드 스타트 협회(Head Start Association)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대간 연결프로그램(Bridging the Generations)¹⁵⁾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건강 이니셔티브(Children's Social/Emotional Health Initiatives)¹⁶⁾, 건강환경 이니셔티브(Environmental Health Initiatives)¹⁷⁾ 등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2005년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4) 미국 헤드 스타트 홈페이지(<http://www2.acf.dhhs.gov>) 자료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음.

15)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헤드스타트 협의회에서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영유아 발달 및 보육과 교육에 관한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각 지역의 헤드 스타트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16)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헤드스타트 협회는 각종 연구단체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프로그램 협력을 지원함.

17) 헤드 스타트 협회는 연방환경보호청과 연계하여 아동의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일반주택과 센터의 페인트 등에서 유발되는 납성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1,604곳이다. 2005년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등록 아동은 907,000여명이고 아동 1인당 7,287불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 6억 8,400만 불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62,000명의 3세미만 아동이 참여하였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과 가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그램 참가 아동은 그 이외 아동에 비해 IQ나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문제아를 위한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비율이 낮았고, 유급되는 비율이 낮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받는 아동은 67%인데 반해 받지 않는 아동은 49%였다.

2) 슈어 스타트¹⁸⁾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슈어 스타트(Sure Start) 정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원래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¹⁹⁾을 위한 보육, 교육, 건강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의 보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그 부모를 부모로서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부모·지역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영국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과 그 이외 지역 아동의 격차를 없앤다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된 아동센터(Children's Centre)로, 107개의 조기교육센터(Early Excellence Centre)²⁰⁾를 비롯해 기존에 있던 학교, 양육시설, 시민단체들을 통하여 아동센터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육·보건·교육·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농촌 등 취약지역을 주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이러한 지역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모든 지역사회마다 하나의 아동센터를 둔다는 계획이다. 2008년까지 2,500곳, 2010년까지는 3,500곳으로 늘려 40만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이외에도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밖 프로그램, 북스타트 등 교육과 보육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부모들에게 취업정보와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영양, 비만, 사회적·감정적 발달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구직센터(JobCentre Plus)와 연계하여 부모들이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늘리고, 가족공제(Family Credit) 대신 근로가구조세공제

18) 영국 슈어 스타트 홈페이지(<http://www.surestart.gov.uk>) 자료를 정리한 것임.

19) 방과후 프로그램 등 사업에 따라 14세까지 대상이 됨.

20) 1997년부터 설립하였음.

(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도입하는 등 소득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아동조세공제(Children's Tax Credit)도 도입하였다.

슈어 스타트의 특징은 지역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사업의 주체는 지방정부이지만, 각 지역마다 설치된 아동센터, 조기교육센터, 아동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파트너들과 함께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양질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것도 정책 안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슈어 스타트는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높은 성취감을 갖고, 부모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결국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빈곤 아동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3) 페어 스타트²¹⁾

캐나다 온타리오 주 썬더베이시(Thunder Bay City)의 페어 스타트(Fair Start)는 18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다. 이는 다섯 살 이전의 시기가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1996년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페어 스타트를 처음 제안한 것은 레이크헤드 학교협의회(Lakehead District School Board)이고, 이후 보건협회(District Health Unit), 가족 센터 등 지역 아동, 의료단체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자, 경찰 협회, 기업 등이 결합하면서 지역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3개 학교협의회, 3개 의료단체, 1개 비영리 단체 등 7개 지역단체가 '페어 스타트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과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페어 스타트는 기본적으로 지역 단체들의 기존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온타리오 정부가 기금으로 소개 책자를 만들고 TV와 신문 광고 등을 내며, 보건소 안에 두 명의 전담자가 정보제공 및 단체 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그러나 "페어 스타트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귀중한 시간과 기여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교사, 치료사, 아동상담사 등이 매년 6천 시간 이상 봉사하고 있다.

페어 스타트의 주 사업내용은 건강 검사이다. 만 3세에 시력검사를 하고, 온타리오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 시 청각 검사를 받는다. 주요 검사항목은 시력(Vision), 청력(Hearing) 이외에도 색칠하기, 블록쌓기, 퍼즐, 연필 잘 쥐기와 같은

21) 캐나다 페어스타트 홈페이지(<http://www.fairstart.ca>)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소근육운동(Fine Motor)과 뛰기, 공 땅에 치고받기, 공 던지고 잡기, 한 발로 뛰기, 발을 바꿔가며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대근육운동(Gross Motor), 말하기와 언어(Speech & Language), 활동 집중도, 자신의 한계 받아들이기, 다른 아이들과 물건 나눠 쓰기 등과 같은 사회성(Social Development)이다. 검사는 지역 아동센터, 일시 검사소(drop-in screening site)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페어 스타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²²⁾에 입력되고, 보건소는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하거나 치료 병원을 연결해 준다. 썬더베이시 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사업의 결과로 1996년 45%에 그쳤던 취학 전 아동 검진율은 2003년 88%로 증가하였다.

4) 위 스타트와 희망 스타트

위 스타트(We Start) 운동은 어려운 가정생활 조건으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다른 아이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지역복지사업이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복지와 교육, 보건 면에서 공정하고 확실한 출발선을 마련해 주어 성인이 되었을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최초의 스타트(Start) 운동의 한국형 모델로 복지·교육·보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이는 민간²³⁾에서 시작하여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여²⁴⁾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²⁵⁾

사업 내용은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건강 지킴이 사업, 희망의 집 꾸미기 사업, 교육 출발선 만들기 사업, 후견인 맺어주기 사업 등으로, 학교,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행정기관 등 지역내 복지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맞춤형 보건·교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We Start 마을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I-2-1>과 같다.

22) 검사 결과 및 치료 내역은 부모 동의하에 온타리오 학생 자료 프로그램(OSR-Ontario School Record folder)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보관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하는 목적에 사용됨.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는 보안망(SSL - Secure Socket Layer) 기술에 의해 보호됨.

23) <중앙일보사>는 2004년 ‘탐사기획/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라는 기획특집을 통해 격심한 사회경제 변화로 가정이 해체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집중 조명한 바 있음. 이후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단체와 기업체, 정부 언론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범국민적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음. 이 운동의 정식 명칭은 ‘WE START’로 선진국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START’ 캠페인을 도입한 것임.

24) 경기도와 경기도 군구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을 두고 있음.

25)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 평가자료는 없음.

〈표 II-2-1〉 We Start 사업 사례(안산 초지동)

구분	내용
건강킵이 사업	- 아동건강검진사업, 영양지도사업, 영유아건강지킵이사업, 건강교육사업 - 정신건강진단사업, 심리검사 및 난치병 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포괄적 보육사업	- 보육센터 운영, 시간연장형 보육 및 틈새보육 지원 서비스 이용 - 가정방문보육서비스, 예비초등학교 학교준비프로그램
교육복지중점 투자사업	- 공부방 운영,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실 운영, 기초학습증진을 위한 멘토링사업 - 세상구경 문화체험단 활동
가족지원사업	-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캠프, 부모상담과 교육 - 가족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조사홍보 사업

한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적 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으로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2007년 4월부터 16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평가하여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 교육우선지역 사례

저소득층 등 열악한 계층에 대한 교육정책을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지원은 모두 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학교복지투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프랑스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

프랑스는 1981년부터 ‘가장 덜 가진 자에게 가장 많이 주자’ 라는 기치 하에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두었으며, 1998년 지역이라는 폐쇄적 개념 대신에 연결망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우선연결망(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REP)을 구성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997년 평가보고서에서 ZEP 낙인 이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류층과의 교류 강화를 권고하였다. 2000년 현재 702개의 ZEP와 784개의 REP가 있다. REP는 여러 가지 교육수단의 상호부조, 실질적 교육활동의 공조체인데 ZEP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 여기에 소속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조기취학을 권장하고 모자보호국, 가족수당 지급처, 지역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조기 취학한 유아들을 지원한다. 이는 이민과 실업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유아들이 프랑스어와 문화를 익히고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문화적 활동들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질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나정 외, 2004a). OECD(2004)는 ZEP 거주 만 2세 아동의 약 40%가 모성학교(École marternelle)에 취학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영국 도시 및 교육우선지역(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 Eic, EAZ)²⁶⁾

영국은 2006년 현재 6개 교육우선투자지역(Education Action Zone; EAZ)과 130개 도시우선투자지역(Excellence Cluster and Eci Zone)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에 퍼져 있으며, 참여학교는 약 2,000개이다.

교육우선투자지역(EAZ)은 영국 노동당이 제3의 길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주의를 정책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1998년 학교 기준 및 기본법(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 1998)에 기초한다. EAZ는 2~3개의 중고등학교와 이웃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5~25개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3년 단위의 1차, 2차 사업에 73개 지역²⁷⁾에서 실시되었고, 모두 지역 아동의 성적이 전국 평균을 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도시우선투자지역(Excellence in Cities Aaction Zone)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고등학교와 지방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학교군으로 묶는 형태로, 대도시 또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아동의 학업성취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교육우선투자지역(EAZ)을 운영기간이 끝나는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 도시우선투자지역(Excellence in Cities Action Zone) 또는 지역군(Excellence Cluster)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²⁸⁾

이들 사업은 교육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유관한 사업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 개발계획(School Development Plans), 교육개발계획(Education Development Plans), 영유아발달 계획(Early Years Development Plans) 등이 이에 해당된다.

26) 영국 교육기술부 기준 홈페이지(<http://www.standards.dfes.gov.uk>) 자료를 참고하였음.

27) 1차 25개, 2차 48개 등 2차에 걸쳐 총 73개가 운영되었음.

28) 도시우선투자지역(Excellence in cities action zone)은 EAZ가 포함될 경우이고 우선지역군(Excellence cluster and Eci Zone)은 기존 EAZ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임.

〈표 11-2-2〉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 중심 교육사업

국가	내용
영국 교육우선지역 (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 EA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부터 일종의 교육특구인 EAZ 설치, 도시에 EIC 설치 · 현재 6개 EAZ와 130개 EIC 운영 - EZA는 지진아 지도부터 가족문맹퇴치, 직업훈련까지 다양하고, EIC는 학업성취와 사회통합등 보다 기술적인 목표를 추구 - EAZ는 운영기간이 완료 되는대로 도시교육우선투자지역(Excellence in Cities Action Zone)으로 전환 추진
프랑스 교육우선지역 (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현재 702개의 ZEP와 784개의 REP 설치 · 대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에 집중 · REP는 ZEP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들이 소속 - 초등학생 15%, 중학생의 18%가 이러한 ZEP 학교에 다님. - 부진아 지도, 언어와 독서지도, 부모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추진 - 1998년 폐쇄적 개념 대신에 연결망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우선연결망(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REP)을 구성 · 여러 가지 교육수단의 상호부조, 실질적 교육활동의 공조체

자료: 1)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dfes.gov.uk>) 참조

2) 나정 외(2001).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 선정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학생에게 투자되는 교육비 등 교육여건이 농어촌에 비하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도시 저소득 지역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3~2004년에 서울과 부산 지역의 8개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6개 대도시 1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리·심성 계발,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범사업에서 유아교육 부분에서는 투자지역 내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 접근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투자지역 내 영유아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간의 협조체계 구축, 영유아보육·교육기관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유치원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투입하였다. 프로그램은 문화보상 프로그램, 저소득층 유아의 정서 장애에 대한 특별지도, 유아 건강 확인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기술지도 프로그램, 종일반 운영 프로그램,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급간식 프로그램 등이다(나정 외, 2004a).

Ⅲ. 육아지원 제도 및 재정

제3장에서는 정부의 육아비용 지원 제도와 재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육아지원사업은 설치비나 개보수비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제2절에서는 재정의 규모나 정부간 분담, 정부-부모간 분담을 살펴보고, 총 비용, 정부 지원, 부모 부담의 시설유형별 또는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육아비용지원 제도

가. 보육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중전의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심이었으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1)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²⁹⁾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9)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표 III-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9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특수교사 수당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 원장(1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특수교사 수당 -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 방과후 20명 이상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90% 지원
직장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주: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임.
자료: 여성가족부(2006). 보육사업안내.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에는 원장과 교사 인건비 이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장애아보육시설은 원장(6개반 이상)과 보육교사 인건비 80%, 취사부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특수교사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 인건비 지원시설은 장애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

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편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 시설은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정부 지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³⁰⁾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육 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정부 지원시설이나 민간가정시설 모두 동일하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한편으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³¹⁾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2)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³²⁾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다.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다. 유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보조금 확대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2010년까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어 간다는 방침이다.

3) 보육료 차등 지원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30) 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31)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32) 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³³⁾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6월 제46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보고한 제1차 육아지원방안 보고 시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차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하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130%까지로 확대하였다.

〈표 III-1-2〉 소득수준별 ·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³⁴⁾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90%³⁵⁾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평

33)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환산율 4.17%), 금융재산(환산율 6.25%), ‘승용차 등’(환산율 100%)이 포함되는데, 2005년에는 10년 미만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였는데, 2006년에는 7년 미만인 2000cc 차량에 대해서만 100%를 적용하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4.17%를 적용하여 차량의 배기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음.

34)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균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명이었으나 2003년 12월 기준으로 21만명, 2004년 28만명, 2005년 43만 8천명으로 보육아동의 44.2%에 달한다. 만 5세 및 만 6세 이상 아동은 각각 48.6%, 60.3%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표 III-1-3〉 보육료 지원 아동: 2003~2005

단위: 명, %

구 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계
2005년								
전체 보육 아동수(A)	33,647	89,403	179,301	223,628	219,954	195,455	48,002	989,39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14,013	37,681	71,357	93,567	97,037	95,000	28,949	437,604
보육료 지원 비율(B/A)	41.6	42.1	39.8	41.8	44.1	48.6	60.3	44.2
2004년								
전체 보육 아동수(A)	21,445	73,686	167,785	230,516	213,679	183,917	39,224	930,252
보육료 지원 아동수(B)	4,718	18,719	37,335	56,159	60,208	82,877	19,866	279,882
보육료 지원비율(B/A)	22.0	25.4	22.3	24.4	28.2	45.1	50.6	30.1
2003년								
전체 보육아동수(A)	14,686	66,901	159,972	213,557	201,303	172,225	29,701	858,345
보육료 지원아동수(B)	2,626	12,988	27,824	41,235	43,447	68,059	14,434	210,613
보육료 지원비율(B/A)	17.9	19.4	17.4	19.3	21.6	39.5	48.6	24.5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나. 유아교육비 지원 제도

1) 시설별 지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유치원의 설립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서 국공립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

35) 200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90%는 318만원이고, 월평균소득 100%는 353만원임.

다. 이는 수면실, 주방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당 500~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2) 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³⁶⁾ 2004년부터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이 현행 저소득층 만 5세아에서 만 3, 4세로 확대되어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25.7%인 6만 3천명이었고, 만 3, 4세 아동의 8.5%인 2만 5천명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만 5세아 8만 6천명, 만 3, 4세아 약 5만 7천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2006년에는 만 3, 4세아 15만 5천명, 만 5세아 14만2천명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1-4〉 교육비 지원 아동: 2004~2005

단위: 명, %

구 분	만 3, 4세	만 5세	계
2005년			
전체 취원아 수 (A)	289,816	251,789	541,603
교육비 지원 아동수 (B)	56,970	86,851	143,821
교육비 지원 비율 (B/A)	19.7	34.5	26.6
2004년			
전체 취원아 수 (A)	296,271	245,442	541,713
교육비 지원 아동수 (B)	25,155	63,003	88,158
교육비 지원 비율 (B/A)	8.5	25.7	16.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각 연도). 유치원 현황.

36) 이는 보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 농어민 자녀 지원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³⁷⁾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³⁸⁾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시설에 수납하게 한다.

<표 III-1-5>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4~2006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농지소유기준	1.5ha	2.0ha	5.0ha
아동수	27,000	31,109	27,286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3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비교하면 <표 III-1-6>과 같다. 0~4세 보육의 경우 5ha 이상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도시 거주 아동과 동일하게 도시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적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보육료의 100%, 차차상위계층(도시평균소득 50% 미만)은 70%,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은 40%를 지원한다. 5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의 자녀에게는 농림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며, 도시평균소득 70% 미만 계층에게는 여성가족부가 40%를 지원하거나 농림부가 50%를 지원한다. 도시평균소득 70% 이상 계층은 농림부가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3~4세 교육의 경우 보육과 같은 비율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지원한다.

37)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음.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임.

38)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임.

〈표 III-1-6〉 보육·교육비 지원체계: 2006

구분	보육 (0~4세)			교육 (3~4세)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 5ha 이상 농어촌	5ha 미만 농어촌	
도시평균소득 70%이상	-	50%(농림부)		-	50%(농림부)	
도시평균소득 70%미만	40% (여성가족부)	40% (여성 가족부)	50% (농림부)	40% (교육인적자원부)	40% (교육인적 자원부)	50% (농림부)
차차상위 (도시평균소득 50%미만)	70% (여성가족부)	70% (여성가족부)		70% (교육인적자원부)	70% (교육인적자원부)	
차 상 위 (기타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수 급 자 (법정저소득층)	100% (여성가족부)	100% (여성가족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100% (교육인적자원부)	

한편 농림부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이다.³⁹⁾

라. 육아비용 세제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이외에 또 하나의 방식은 조세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다. 보육료 조세 지원은 소득에서 소득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조세 납부액에서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⁴⁰⁾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초기에는 연간 100만원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2004년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소득액공제제도는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39) 2006년도 월 지원 금액은 0세아 87,500원, 만 1세아 77,000원, 만 2세아 63,500원, 만 3~4세아 39,500원, 만 5세아 79,000원임.

40)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현재 세액공제는 없음.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 이 조세지원 방식을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 주는 보육료 아동별 보조금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 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는 다른 주와는 달리 아동별 보조금 지원 없이 세액공제제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있다. 우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 연 소득 3,000만원 기준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 공제 시 200만원 공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1,097,500원, 1,267,500원으로 연 17만원의 차이가 날 뿐이다.⁴¹⁾ 또한 현재 세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⁴²⁾ 면세계층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표기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있고, 과표기준액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으로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2. 육아지원 재정

가. 재정 규모 및 정부간 분담

1) 보육 재정

<표 III-2-1>은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표 III-2-1>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0~2006

단위: 백만원

내역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185,034	206,636	214,643	348,772	452,277	596,865	672,563
	차량운영비	910	910	910	1,153	1,291	2,944	8,100
	교재교구비	6,331	6,329	6,115	6,040	15,126	22,559	24,546
	소계	192,275	213,875	221,668	355,965	468,694	622,368	705,209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96,970	130,066	104,856	134,432	212,950	365,848	590,840
	5세아 무상보육	11,882	12,508	103,288	108,508	124,538	163,363	274,490
	장애아 무상보육	-	-	-	10,764	12,049	31,274	61,043
	두자녀보육료	-	-	-	-	-	13,447	19,606
	소계	108,852	142,574	208,144	253,704	349,536	573,932	945,979
보육시설 기능 보강		3,005	3,050	5,175	16,467	52,054	120,291	67,189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477	1,432	1,916	2,527	2,000	6,383	5,237
계		305,609	360,976	436,903	627,705	872,284	1,322,974	1,723,614

주: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된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내부자료.

41) 국세청 홈페이지(<http://nta.go.kr>)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 이용하여 산출

42) 2006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1천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초과는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임.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은 3056억원, 2002년은 4369억원, 2004년은 8723억원이며, 2006년은 1조 7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6년도 보육예산 중 40.9%인 7052억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고 54.9%인 9460억원이 보육료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시·도 사업비 2248억원, 시·군·구 사업비 896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사업비의 13.0%, 5.2%로 모두 18.2%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1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나 2003년과 2004년에 비하여 비율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2-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06

단위: 천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C/A)
2001년 ¹⁾	360,027	41,755	-	401,782	11.6	-
2002년 ¹⁾	435,517	43,552	-	479,069	10.0	-
2003년 ¹⁾	627,705	156,230	28,081	812,016	24.9	4.5
2004년 ¹⁾	872,285	143,904	45,544	1,061,733	16.5	5.2
2005년 ¹⁾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²⁾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표 III-2-3〉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단위: 천원(%)

구분	재원			계
	중앙	시·도	시·군·구	
국고지원사업	781,784	470,914.5	470,914.5	1,723,613
시·도 사업	-	112,421	112,421	224,842
시·군·구 사업	-	-	89,647	89,647
계	781,784	583,335.5	672,982.5	2,038,102
(비율)	(38.4)	(28.6)	(33.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및 예산 개요.

〈표 III-2-4〉 보육 예산: 2002~2006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앙	209,024	297,911	402,114	591,061	781,784(38.4)
지방	270,045	514,105	659,619	1,004,551	1,256,318(61.6)
계	479,069	812,016	1,061,733	1,595,612	2,038,102(100.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I-2-3〉, 〈표 III-2-4〉는 2006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지방과 중앙 정부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38.4%를 분담하고 시·도가 28.6%, 시·군·구가 33.0%를 분담하고 있다.

2)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국고 1997억원, 지방정부 6864억원으로 모두 8860억원이다. 유아교육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2년은 3348억원, 2004년은 4564억원, 2005년은 6549억원으로 증가하였다(표 III-2-5 참조).

〈표 III-2-5〉 유아교육 예산: 2002~2006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앙	20,700	25,652	51,285	103,667	199,652(22.5)
지방	314,079	356,835	405,162	551,200	686,359(77.5)
계	334,779	382,487	456,447	654,867	886,011(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표 III-2-6〉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 내역: 2004~2005

단위: 백만원(%)

내역		2004년	2005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	256,499	304,200
	종일반지원	1,509	5,000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4,096	4,096
	기타 운영비 등	83,059	152,213
	소계	345,163(75.6)	465,509(71.1)
저소득층교육비지원		72,290(15.8)	167,128(25.5)
단설유치원설립지원 등 시설비		38,144(8.4)	20,380(3.1)
기타(자료개발, 훈련비 등)		800(0.2)	1,850(0.3)
계		456,447(100.0)	654,867(100.0)

주: 교육인적자원부(각 연도). 내부자료.

국고는 주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차등지원금이고 지방정부예산은 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이다. 2005년도 유아교육 예산 중 71.1%인 4655억원은 인건비 지원 등의 시설운영지원이고 25.5%인 1671억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다. 2004년에 비하여 교육비 지원금이 많이 증가하였다(표 III-2-6 참조).

3)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04년 292억원에서 2005년 4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예산은 총 315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57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2006년 예산이 2005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수 감소와 보육교육비 차등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대상자 감소에 의한 것이다.

〈표 III-2-7〉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 2004~2006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9,204	44,724	31,484
국 비	14,602	22,362	15,742
지방비	14,602	22,362	15,742

자료: 농림부(2006). 보도자료.

4) 육아지원 예산 총괄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과 농업인 양육비를 모두 합하면 2005년도에 2조 2952억원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7171억원이고 지방정부 예산이 1조 5781억원으로 비율로는 각각 31.2%, 68.8%이다.

2006년에는 2조 955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예산이 9972억원이고 지방정부 예산이 1조 9584억원이다. 2005년에 비하여 28.8%인 6600억원 이상이 증가하였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율은 각각 33.7%, 66.3%로 2005년과 별 차이가 없다.

〈표 III-2-9〉와 〈그림 III-2-1〉은 보육·유아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 GDP가 806조 6129억원이므로 GDP 대비 총 육아지원 예산의 비율은 0.29%이다. 보육만은 0.20%, 유아교육만은 0.08%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구분하면 중앙이 0.10%, 지방이 0.19%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재정 규모는 GDP 대비 0.12%로 산출되었다.

〈표 III-2-8〉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2002년				
보육	209,024	270,045	479,069	0.070
유아교육	20,700	314,079	334,779	0.050
계	229,724	584,124	813,848	0.120
2003년				
보육	297,911	514,105	812,016	0.112
유아교육	25,652	356,835	382,487	0.053
계	323,563	870,940	1,194,503	0.165
2004년				
보육	402,114	659,619	1,061,733	0.136
유아교육	51,285	405,282	456,567	0.059
농업인양육비	14,602	14,602	29,204	0.004
계	468,001	1,079,503	1,547,504	0.199
2005년				
보육	591,061	1,004,551	1,595,612	0.198
유아교육	103,667	551,200	654,867	0.081
농업인양육비	22,362	22,362	44,724	0.006
계	717,090	1,578,113	2,295,203	0.285
2006년				
보육	781,784	1,256,318	2,038,102	0.240
유아교육	199,652	686,359	886,011	0.105
농업인양육비	15,742	15,742	31,484	0.004
계	997,178	1,958,419	2,955,597	0.349
(비율)	(33.7)	(6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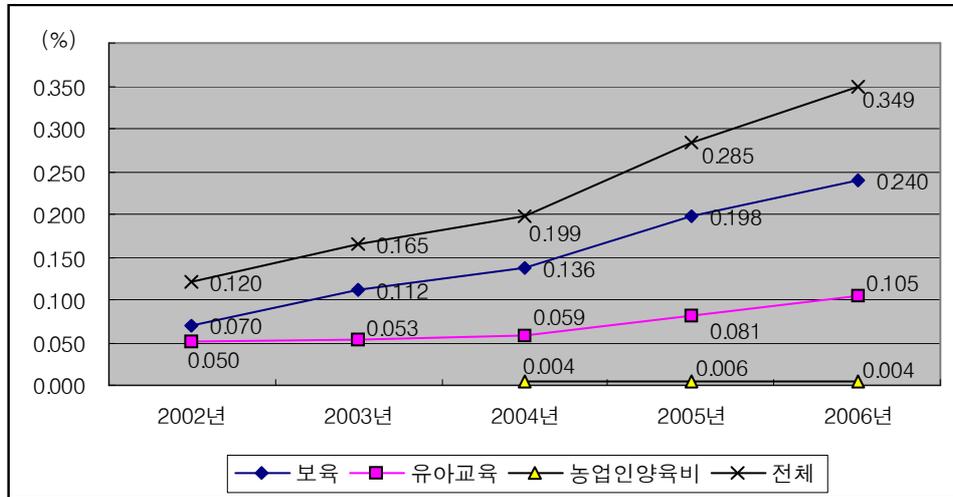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농림부(2006). 예산 현황.

〈표 III-2-9〉 2005년 총 육아지원,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GDP 대비 비율

단위: %

구분	국 비	지방비	계
계	0.098	0.187	0.285
보육	0.082	0.116	0.199
유아교육	0.013	0.068	0.081
농업인양육비	0.068	0.003	0.006

주: 2005년 GDP는 806조 6219억원(통계청, Kosis)임.



[그림 III-2-1]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나. 보육·교육 비용의 정부와 부모 분담

1) 보육

2005년 6월 기준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대략 2조 9757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표 III-2-10>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2~2005

단위: %(백만원)

구분	2002.6	2003.6	2004.6	2005.6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비용)
보육료 ¹⁾				
- 부모부담	74.6	69.5	65.8	59.8 (1,779,398)
- 정부지원 ²⁾	12.3	12.2	14.6	19.3 (573,932)
인건비·운영비지원 ³⁾	13.1	18.3	19.6	20.9 (622,368)
계 (총 비용 추정액)	100.0 (1,693,214)	100.0 (2,088,284)	100.0 (2,392,071)	100.0 (2,975,698)

주: 1) 보육료는 2002년 보육실태조사 및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2) 정부 지원은 영유아, 만 5세아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등임.

3)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금임.

자료: 서문희 외(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비용 중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아동 보육료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3년 30.5%, 2004년 34.2%로 분석되었고, 2005년은 40.2%로 분석되었다. 2005년에 인건비 등 시설별로 20.9%,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9.3%가 지원되었다(표 III-2-10 참조). 여기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특수사업 예산은 제외하였다. 이 예산이 포함될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10% 이상 증가될 것이다.

2) 유아교육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조 841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가 34.4%의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2-11〉 교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비용	비율
교육비		
- 부모부담	1,208,812	65.6
- 정부지원	167,128	9.1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465,509	25.3
계	1,841,449	100.0

주: 1) 교육비 부모부담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체 아동 총 교육비 인 비용 사립유치원 204,300원, 국공립유치원 86,100원을 이용하여 5% 증가를 적용하였음. 2005년 취원아수는 국공립 원아수 124,030명, 사립유치원 417,320명임.
2) 교육비 정부지원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임.

3) 총 비용 분담

보육 및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조 8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61.1%를 부모가 부담하고 38.9%를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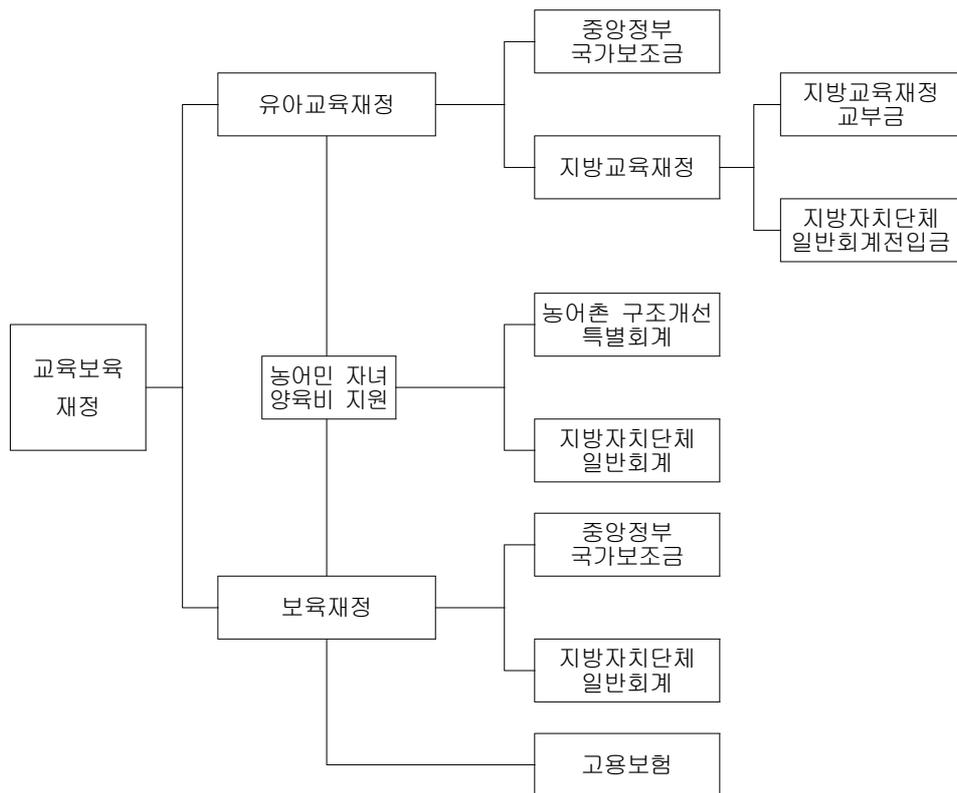
〈표 III-2-12〉 육아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육비용+교육비용		보육비용+교육비용+농어민양육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보육·교육 비용				
- 부모부담	2,988,210	62.0	2,943,486	61.1
- 정부지원	741,060	15.4	785,784	16.3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087,877	22.6	1,087,877	22.6
계	4,817,147	100.0	4,817,147	100.0

다. 재원

육아비용 지원 자금 재원 흐름은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3개 부처의 육아지원 재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2] 유아교육·보육 재정 구성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재정 재원은 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조성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으로 구성된다.⁴³⁾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교육세,⁴⁴⁾ 시·도세 전입금⁴⁵⁾, 담배소비세 전입금⁴⁶⁾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43) 내국세분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9.4%이고, 교육세분 교부금은 전액임.

4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과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세액의 60%임.

여성가족부는 중앙 보육지원 사업비를 모두 일반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각 시·도에서는 국고 지원금에 지방비 분담금 등 지방재정을 합하여 전체 사업비로 사용한다.

보육재정은 여성가족부가 확보하는 예산 이외에 노동부가 직장보육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의 농어민 자녀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및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은 중앙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확보하여 각 시·도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각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과 지방비 분담금을 합하여 사업비로 사용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은 50:50이다.

라. 육아비용 지원의 격차

1) 시설유형별 격차

지역사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부모 부담, 정부 지원, 총 보육비용에서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의 원인이 된다.

2005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만 1세 미만 아동을 보면 정부가 43만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30만원을 부담하여 73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을 받는 반면에 민간시설 이용아동은 부모가 35만원을 부담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15만원이므로 총 50만원이 보육비용이 된다. 2006년에 영아의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을 연령별로 각각 249,000원, 104,000원, 69,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용의 80% 수준이다(표 III-2-13 참조).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도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을 받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은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평등 구조 속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영아전담시설은 운영자에게 굉장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45) 특별시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임.

46)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임.

〈표 III-2-13〉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분담(2006년 기준)

단위: 원, %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정부지원	부모부담(비율)	계
1세미만아	434,868	299,000(39.5)	733,868	249,000	350,000(58.4)	599,000
만 1세아	267,174	299,000(51.6)	566,174	104,000	308,000(25.2)	412,000
만 2세아	195,305	247,000(55.8)	442,305	69,000	254,000(78.6)	323,000
만 3세아	53,541	153,000(74.0)	206,541	—	204,000(100.0)	204,000
만 4~5세아	44,064	153,000(77.6)	197,064	—	204,000(100.0)	204,000

주: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와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취사부 인건비 미적용.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유아교육도 보육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더 많지만, 공적 자금 투입의 차이 때문에 아동 1인당 교육비는 더 적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아동 1인당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이 공립유치원은 연간 350만원 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은 46만 8천원 수준으로, 국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7.5배가 된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4〉 시설유형별 아동 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천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사립	95,640,814	417,807	229	195,255,442	417,320	468
공립	384,628,059	123,638	3,111	433,329,783	124,030	3,49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2003년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본 「2004년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의 연간 부모 부담금액은 공립 22만 4천원, 사립 175만 2천원으로 사립이 훨씬 많은데, 그들의 자녀에게 투입되는 연간 총 교육비는 각각 246만원, 191만 4천원으로 공립이 더 많다(표 III-2-15 참조).

〈표 III-2-15〉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교육비(2003년 세출 기준)

단위: 천원

구분	1인당교육비		학부모부담금		기관수 (개원)	해당 유아 총수 (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1인당교육비 대비 비율(%)		
계	2,235	3,708	1,236	55.3	447	40,035
공립	2,460	4,739	224	9.1	151	7,434
사립	1,914	1,111	1,752	91.5	296	32,601
t	1.94(p=0.52)		-16.53(p=0.00)		447	40,035

주: 1)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유치원에서 지출한 세출 합계를 원아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임.
 2) 수익자 부담금액은 사립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 공립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입학금 및 수업료)에 기타 학부모 부담 경비를 합한 금액임.
 3) 사립의 경우 순수한 수업료만 포함되고, 특별 프로그램 부담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곧 사립의 학부모부담금액을 적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음.
 자료: 나정 외(2005). 2004년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불공정 경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비싼 비용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불공정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책정된 비용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이다.

2) 지역 차이

보육예산의 중앙 및 지방 분담비율은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를 두지 않거나 차이를 두는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분담 비율이 동일하여 지방의 재정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III-2-16〉 보육 및 유아교육 국고지원 사업비 중앙 및 지방 분담 비율

단위: %

구분	서울		지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보육				
경상보조(운영비 지원, 보육료지원, 인프라 구축)	20	80	50	50
자본보조(신축, 증개축, 장비비 등)	50	50	50	50
유아교육				
학급 자원봉사자 훈련	30	70	30	70
그 외 모든 지원비	50	50	50	50

교육예산 중 학급자원봉사 훈련비용은 중앙과 지방의 분담이 30:70이고 이외 사업은 모두 50:50이다. 보육예산처럼 서울과 이외 시·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표 III-2-16 참조).

가) 보육 재정의 지역 차이

보육은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이외에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특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시·도 역시 각종 인건비 추가 지원 및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추가 등의 형태로 직접 운영비 지원 및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에서도 추가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시·도 사업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역별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배정방식으로 지역적 형평성이 낮아서 보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도에 시·도가 특별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⁴⁷⁾은 모두 2248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자부담을 제외한 국고지원 사업비 1조 7236억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은 시·도별 차이가 많다. 서울특별시는 시·도 특별사업예산이 전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게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서울 이외에 인천, 대전, 경기가 16~7% 수준이고, 제주도가 12%, 울산이 9.7%이다(표 III-2-17 참조).

이외에 시·군·구 사업비도 국고지원 사업비의 5.2%가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은 13.7%이지만 광주는 거의 없다.

이러한 특수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방 재정상의 여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의 재정상태와 정적인 관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⁴⁸⁾가 전남이 각각 20.0%, 67.8%로 가장 낮으나 특별사업비 비율은 재정자주도가 80.7%인 부산이 가장 낮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이 저소득층이나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이 많아서 지방 분담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47) 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상 기능보강비의 비율은 높지 않음.

48)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 이외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 최근에 도입함(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표 III-2-17>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¹⁾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재정 자립도 ²⁾ 평균	재정 자주도 ³⁾ 평균
전체	1,723,613	224,843	89,646	13.0	5.2	54.4	80.2
서울	266,742	114,275	36,486	42.8	13.7	94.3	95.4
부산	109,345	5,141	691	4.7	0.6	70.2	80.7
대구	98,303	871	1,602	0.9	1.6	70.7	84.7
인천	67,986	11,629	1,823	17.1	2.7	69.2	76.5
광주	87,837	479	18	0.5	0.0	57.5	75.1
대전	46,429	7,477	430	16.1	0.9	72.8	83.9
울산	34,397	3,350	312	9.7	0.9	65.7	82.6
경기	301,207	49,935	26,268	16.6	8.7	75.2	85.7
강원	68,537	2,822	677	4.1	1.0	26.7	75.3
충북	72,481	527	8,248	0.7	11.4	31.3	76.4
충남	82,280	5,351	2,703	6.5	3.3	35.3	74.1
전북	112,470	4,569	2,172	4.1	1.9	23.9	70.1
전남	111,149	4,657	2,173	4.2	2.0	20.0	67.8
경북	95,170	1,038	1,847	1.1	1.9	27.8	76.2
경남	121,867	7,048	3,648	5.8	3.0	38.8	75.0
제주	47,433	5,674	548	12.0	1.2	33.8	72.9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임. 비율은 천원 단위에서 산출한 것임.

2)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3)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자료: 1) 서문희 외(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한편, <표 III-2-18>은 이러한 2006년도 보육예산을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38.4%를 분담하고 시·도가 28.6%, 시·군·구가 33.0%를 분담하고 있다. 즉, 중앙, 시·도, 시·군·구의 분담 비율이 38.4:28.6:33.0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중앙정부 분담률이 12.8%로 가장 낮고 다음이 경기도로 39.9%이다. 그 이외 지역은 모두 40%를 넘는데, 그 중에서 인천이 41.7%로 가장 낮고, 광주가 49.7%로 가장 높다.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 분담을 보면 시·군·구의 분담 비율이 서울이 48.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 충북, 인천으로 30~33% 사이에 분포한다.

〈표 III-2-18〉 시·도별 보육예산 중앙-지방 분담 현황: 2006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계	국고		시·도		시·군·구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전체	2,038,102	781,784	38.4	583,336	28.6	672,983	33.0
서울	417,503	53,348	12.8	163,834	39.2	200,320	48.0
부산	115,177	54,673	47.5	29,907	26.0	30,598	26.6
대구	100,776	49,151	48.8	25,011	24.8	26,613	26.4
인천	81,438	33,993	41.7	22,811	28.0	24,634	30.2
광주	88,335	43,919	49.7	22,199	25.1	22,217	25.2
대전	54,335	23,214	42.7	15,345	28.2	15,775	29.0
울산	38,059	17,198	45.2	10,274	27.0	10,586	27.8
경기	377,410	150,604	39.9	100,269	26.6	126,537	33.5
강원	72,036	34,268	47.6	18,545	25.7	19,223	26.7
충북	81,256	36,241	44.6	18,384	22.6	26,631	32.8
충남	90,314	41,130	45.5	23,240	25.7	25,944	28.7
전북	119,210	56,235	47.2	30,402	25.5	32,574	27.3
전남	117,979	55,575	47.1	30,116	25.5	32,289	27.4
경북	98,055	47,585	48.5	24,312	24.8	26,159	26.7
경남	132,564	60,934	46.0	33,991	25.6	37,639	28.4
제주	53,656	23,717	44.2	14,695	27.4	15,244	28.4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III-2-19〉는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인데, 2004년 기준의 전국 평균은 122만원이지만 지역별로 서울은 183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제주도인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과 경기로 평균 80만원대이다. 이는 특별보육사업 예산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보육시설 유형의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도 1인당 비용은 172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50만원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 차이는 조금 달라져서 서울 이외에 전남, 제주, 전북, 충남이 2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높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는 정부 재정의 차이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시설 설립과 운영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이 많으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III-2-19〉 시·도별 보육사업 총예산 및 아동 1인당 예산: 2004, 200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총예산(A)	보육아동수(B)	1인당 금액(B/A)	총예산(A)	보육아동수(B)	1인당 금액(B/A)
전체	1,047,564	858,345	1.22	1,601,374	930,252	1.72
서울	284,100	155,337	1.83	348,118	168,569	2.07
부산	62,340	53,876	1.16	89,375	58,447	1.53
대구	39,713	39,372	1.01	69,321	44,296	1.57
인천	30,231	37,477	0.81	50,098	40,330	1.24
광주	42,952	35,766	1.20	61,387	38,559	1.59
대전	21,311	18,413	1.16	34,691	20,595	1.68
울산	17,623	20,949	0.84	27,103	21,198	1.28
경기	151,128	184,368	0.82	266,112	201,214	1.32
강원	35,481	30,987	1.15	63,560	32,607	1.95
충북	40,859	35,492	1.15	72,526	38,900	1.86
충남	48,830	38,635	1.26	82,240	40,498	2.03
전북	60,523	44,172	1.37	96,955	46,746	2.07
전남	60,433	40,852	1.48	102,324	43,739	2.34
경북	64,738	47,518	1.36	91,985	51,984	1.77
경남	56,739	56,771	1.00	97,401	63,072	1.54
제주	30,563	18,360	1.67	42,416	19,498	2.16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통계.
 여성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각 연도). 지자체 특수사업(미발간).

보육비용의 지역별 차이로 또 다른 시각에서 부모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국공립 단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결국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2004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료를 기준보다 낮게 받는다는 비율이 읍면은 63.0%로 도시 53~55% 수준보다 8~10%p가 높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전화조사에서도 읍면 보육시설의 시설유형별 보육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세아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국공립에 비하여 55,000원 정도 높으나 민간개인시설은 17,00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3세 이상아는 국공립시설에 비하여 민간개인은 1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000원 정도를 더 받는다(표 III-2-20 참조).

〈표 III-2-20〉 읍·면지역 시설유형별 보육료

단위: 천원(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설수
0세아	314.4	68.8	54
전체	314.4	68.8	54
국공립보육시설	284.5	73.0	4
법인보육시설	304.5	82.0	13
민간보육시설	301.5	71.0	12
가정보육시설	339.2	42.5	24
만 1세아			
전체	259.5	57.6	184
국공립보육시설	247.4	63.0	34
법인보육시설	256.2	59.7	59
민간보육시설	256.4	60.7	45
가정보육시설	279.8	35.7	45
만 2세아			
전체	212.0	48.6	258
국공립보육시설	201.9	52.4	54
법인보육시설	211.0	50.9	84
민간보육시설	212.3	47.3	74
가정보육시설	228.1	34.4	45
만 3세 이상아			
전체	158.4	29.4	268
국공립보육시설	147.9	21.1	57
법인보육시설	150.7	23.6	94
민간보육시설	165.5	32.4	89
가정보육시설	183.4	32.0	28

나) 유아교육 재정의 지역 차이

〈표 III-2-21〉은 최근 3년간 시도 별 전체유치원 지원을 유아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이다. 총 예산액은 2004년은 4803억원, 2005년은 6286억원, 2006년은 68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유아 1인당 지원액도 2004년 89만원에서 2005년 11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2004년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21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높으며 서울과 대구가 각각 44만원, 40만원으로 가장 낮다. 2005년은 대체로 2004년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대구와 인천의 경우 총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나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유아 1인당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2-21〉에서 보듯이 유치원 예산은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역별 지원액이 적고 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1〉 시·도별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4~2006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사업액 (A)	원아수 (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 (A)	원아수 (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지방교육청 예산액
전 체	480,269	541,445	0.89	628,585	541,350	1.16	686,359
서울	38,040	87,468	0.44	52,914	85,302	0.62	59,104
부산	22,914	39,336	0.58	35,641	38,514	0.93	36,106
대구	11,459	28,604	0.40	25,915	28,261	0.92	26,938
인천	16,899	26,656	0.63	28,011	26,136	1.07	27,692
광주	15,076	15,643	0.96	19,047	15,977	1.19	21,350
대전	9,112	19,551	0.47	15,284	20,099	0.76	19,249
울산	10,201	17,936	0.57	13,628	17,718	0.77	16,511
경기	83,674	125,828	0.67	114,596	129,531	0.89	137,839
강원	29,270	15,853	1.85	30,667	15,530	1.98	41,958
충북	27,131	16,835	1.61	31,884	16,230	1.97	37,166
충남	32,034	20,182	1.59	35,515	20,701	1.72	37,155
전북	39,488	21,448	1.84	47,673	20,558	2.32	43,976
전남	45,325	21,438	2.11	47,850	21,078	2.27	48,253
경북	42,670	35,283	1.21	54,880	35,562	1.54	52,143
경남	50,154	43,844	1.14	66,203	44,447	1.49	77,433
제주	6,825	5,540	1.23	8,875	5,706	1.56	9,901

주: 2006년 2004년과 2005년은 총 사업비이고 2006년은 지방정부 예산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표 III-2-22〉은 시·도 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예산을 유아 1인당으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 대한 지원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치원 예산 대부분이 공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어서 시설유형별 불균형 상태이며, 동일 유형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총 예산액은 2005년은 4333억원이고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05년 349만원인데,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5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강원도가 높으며 대전이 227만원으로 가장 낮다. 사립유치원은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이 72만원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가 31만원으로 가장 낮다.

〈표 III-2-22〉 시·도별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예산 및 유아 1인당 예산: 200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공립			사립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총 사업액(A)	원아수(B)	유아1인당 평균지원액 (A/B)
전 체	433,330	124,030	3.49	195,255	417,320	0.47
서울	29,229	8,588	3.40	23,685	76,714	0.31
부산	10,324	3,181	3.25	25,316	35,333	0.72
대구	8,812	3,487	2.53	17,103	24,774	0.69
인천	14,738	4,577	3.22	13,273	21,559	0.62
광주	9,205	3,108	2.96	9,846	12,869	0.76
대전	6,705	2,955	2.27	8,579	17,144	0.50
울산	7,876	2,258	3.49	5,752	15,460	0.37
경기	84,379	31,031	2.72	30,218	98,500	0.31
강원	25,838	6,324	4.09	4,830	9,206	0.53
충북	27,324	7,763	3.52	4,560	8,467	0.54
충남	30,759	8,667	3.55	4,756	12,034	0.40
전북	39,021	7,137	5.47	8,653	13,421	0.65
전남	41,941	9,946	4.22	5,909	11,132	0.53
경북	41,822	10,701	3.91	13,059	24,861	0.53
경남	48,235	12,009	4.02	17,968	32,438	0.55
제주	7,122	2,298	3.10	1,753	3,408	0.5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내부자료. 재구성.

3.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이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재정 및 재정지원상의 격차를 시설유형별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양육비 지원 등 정부의 2005년도 육아 지원서비스 지원 총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0.29%이며 2006년은 0.3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005년 4조 817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61%를 부모가 부담하고 39%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유형간의 비용 분담 차이가 있고, 또한 지역적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의 정책시사점 및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투자되는 재정의 규모가 작다.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서비스 부모 부담률이 60% 수준에 달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2006년 0.35%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 비용 자체가 일정한 수준에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부모 비용부담 완화 이외에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예산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비용 지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부모비용에 대한 차등 지원 이외에 시설별 지원은 유치원의 경우 철저하게 국공립 중심이고,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에 훨씬 못 미치지만, 법인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보육비용은 정부 분담 40.2%, 부모부담 59.8%로 분석되었고, 유아교육 비용은 정부가 34.4%를 부담하고 부모가 65.6%를 부담한다. 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협력과 통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도 운영주체별로 지원상의 격차가 존재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운영주체별 공적자금 투입의 차이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공립에 비하여 부모 부담은 많지만, 1인당 총 소요비용은 더 적다. 2006년에 영아의 기본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용의 80% 수준이다. 유치원도 2005년 기준으로 원아의 연간 정부 지원은 공립 349만원, 사립 47만원으로 공립이 훨씬 많다.

넷째, 지역 재정 상태에 따른 사업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여, 지역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됨을 나타내었다. 보육사업의 경우 2006년도 시도 특별사업 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13%인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사업예산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로 가장 높고,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최저 수준이다. 2005년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아동 1인당 금액이 경기도가 31만원으로 가장 낮고,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IV. 제 특성별 육아지원 이용 및 비용 격차

제4장에서는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제 특성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전체 이용을 아동단위와 가구단위로 분석하고 이어서 각 서비스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먼저 소득계층, 지역, 모 학력, 모 취업여부, 모 직종 등 주요 독립변수별로 집단간 이용 및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중요도 및 설명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아동 1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서비스는 보육교육기관,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이하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육교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시설, 반일제이상 학원과 선교원이 포함되고, 특기보습학원은 단순한 특기와 보습을 위한 학원, 방문지도·학습지는 개별 및 그룹지도를 모두 포함하고, 개인양육지원은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영역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였다.

가. 소득계층별 차이

1) 이용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조사된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득기준 10분위로 이용률을 비교하면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에서는 48~67%에 분포하며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는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보습학원은 2.7~19.7%, 방문지도·학습지는 12.0~41.0%로 소득계층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개인양육지원은 3분위가 최저이고 그 전후로 높아지는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각각 19.7%, 3.4%로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각각 36.2%, 12.0%로 3.0배, 개인양육지원은 각각 34.2%, 17.9%로 1.9배로 10분위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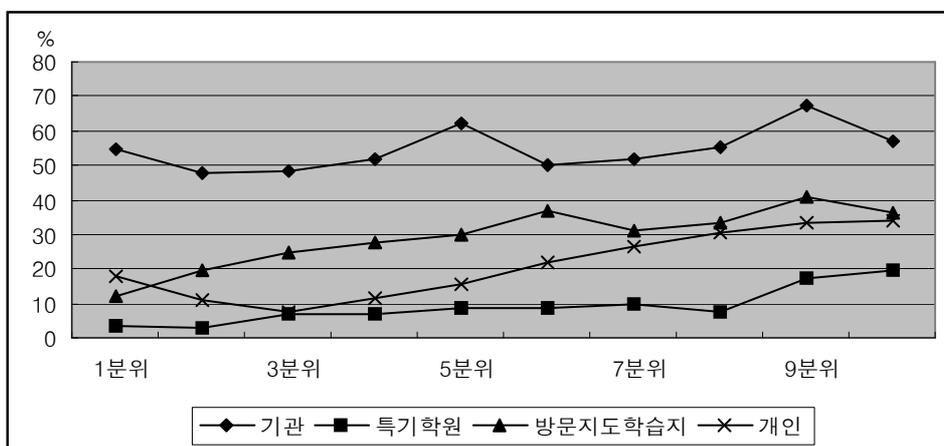
비율이 높다(표 IV-1-1, 그림 IV-1-1 참조).

〈표 IV-1-1〉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전체					취업모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2	(2,961)	69.1	10.6	27.6	48.1	(957)
1분위	54.5	3.4	12.0	17.9	(233)	66.7	-	5.3	16.1	(56)
2분위	47.8	2.7	19.5	10.8	(335)	67.2	3.5	24.6	31.0	(58)
3분위	48.2	6.8	24.8	7.5	(307)	82.2	12.3	20.5	23.3	(73)
4분위	51.6	6.7	27.6	11.5	(312)	82.5	8.8	23.8	38.8	(80)
5분위	61.9	8.7	30.0	15.7	(310)	76.7	5.8	18.6	42.7	(103)
6분위	50.3	8.5	37.1	21.6	(342)	67.3	15.9	29.9	55.1	(107)
7분위	51.8	9.7	30.9	26.3	(278)	63.6	10.8	31.8	54.5	(110)
8분위	55.0	7.6	33.6	30.3	(289)	61.2	5.8	27.3	64.2	(120)
9분위	67.2	17.2	41.0	33.6	(244)	70.2	16.3	38.7	51.8	(140)
10분위	56.9	19.7	36.2	34.2	(218)	59.8	17.0	34.9	66.4	(107)
$\chi^2(df=9)$	38.4**	82.7**	87.1**	151.5**	-	25.3**	28.4**	35.5**	83.2**	-
10분위/1분위	1.0	5.8	3.0	1.9	-	0.9	4.9#	6.6	4.1	-

주: ** $p < .01$, #는 10분위/2분위임.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V-1-1]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다음으로 취업모의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하여 방문지도·학습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낸다. 특히 개인양육지원은 전체 20.2%, 취업모

48.1%로 2배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취업모 서비스 이용률의 소득 분위별 차이는 소득순위별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육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특기보습학원 4.9배, 방문지도·학습지 6.6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4.1배이다(표 IV-1-1 참조).

〈표 IV-1-2〉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소득분위별 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유아는 4개 유형의 서비스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특기보습학원 5.7배, 방문지도·학습지 3.1배이다. 영아는 보육교육기관과 방문지도·학습지는 분위별로 일관성은 없고 개인양육지원은 1분위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방문지도·학습지 3.4배, 개인양육지원 2.6배로, 상하위 10%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 체	12.1	9.2	23.4	(1,171)	81.7	14.4	42.9	18.2	(1,790)
1분위	21.6	4.6	16.4	(87)	74.5	5.5	15.9	18.9	(145)
2분위	6.5	3.6	8.0	(138)	76.6	4.6	31.0	12.8	(197)
3분위	7.7	7.7	6.4	(130)	78.0	11.9	37.3	8.3	(177)
4분위	7.7	6.2	9.4	(129)	83.0	11.5	42.9	13.1	(182)
5분위	22.0	10.1	17.9	(108)	83.6	13.4	40.8	14.5	(201)
6분위	8.8	18.2	25.8	(147)	81.4	14.4	51.5	18.4	(195)
7분위	9.2	7.3	33.3	(109)	79.3	16.0	46.5	21.6	(164)
8분위	13.0	9.6	40.4	(14)	82.8	12.6	49.7	24.2	(174)
9분위	25.8	12.4	50.0	(89)	91.0	26.9	57.1	24.7	(155)
10분위	9.6	15.7	42.9	(82)	85.9	31.1	49.6	29.2	(135)
$\chi^2(df=9)$	44.0**	28.5**	137.9**	-	21.9**	78.9**	82.8**	42.9**	-
10분위/1분위	0.4	3.4	2.6	-	1.2	5.7	3.1	1.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73,500원, 10분위 279,9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8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8.6%로 다소 높고, 그 이외는 분위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지출 대비 비율은 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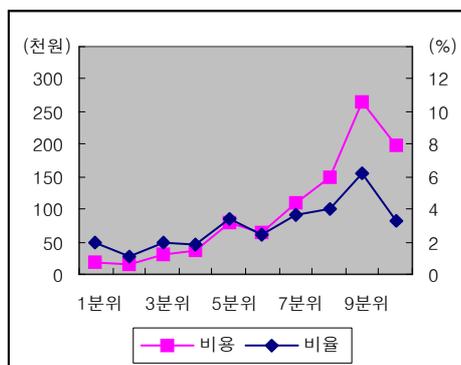
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표 IV-1-3, 그림 IV-1-2 참조).

〈표 IV-1-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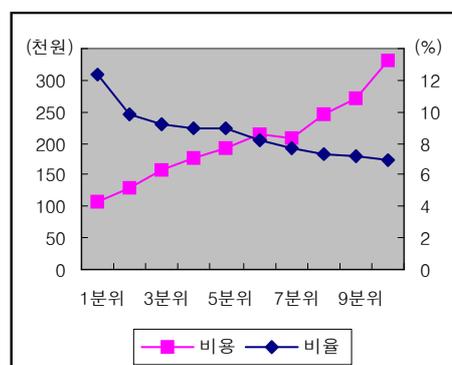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평균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표준편차	174.8	7.5	9.9	180.8	5.4	8.9	155.9	7.8	9.5
1분위	73.5	8.6	7.8	18.0	1.9	1.6	107.0	12.4	11.6
2분위	81.6	6.2	6.7	16.1	1.1	1.3	127.9	9.9	10.6
3분위	103.3	6.1	7.2	30.5	1.9	2.4	157.0	9.2	10.8
4분위	119.2	6.0	7.7	37.1	1.8	2.3	177.4	9.0	11.4
5분위	152.9	7.0	9.3	79.2	3.4	5.0	192.6	9.0	11.6
6분위	149.3	5.7	8.3	63.1	2.4	3.7	214.9	8.2	11.7
7분위	170.5	6.1	8.6	109.8	3.7	5.1	209.5	7.7	10.9
8분위	206.3	6.0	10.1	147.7	4.0	7.5	244.8	7.3	11.7
9분위	270.0	6.9	11.1	266.0	6.2	10.1	272.2	7.2	11.7
10분위	279.9	5.6	10.2	198.8	3.3	7.8	329.6	7.0	11.6
F	51.8**	3.3	5.8	27.4**	8.5**	13.3**	33.0**	6.7**	0.4
10분위/1분위	3.8	0.7	1.3	11.0	1.7	4.9	3.1	0.6	1.0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V-1-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비용이 1분위 18,000원, 9분위 266,000원으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10분위의 비용도 1분위의 11.0배가 된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도 대체로 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낸다. 유아의 비용은 1분위 107,000원, 10분위 329,6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1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모두 11%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소득과 소요되는 비용의 관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별 육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격차를 보면 유아보다 영아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영유아 전체는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유아보다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표 IV-1-4, 그림 IV-1-3 참조).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인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보면 차이가 있다. 유아에서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에 따른 비용도 많아지고 동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영아의 경우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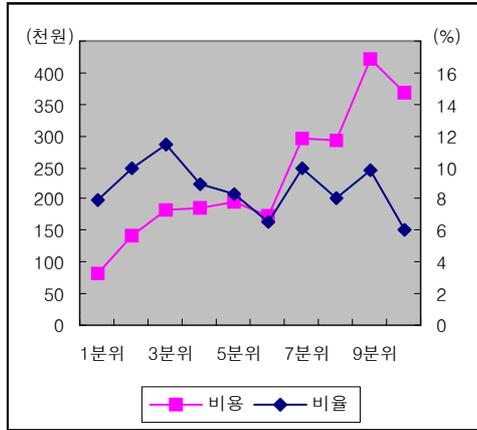
〈표 IV-1-4〉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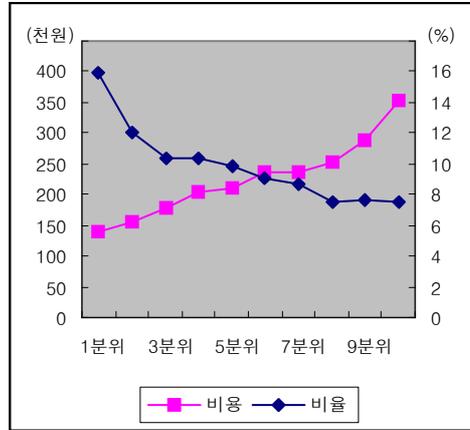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표준편차	165.4	7.3	9.5	221.5	6.2	10.7	147.2	7.6	9.1
1분위	130.0	14.7	13.9	80.6	7.9	7.3	138.6	15.9	15.0
2분위	153.8	11.8	12.7	141.2	9.9	11.3	155.1	12.0	12.8
3분위	179.3	10.6	12.5	182.9	11.4	14.6	178.8	10.4	12.3
4분위	202.0	10.2	13.0	186.4	9.0	11.8	204.5	10.3	13.2
5분위	208.2	9.5	12.7	193.9	8.3	12.2	211.7	9.9	12.8
6분위	222.3	8.5	12.3	174.2	6.6	10.3	236.9	9.1	12.9
7분위	249.7	9.0	12.6	294.6	10.0	13.6	237.5	8.7	12.3
8분위	263.7	7.6	12.8	293.0	8.0	14.8	253.7	7.5	12.2
9분위	324.2	8.2	13.3	421.8	9.8	15.9	287.0	7.6	12.3
10분위	357.9	7.2	13.0	369.5	6.1	14.4	353.8	7.5	12.5
F	38.9**	15.4**	0.4	11.4**	2.8**	2.1*	29.2**	15.5**	1.0
10분위/1분위	2.8	0.5	0.9	4.6	0.8	2.0	2.6	0.5	0.8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V-1-3] 비용 지불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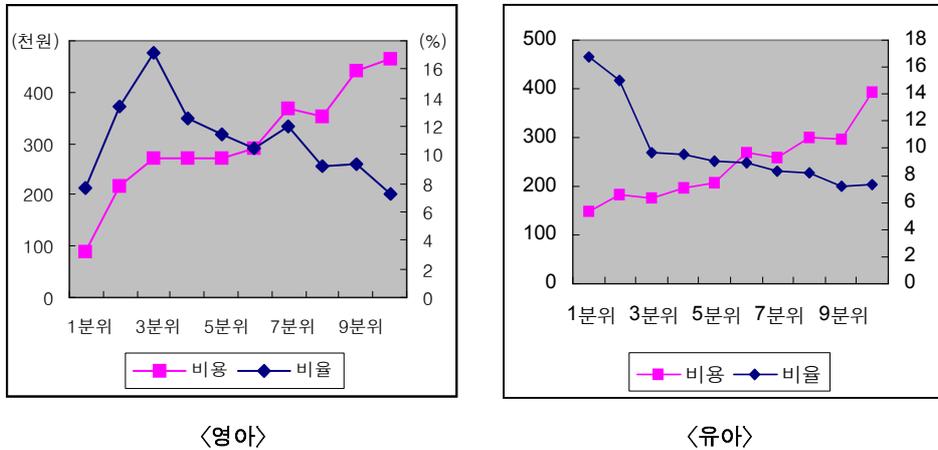
한편 지출 대비 비율은 영유아 전체와 유아의 1분위가 각각 13.9%, 15.0%로 다소 높고 이외는 대체로 12% 수준이다.

<표 IV-1-5>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842)			영아(수=220)			유아(수=62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80.0	9.6	14.1	359.8	10.2	17.1	251.8	9.4	13.0
표준편차	187.4	8.1	10.5	215.1	6.0	10.5	167.1	7.9	9.7
1분위	142.2	15.9	15.3	88.0	7.7	9.4	148.4	16.8	16.0
2분위	187.3	14.8	16.3	216.1	13.4	16.1	183.9	15.0	16.3
3분위	188.6	10.6	13.1	270.5	17.1	19.9	176.2	9.7	12.1
4분위	207.5	10.0	12.4	270.2	12.6	16.5	196.5	9.5	11.6
5분위	221.6	9.6	13.0	269.8	11.4	17.5	206.6	9.1	11.6
6분위	274.4	9.3	13.8	292.1	10.5	16.2	269.2	9.0	13.1
7분위	289.0	9.4	13.9	367.4	12.0	16.8	257.5	8.3	12.7
8분위	318.4	8.6	15.3	351.9	9.2	17.9	298.5	8.2	13.8
9분위	347.5	7.9	13.9	440.1	9.3	16.1	295.6	7.2	12.7
10분위	416.0	7.3	14.8	463.3	7.2	18.3	392.5	7.3	13.0
F	18.4**	7.1**	0.9	3.9**	3.5**	0.5	13.0**	6.6**	1.1
10분위/1분위	2.9	0.5	1.0	5.3	0.9	1.9	2.6	0.4	0.8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V-1-4] 취업모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다음으로 취업모 아동의 경우, 비용이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이 전체 아동이나 비용지불 아동보다 높으나, 소득분위별 격차는 전체 아동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였다. 영유아 전체 또는 유아만을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에 따른 비용 규모도 대체로 커지고, 반면에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영아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3분위까지는 높아지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3분위는 이 비율이 17.0%로 가장 높다. 이는 1, 2분위 저소득계층 대부분이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인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표 IV-1-5, 그림 IV-1-4 참조).

나. 지역별 차이

1) 이용

서비스 이용률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4종류의 서비스 중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읍·면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고, 이외 3가지 유형의 서비스는 모두 읍·면보다는 도시가 높아서, 각각 대도시의 이용률이 읍·면의 1.3배 정도가 된다. 특히 방문지도·학습지 이용률은 도시가 읍·면보다 8%p 정도 높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유의하다(표 IV-1-6 참조).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의 경우에는 개인양육지원 이용률이 도시가 읍·면보다 높았으나, 유아는 특기보습학원 이용률과 방문지도·학습지 등 이용에서 도시가 읍·면보다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표 IV-1-7 참조).

〈표 IV-1-6〉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 교육기관	특기 보습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6	(2,957)
대도시	52.4	8.5	30.9	22.4	(1,396)
중소도시	54.9	10.1	31.3	20.8	(1,026)
읍·면	57.1	6.7	23.0	17.9	(537)
$\chi^2(df=2)$	3.8	5.3	13.8**	5.9	-
대도시/읍·면	0.9	1.3	1.3	1.3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1-7〉 영아와 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12.1	9.2	23.5	(1,171)	81.7	14.4	42.9	18.7	(1,791)
대도시	13.5	11.3	26.5	(575)	79.8	14.4	44.6	19.6	(821)
중소도시	10.4	7.4	24.0	(406)	83.9	16.7	46.9	18.7	(622)
읍·면	11.5	6.8	18.6	(115)	82.2	10.3	31.8	17.4	(348)
$\chi^2(df=2)$	2.3	5.9	6.5*	-	4.1	7.4*	22.7**	0.9	-
대도시/읍면	1.2	1.7	1.4	-	1.0	1.4	1.4	1.1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영아, 유아 모두 비용이나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이 도시보다 읍·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전체와 유아의 서비스 이용비용은 대도시가 읍·면의 약 1.5~1.6배 정도인데, 영아는 2.4배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표 IV-1-8 참조).

비용 지불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전체와 영아, 유아 모두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비용수준도 낮고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전체나 영아, 유아 모두 도시가 읍·면의 약 1.4배 정도이다. 그러나 영아는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의 지역별로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표 IV-1-9 참조).

〈표 IV-1-8〉 전체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대도시	171.7	6.8	9.1	111.3	3.4	5.4	214.1	9.1	11.8
중소도시	163.3	6.6	9.0	82.2	2.7	4.2	216.2	9.2	12.1
읍·면	109.8	5.1	6.8	45.7	1.8	2.6	144.9	6.9	9.1
F	25.6**	10.7**	12.1**	10.2**	6.6**	7.5**	29.1**	12.3**	12.9**
대도시/읍·면	1.6	1.3	1.3	2.4	1.9	2.1	1.5	1.3	1.3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1-9〉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 아동 지역별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대도시	250.8	9.9	13.4	282.1	8.5	13.6	241.0	10.3	13.3
중소도시	241.5	9.8	13.4	270.5	8.9	14.0	235.2	10.0	13.2
읍·면	176.3	8.1	10.9	201.3	7.8	11.4	172.6	8.2	10.8
F	26.6**	7.7**	9.3**	2.4	0.5	1.0	24.8**	8.6**	8.4**
대도시/읍·면	1.4	1.2	1.2	1.4	1.1	1.2	1.4	1.3	1.2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1-10〉 취업모 영유아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871)			영아(수=231)			유아(수=64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84.2	9.6	14.3	369.7	10.3	17.6	253.3	9.4	13.0
대도시	319.6	10.2	15.2	386.6	10.4	17.8	286.1	10.1	13.9
중소도시	279.5	9.8	14.8	370.0	10.7	18.5	251.5	9.6	13.6
읍·면	199.4	7.8	10.8	261.9	8.7	13.3	189.3	7.6	10.4
F	24.0**	5.5**	10.5**	3.1*	0.9	2.0	15.5**	4.0*	5.8**
대도시/읍·면	1.6	1.3	1.4	1.5	1.2	1.3	1.5	1.3	1.3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와 영아, 유아 모두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비용수준도 낮고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영유아 전체나 영아, 유아 모두 대도시가 읍·면의 약 1.5~1.6배 정도이고,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은 1.2~1.4 수준이다. 그러나 영아는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의 지역별로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표 IV-1-10 참조).

다. 모 학력별 차이

1) 이용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모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개인양육지원은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다. 대학원 이상이 56.3%로 중학 이하 13.3%보다 43%p가 낮고, 비율은 4.2배가 된다. 그러나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는 중학 이하의 이용 비율은 매우 낮고 학력이 높아지면 점차 비율이 상승하지만 3년제 대학이 가장 높고 대학 이상이 되면 다시 이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표 IV-1-11 참조).

〈표 IV-1-11〉 전체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특기보습 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9	(2,904)
중학 이하	57.5	6.3	12.3	13.3	(106)
고등학교	56.4	7.9	30.4	15.7	(1,660)
3년제이하대학	48.7	13.4	32.8	24.1	(431)
대학	50.5	12.9	30.1	23.5	(645)
대학원 이상	39.7	7.9	23.8	56.3	(63)
$\chi^2(df=4)$	17.3**	26.5*	18.8*	85.9**	-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0.7	1.3	1.9	4.2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기관이나 개별적 교육 이용에서는 모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개인양육지원에서 모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특히 개인양육지원의 경우 모의 학력은 중학 이하가 이용률이 9.4%인데 비하여 대학원 이상은 66.7%로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의 7.1배이다. 유아의 경우는 기관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

이지 않았으나 사교육 영역인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등에서는 중학이하가 그 이상 학력보다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학원이상은 대학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는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표 IV-1-12 참조). 그러나 대학원이상과 중학이하의 학력을 비교하면 기관 이외에는 전자가 후자의 2.7~3.0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1-12〉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교육 기관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보육교육 기관	특기보습 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전체	12.1	9.2	2.7	(1,172)	81.7	14.4	42.9	19.8	(1,792)
중학 이하	7.5	5.1	9.4	(39)	87.9	6.3	16.4	15.5	(40)
고등학교	12.8	9.6	17.5	(602)	81.1	12.3	42.3	14.6	(102)
전문대	12.5	8.3	24.4	(192)	77.9	13.3	52.5	23.8	(193)
대학	11.0	9.6	31.2	(301)	85.4	23.9	48.1	16.9	(301)
대학원 이상	11.1	8.3	66.7	(36)	77.8	18.5	44.4	42.9	(36)
$\chi^2(df=4)$	1.5	1.2	62.8**	-	7.7	40.5**	31.4**	26.4**	-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1.5	1.6	7.1	-	0.9	3.0	2.7	2.8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서비스 이용비용은 모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전체 아동의 경우 비용은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이 3.4배, 영아 17.2배, 유아 2.5배로 나타났다.

〈표 IV-1-13〉 전체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중학 이하	90.7	5.7	6.8	17.0	1.1	1.1	134.2	8.2	10.1
고등학교	136.0	6.3	8.2	56.0	2.1	3.3	181.5	8.7	11.0
전문대	162.7	6.3	8.9	96.8	3.1	5.0	215.5	8.9	12.0
대학	205.3	6.4	9.4	140.6	3.9	6.2	262.0	8.5	12.3
대학원 이상	311.2	8.2	12.4	292.1	6.9	12.2	336.6	10.0	12.7
F	35.7**	1.2	5.3**	26.2**	11.9**	14.5**	27.2**	0.3	1.9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3.4	1.4	1.8	17.2	6.3	11.1	2.5	1.2	1.3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영아에서만 모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아 모의 대학원 이상 학력과 중학이하 학력을 비교하면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 1.1%, 대학원 이상 6.9%이고, 비용의 가구 월 평균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1.1%, 12.2%이다(표 IV-1-13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 모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의 비용이 전체는 2.7배, 영아 3.3배, 유아 2.4배로 나타났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영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는 서비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가 8.9%인데 대학원 이상은 11.2%로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 학력자의 1.3배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가 9.4%인데 대학원 이상은 19.7%로 2.1배이다(표 IV-1-14 참조).

〈표 IV-1-14〉 비용 지불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중학 이하	152.3	9.3	11.3	143.6	8.9	9.4	153.0	9.3	11.5
고등학교	205.0	9.5	12.3	196.8	7.5	11.5	206.5	9.9	12.5
전문대	245.9	9.5	13.4	266.1	8.5	13.8	239.3	9.9	13.3
대학	298.4	9.2	13.7	339.4	9.4	15.0	282.3	9.2	13.2
대학원 이상	417.5	11.0	16.6	474.4	11.2	19.7	366.6	10.9	13.9
F	47.4**	0.7	4.3**	14.6**	3.0*	4.3**	26.7**	0.7	1.0
대학원 이상 / 중학 이하	2.7	1.2	1.5	3.3	1.3	2.1	2.4	1.2	1.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모 아동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 모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의 비용이 전체는 3.0배, 영아 2.1배, 유아 2.7배이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의 학력별 차이는 비용지불아동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차이를 나타낸다(표 IV-1-15 참조).

〈표 IV-1-15〉 취업모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871)			영아(수=249)			유아(수=62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중학 이하	157.9	8.9	11.3	250.0	15.6	16.7	151.9	8.4	10.9
고등학교	238.9	9.7	13.5	295.4	9.4	15.6	224.9	9.7	12.9
전문대	296.8	9.5	15.2	357.6	9.9	18.5	271.8	9.3	13.8
대학	352.3	9.7	15.1	420.5	11.1	18.3	313.4	8.9	13.2
대학원 이상	471.8	11.1	18.4	524.6	11.4	21.6	412.3	10.6	14.7
F	28.4**	0.3	3.2*	6.5**	1.5	1.5	14.9**	0.5	0.6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3.0	1.2	1.6	2.1	0.7	1.3	2.7	1.3	1.3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라. 모 직종별 차이

1) 이용

〈표 4-1-16〉은 모의 취업 및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1-16〉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교육기관	특기보습 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9	(2,957)
관리전문직	55.9	12.2	28.5	60.0	(263)
사무직	65.3	10.2	27.6	62.8	(196)
서비스판매	73.7	11.0	29.9	42.3	(364)
생산노무직	82.7	6.7	22.1	25.2	(163)
무직(주부)	48.9	7.8	31.0	5.9	(1,918)
$\chi^2(df=4)$	171.8**	9.8*	6.7	859.6**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7	1.8	1.3	2.4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이 표를 보면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취업모가 높는데 취업 모 중에서도 생산노무직이 82.7%로 매우 높다. 직업상 지위가 높을수록 기관 이용률이 낮다. 그러나 그 이외 3가지 유형의 서비스는 생산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낮다. 관리전문직 자녀

의 이용률은 생산노무직의 1.3~2.4배이다. 개인양육지원이 2.4배이고, 특기보습학원이 1.8배이다. 한편 미취업모를 비교하면 보육교육기관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은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낮지만, 방문지도·학습지는 미취업모 아동의 이용비율이 오히려 높다.

〈표 IV-1-17〉에서는 영유아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아는 직업상 전문성이 높을수록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낮고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 이용 비율이 높음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의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의 이용률은 각각 3.5배, 1.9배이다. 유아의 경우는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에서는 직업상 전문성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의 이용률은 1.6~2.8배이다(표 IV-1-17 참조).

〈표 IV-1-17〉 영아와 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12.1	9.2	2.7	(1,172)	81.7	14.4	42.9	41.1	(1,790)
관리전문직	16.9	12.6	78.4	(119)	88.2	22.1	41.7	45.1	(144)
사무직	26.0	10.4	77.2	(77)	89.9	16.0	38.7	53.3	(119)
서비스판매	37.3	3.6	61.6	(84)	84.4	14.2	37.6	36.9	(280)
생산노무직	40.0	-	42.3	(25)	90.5	8.0	26.1	21.7	(137)
무직(주부)	6.7	9.5	8.2	(866)	78.0	14.0	48.8	4.1	(1,052)
$\chi^2(df=4)$	109.8**	7.5	502.6**	-	27.6**	11.8*	34.1**	403.9**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4	3.5	1.9	-	1.0	2.8	1.6	2.1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전체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의 모 학력별 집단간 격차의 차이를 보면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모두 관리전문직을 가진 모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이 생산노무직의 1.7~8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은 집단간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전업주부와 비교하면 관리전문직이 전업주부 비용의 2.8배로 비용을 더 소요한다. 영아의 경우, 관리전문직을 가진 모의 비용이 전업주부의 비율의 13.8배인데 반해, 유아는 1.7배로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관리전문직 8.2%, 전업주부 5.2%인데, 영아는 각각이 7.8%, 1.1%로 차이가 크고 유아는 모두 8.5%로 차이가 거의 없다(표 IV-1-18 참조).

〈표 IV-1-18〉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관리전문직	309.5	8.2	13.3	325.3	7.8	14.4	296.6	8.5	12.4
사무직	305.2	8.8	14.6	324.9	8.5	15.2	292.4	9.0	14.2
서비스판매	217.9	8.6	11.7	203.0	7.5	10.6	222.4	8.9	12.1
생산노무직	169.9	9.0	11.1	188.3	7.2	11.6	166.5	9.3	11.1
무직(주부)	109.2	5.2	6.5	23.6	1.1	1.4	179.5	8.5	10.8
F	160.0**	35.8**	72.7**	208.9**	127.3**	164.2**	33.9**	0.4	4.6**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8	0.9	1.2	1.7	1.1	1.2	1.8	0.9	1.1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1-19〉 비용 지불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관리전문직	350.5	9.3	15.1	412.4	9.9	18.3	308.8	8.9	12.9
사무직	333.3	9.6	15.9	394.5	10.3	18.4	299.7	9.2	14.6
서비스판매	248.9	9.8	13.4	294.6	10.9	15.4	238.8	9.5	12.9
생산노무직	193.5	10.2	12.7	282.0	10.8	17.4	181.6	10.1	12.1
무직(주부)	196.2	9.3	11.8	196.8	5.9	7.6	208.5	9.9	12.5
F	69.5**	0.7	12.0**	46.3**	14.4**	27.2**	26.1**	0.8	1.6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8	0.9	1.2	1.5	0.9	1.1	1.7	0.9	1.1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모의 직업특성간의 차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에 더 의미있다고 하겠다. 〈표 IV-1-19〉를 보면 전체 아동의 관리전문직 육아지원비용은 생산노무직의 1.8배, 영아 1.5배, 유아 1.7배로 모 취업특성별 격차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 수준은 전체 아동에서 나타난 차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비용지불

아동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생산노무직이 10%를 넘는 수준이지만 직종간 유의한 차이는 아니고, 지출 대비 비율은 관리전문직이 15.1%, 생산노무직 12.7%, 무직 11.8%로 관리전문직이 생산노무직의 1.2배 정도로 직종간의 차이를 보였다.

마. 아동 단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이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분위, 영유아수,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학력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 고,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표 IV-1-20>은 아동 1인당 총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서는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유의하여 5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모취업, 도시거주, 모 대학원이상 학력, 모 4년제대 학력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누적 Adjusted R² 값은 소득분위가 0.153, 여기에 모취업이 포함되면 0.186으로 증가하고 거주지,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215로 증가하였다.

<표 IV-1-20>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65.33(8.92)**		
소득분위	17.51(1.31)**	0.29	0.153
모 취업	59.34(6.62)**	0.18	0.186
도시거주	38.75(7.49)**	0.11	0.198
모 대학원이상	119.81(21.14)**	0.12	0.208
모 4년제대학	34.67(8.08)**	0.09	0.215

주: ** p<.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학 변수임

<표 IV-1-21>은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최종 모형 분석결과인데, 이를 보면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동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모 대학원 이상 학력, 모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이다. 이들 5개 변수의 비용에 대한 설명력 0.215에 비하여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다. 누적 R² 조정치가 소득분위는 0.055이고, 거주지, 모 대학원 이상, 모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가 포함되어 0.08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변수는 종속변수가 비용인 분석에 포함된 유의한 변수와 동일하다.

〈표 IV-1-21〉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12.53(0.60)		
소득분위	-0.76(0.06)**	-0.30	0.055
도시거주	1.91(0.35)**	0.12	0.071
모 대학원이상	3.10(0.98)**	0.07	0.074
모 취업	0.84(0.31)**	0.06	0.077
모 4년제대	0.95(0.37)**	0.06	0.081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학 변수임.

다음으로 〈표 IV-1-22〉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 들어간 9개 독립변수 중 단지 2개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용에 모취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도시거주이다. 그러나 이 두 변수의 Adjusted R²값은 0.021에 불과하다. 앞에서 유의하게 분석된 학력 및 소득분위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22〉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10.32(0.43)		
모 취업	2.12(0.41)**	0.12	0.013
도시거주	1.93(0.46)**	0.09	0.021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소득분위,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이상 변수임.

2.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영유아가 있는 가구 단위별로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2-1〉과 〈그림 IV-2-1〉은 모 취업여부와 영유아수별로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구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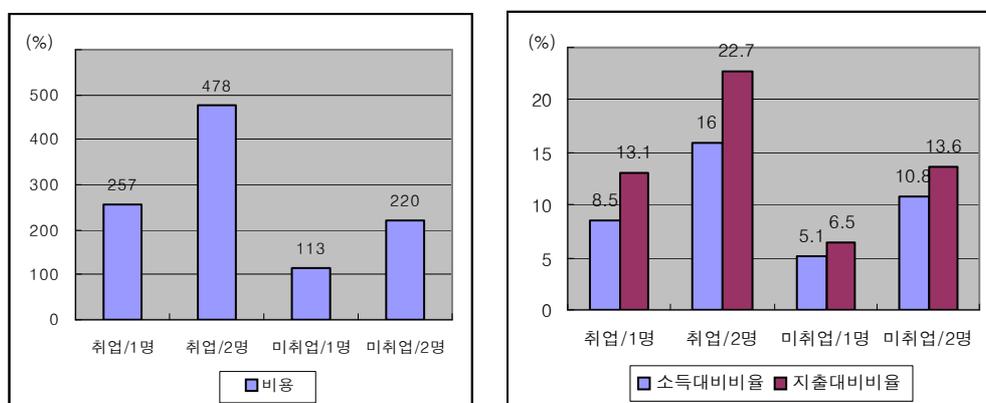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208,800원인데 영유아수 1명은 169,500원, 2명이상 296,100원으로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8배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영유아 가구 전체의 육아지원비용은 소득 대비 8.4%이고 지출 대비 11.4%이다. 아동수별로는 1명이 각각 6.6%, 9.2%인데 2명 이상은 12.4%, 16.4%로 비율이 높아진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2명 이상이 1명보다 평균 1.88배, 지출 대비 비율은 1.78배가 된다.

〈표 IV-2-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영유아 1명			영유아 2명이상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가구	208.8	8.4	11.4	169.5	6.6	9.2	296.1	12.4	16.4
취업모가구(A)	312.2	10.4	15.5	256.7	8.5	13.1	478.4	16.0	22.7
미취업모가구(B)	150.3	7.1	9.0	113.0	5.1	6.5	220.0	10.8	13.6
A/B	2.1	1.5	1.7	2.3	1.7	2.0	2.2	1.5	1.7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V-2-1〕 영유아 수 및 모취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의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미취업모 대비 취업모가 비용은 16만원 이상으로 2.1배를 지출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3.3%p가 더 높고, 지출 대비 비율은 6.5%p가 더 높아서 비율로는 각각 1.5배, 1.7배이다. 이러한 격차는 아동수별 차이 없이 공통되는 현상이다(표 IV-2-1 참조).

다음은 이러한 비용과 비율의 제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제시하였다.

가. 가구특성별 차이

1) 소득계층별 격차

먼저 가구 단위의 분석으로 영유아를 둔 가구의 영유아 수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총 비용⁴⁹⁾을 제시하였다(표 IV-2-2 참조).

49)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양육지원비는 제외됨.

소득계층별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은 모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였다. 전체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비 4.0배로 아동 1인당 비용의 격차 3.8배(표 IV-1-3 참조)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 IV-2-2〉 영유아 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003)			1명(수=1,382)			2명 이상(수=621)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08.8	8.4	11.4	169.5	6.6	9.2	296.1	12.4	16.4
표준편차	219.8	8.7	11.7	185.3	6.9	9.8	261.7	10.8	13.9
1분위	85.0	9.8	9.3	66.0	7.7	7.4	138.0	15.7	14.5
2분위	109.0	8.4	9.0	82.4	6.0	6.5	168.1	13.6	14.6
3분위	137.5	8.1	9.5	115.8	6.8	8.3	181.1	10.6	12.0
4분위	163.2	8.2	10.6	121.4	6.1	7.6	244.2	12.3	16.2
5분위	209.9	9.6	12.7	173.0	7.8	10.4	277.6	12.9	17.0
6분위	196.9	7.5	10.9	158.3	6.0	8.6	281.6	10.9	15.8
7분위	234.3	8.4	11.8	189.1	6.6	9.5	324.9	11.8	16.3
8분위	272.7	7.9	13.3	217.8	6.5	11.0	404.4	11.4	18.7
9분위	344.9	8.8	14.2	273.8	6.7	11.2	535.5	14.4	22.2
10분위	336.5	7.9	13.3	287.7	6.2	11.5	464.8	12.4	17.9
F	36.8**	1.3	5.0**	26.7**	1.2	4.7**	16.8**	1.2	2.2*
10분위/1분위	4.0	0.8	1.4	4.4	0.8	1.6	3.4	0.8	1.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수별로는 아동 1인 가구는 4.4배, 아동 2인이상 가구는 3.4배이다.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아동수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소득계층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율이 낮다. 그러나 가구지출 대비 비율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10분위는 1분위의 1.4배이다(표 IV-2-2 참조)

〈표 IV-2-3〉은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하였다.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비 배수는 전체는 5.6배로 전체 아동 대상의 격차 4.0배(표 IV-2-2 참조)보다 더 크다. 아동수별로도 이러한 차이는 마찬가지로이다.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아동수별로 차이가 나지만 아동수가 동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가구지출 대비 비용의 차이 역시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대

비 2.0배이다.

〈표 IV-2-3〉 모취업 가구 영유아수 및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711)			1명(수=533)			2명이상(수=178)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312.2	10.4	15.5	256.7	8.5	13.1	478.4	16.0	22.7
표준편차	260.9	8.8	12.8	210.0	6.3	10.4	321.7	12.3	16.0
1분위	79.7	9.4	8.8	74.9	9.1	8.7	102.4	10.6	9.7
2분위	160.2	12.7	14.0	144.3	10.5	11.2	274.4	28.9	33.7
3분위	215.7	12.1	14.7	167.7	9.1	11.3	359.6	21.0	24.9
4분위	225.1	10.8	13.5	190.3	9.2	11.9	378.7	17.9	20.8
5분위	276.5	12.0	16.1	229.1	9.1	13.6	361.9	17.0	20.6
6분위	286.4	9.8	14.5	238.0	8.3	12.6	406.1	13.6	19.1
7분위	340.2	11.0	16.3	295.9	9.7	14.1	439.7	13.9	21.3
8분위	387.0	10.5	18.6	296.0	8.1	15.3	649.6	17.3	28.1
9분위	404.1	9.3	16.2	312.4	7.2	12.8	676.8	15.6	26.5
10분위	447.0	8.9	17.2	400.1	7.4	15.9	599.7	13.6	21.7
F	15.1**	1.5	2.6**	13.2**	1.5	2.1*	5.5**	1.5	1.6
10분위/1분위	5.6	0.9	2.0	5.3	0.8	1.8	5.9	1.3	2.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지역별 격차

다음 〈표 IV-2-4〉는 전체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수에 따른 지역별 가구단위 비용을 나타낸다. 비용은 전체, 영유아 1명 및 2명이상 가구에서 모두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도시에 비해서 읍·면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이 가구소득이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낮다. 대도시 대비 읍·면의 비율이 1.3~1.6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모 가구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IV-2-5 참조).

〈표 IV-2-4〉 전체 가구 영유아 수 및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003)			1명(수=1,382)			2명이상(수=621)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08.0	8.4	11.4	168.8	6.6	9.2	294.7	12.5	16.4
대도시	224.8	8.8	11.9	182.6	7.0	9.6	324.4	13.2	17.4
중소도시	213.3	8.5	11.7	177.5	6.6	9.4	293.2	12.8	16.8
읍·면	152.4	7.0	9.4	110.8	5.3	7.3	230.0	10.1	13.3
F	14.7**	5.9**	6.3**	14.1**	5.0**	5.0**	5.8**	3.9*	3.9*
대도시/읍면	1.5	1.3	1.3	1.6	1.3	1.3	1.4	1.3	1.3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2-5〉 취업모 가구 영유아 수 및 지역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711)			1명(수=535)			2명이상(수=178)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311.8	10.4	15.5	256.3	8.6	13.1	478.4	16.0	22.7
대도시	355.1	11.2	16.7	290.0	9.1	14.1	541.7	17.4	24.1
중소도시	304.7	10.4	15.9	260.9	8.6	13.5	456.7	16.4	24.0
읍·면	217.4	8.4	11.8	162.9	7.0	9.7	362.0	12.0	17.4
F	14.0**	5.0**	7.3**	13.5**	3.7*	6.6**	4.4*	2.6	2.6
대도시/읍면	1.6	1.3	1.4	1.8	1.3	1.5	1.5	1.5	1.4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3) 가구주 학력 및 직종별 격차

〈표 IV-2-6〉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가구주 학력 및 영유아수별 가구단위 비용이다. 전반적으로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진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 가구의 비용은 전체나 영유아 1명, 2명인 경우 모두 2.6배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의 학력집단간 차이는 모두 아동 1명일 때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영유아 가구 영유아 수 및 가구주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003)			1명(수=1,382)			2명(수=621)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08.0	8.4	11.4	168.8	6.6	9.2	294.7	12.5	16.4
중학 이하	122.9	7.7	9.3	100.8	5.4	6.7	186.2	14.4	17.1
고등학교	170.2	8.3	10.6	134.9	6.4	8.4	250.0	12.6	15.8
전문대	212.0	8.9	12.5	171.3	6.7	9.8	272.6	12.2	16.5
대학	26.25	8.5	12.3	217.2	7.0	10.3	369.8	12.1	17.2
대학원 이상	317.9	8.4	12.5	259.7	6.9	11.3	479.6	12.6	15.8
F	28.3**	0.4	3.6**	21.2**	1.3	5.0**	11.2**	0.3	0.3
대학원 이상/ 중학이하	2.6	1.1	1.3	2.6	1.3	1.7	2.6	0.9	0.9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2-7〉 취업모 가구 영유아 수 및 가구주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711)			1명(수=536)			2명(수=178)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311.8	10.4	15.5	256.3	8.6	13.1	478.4	16.0	22.7
중학 이하	164.0	9.7	12.7	147.0	6.9	9.1	212.2	17.5	23.1
고등학교	241.7	10.0	13.8	199.6	8.3	11.7	379.8	15.7	20.9
전문대	323.9	10.9	17.7	261.4	9.1	14.6	507.7	16.3	26.7
대학	393.2	10.8	16.8	321.4	8.9	14.3	578.3	15.7	23.3
대학원 이상	470.4	10.8	17.9	395.5	9.4	17.2	823.5	17.4	21.1
F	20.6**	0.4	3.5**	15.8**	1.1	4.6**	8.4**	0.1	0.6
대학원 이상/ 중학이하	2.9	1.1	1.4	2.7	1.4	1.9	3.9	1.0	0.9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모 가구는 가구주 학력별 가구단위 비용의 격차가 전체보다 다소 크다. 전반적으로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데,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 가구의 비용이 전체가구는 2.9배, 영유아가 1명인 가구는 2.7배이고, 2명인 가구가 3.9배이다. 비용이 많은 경우 가구소득 대비 비율의 차이는 없으나, 지출에서는 아동이 1명인 경우가 비율이 다소 높다(표 IV-2-7 참조).

〈표 IV-2-8〉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가구주 직종과 영유아수별 가구단위 비용이다. 전반적으로 가구주가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인 경우 생산노무직이나 무직에 비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하는 비용이 1.5~1.7배로 높다. 가구소득 대비 비

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취업모의 경우도 이러한 격차 수준은 대체로 유사하다(표 IV-2-9 참조).

〈표 IV-2-8〉 영유아 가구 영유아수 및 가구주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2,003)			1명(수=1,382)			2명(수=621)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08.0	8.4	11.4	168.8	6.6	9.2	294.7	12.5	16.4
관리전문직	258.8	7.7	11.7	217.7	6.3	10.0	364.6	11.5	15.9
사무직	261.1	8.8	13.4	209.6	6.9	11.0	352.3	12.3	17.7
서비스판매	207.4	8.9	11.3	169.4	7.0	9.0	293.9	13.2	16.6
생산노무직	159.7	7.8	10.2	125.4	5.9	7.7	235.8	12.2	15.6
무직	136.1	11.4	11.3	114.2	9.7	9.3	189.8	15.6	16.2
F	23.6**	5.1**	4.6**	17.4**	5.8**	5.2**	8.2**	1.1	0.5
관리직/생산직	1.6	1.0	1.1	1.7	1.1	1.3	1.5	0.9	1.0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2-9〉 취업모 가구 영유아수 및 가구주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711)			1명(수=536)			2명(수=178)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400.8	10.1	16.7	650.8	16.6	24.7	332.6	8.3	14.5
관리전문직	414.6	11.5	19.7	598.1	16.8	25.8	328.5	9.0	16.8
사무직	279.8	10.2	14.1	389.7	14.3	19.7	242.8	8.8	12.2
서비스판매	224.6	9.4	13.2	349.0	14.1	19.7	184.5	7.8	11.1
무직	180.8	13.7	14.8	349.9	28.4	31.4	139.1	10.1	10.7
F	21.0**	2.8*	6.3**	8.3**	2.9*	2.0	15.8**	1.2	5.8**
관리직/생산직	1.8	1.1	1.3	1.9	1.2	1.3	1.8	1.1	1.3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나. 가구 단위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이 영유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분위, 영유아수, 모의 취업 여부, 거주지역, 모학력, 최연소아동연령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 고,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표 IV-2-10>은 먼저 총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서는 10개 독립변수 중 6개 변수가 유의하여 6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가구당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이고, 다음이 영유아수,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최연소자녀연령은 유의하지 않아서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누적 Adjusted R² 값을 보면 소득분위가 0.145이고, 소득분위에 유아수가 포함되면 0.204로 증가하고, 모취업여부를 다시 포함되면 0.270으로 증가하고 이에 거주지 및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295로 증가하였다.

즉, 소득, 영유아수, 취업의 세 가지 변수로 육아지원비용을 27.0% 설명한다. 이는 아동 단위분석에서 소득분위,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의 다섯 개의 변수가 21.5%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설명력이 높다.

<표 IV-2-10>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140.83(20.36)**		
소득분위	23.02(1.87)**	0.30	0.145
영유아수	120.32(8.99)**	0.30	0.204
모 취업	118.76(9.77)**	0.28	0.270
도시거주	57.70(12.88)**	0.10	0.283
모 대학원 이상	92.27(22.16)**	0.09	0.288
모 4년제대학	40.41(10.86)**	0.09	0.295

주: ** $p < .01$, 제외된 독립 변수는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최연소자녀연령 변수임

<표 IV-2-11>은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동일한 방법의 분석결과이다. 이 분석에서는 5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5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다. 최종모형을 보면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유아수이고 다음이 소득, 모취업, 도시거주, 최연소자녀연령으로 나타났다. 더미화한 5개 학력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에 비하여 이들 5개 변수의 설명력은 매우 낮다. 누적 Adjusted R² 값을 보면 영유아수가 0.079이고, 영유아수에 소득분위 포함되어 0.102로 증가하고, 여기에 모취업이 다시 포함되면 0.118로 증가하고 이외 거주지 및 최연소 아동 연령이 포함되어 0.147로 증가하였다.

〈표 IV-2-11〉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비용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0.75(1.22)**		
영유아수	5.77(0.46)**	0.37	0.079
소득분위	-0.55(0.08)**	-0.18	0.102
모 취업	2.49(0.42)**	0.15	0.118
모 도시거주	3.21(0.55)**	0.14	0.136
최연소아동연령	0.55(0.13)**	0.12	0.147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학력변수 5개임.

끝으로 〈표 IV-2-12〉는 종속변수가 가구 지출 대비 비용 비율인 분석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가구당 비용의 지출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영유아수이고 다음이 모취업, 도시거주이다. 소득변수와 더미화한 5개 학력변수, 최저아동연령은 지출 대비 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한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을 누적 Adjusted R² 값으로 보면 영유아수가 0.056이고, 모취업이 포함되어 0.100로 증가하고, 여기에 도시거주 변수가 들어가서 0.111로 증가하였다.

〈표 IV-2-12〉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1.89(1.09)		
영유아수	5.99(0.52)**	0.29	0.056
모 취업	4.93(0.56)**	0.22	0.100
모 도시거주	3.31(0.74)**	0.11	0.111

주: ** $p < .01$,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는 소득분위, 학력변수 5개, 최연소자녀연령 변수임.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분석에 포함된 유의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가구가 지출하는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비용 규모 27.0%,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11.8%, 지출 대비 비율 11.1%로 차이를 나타냈다. 3개 종속변수에 영유아 수, 모취업, 도시거주가 공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는 비용과 소득 대비 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출 대비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육아지원 유형별 이용 및 비용

앞에서는 아동 1인 및 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서비스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어서 여기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를 보육교육기관, 특기학원, 개별지도 등 사교육,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서비스별로 부모의 제 특성별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보육교육(유사)기관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앞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의 전체 이용 비율은 48~67%에 분포하며 소득수준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4개 서비스를 각각으로 구분하여 이용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계층, 지역, 모 학력, 모 직종 변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각 변수별 차이로 살펴본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소득계층별 차이

가)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별 이용비율은 <표 IV-3-1>과 같고, <표 IV-3-2>에서는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은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와 9, 10분위를 비교하면 이용률의 차이가 13%p 정도로 9, 10분위가 두드러지게 높고, 소득수준별 일관된 차이를 나타낸다.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2.4배이다. 반일제이상학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1분위의 비율이 가장 낮아서,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1.7배이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일관된 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반면에 선교원은 2, 3분위가 2%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표 IV-3-1〉 영유아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2004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1분위	37.5	9.9	5.2	2.2	(232)
2분위	26.6	9.9	9.0	2.4	(355)
3분위	27.4	12.7	5.9	2.6	(307)
4분위	24.4	18.3	8.3	1.9	(312)
5분위	33.0	16.5	11.0	1.9	(309)
6분위	24.0	16.7	8.8	1.5	(342)
7분위	28.4	16.2	6.1	1.8	(278)
8분위	26.3	18.0	8.7	2.1	(289)
9분위	33.2	23.4	9.4	1.2	(244)
10분위	23.4	23.9	8.7	1.4	(218)
$\chi^2(df=9)$	25.3**	39.7**	2.6	10.9**	-
10분위/1분위	0.6	2.4	1.7	0.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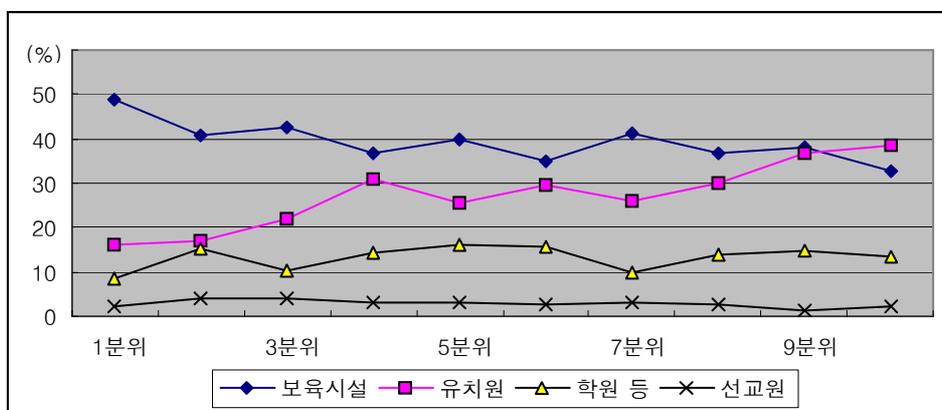
〈표 IV-3-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9.1	27.2	13.4	2.9	(1,790)
1분위	19.3	(88)	48.6	15.9	8.3	2.1	(145)
2분위	6.5	(138)	40.6	16.8	15.2	4.1	(197)
3분위	7.7	(130)	42.4	22.0	10.2	4.0	(176)
4분위	6.2	(129)	36.8	30.8	14.2	3.3	(183)
5분위	20.4	(108)	39.8	25.4	15.9	3.0	(201)
6분위	8.8	(147)	35.1	29.4	15.5	2.6	(194)
7분위	8.2	(101)	41.2	26.0	10.0	3.0	(169)
8분위	11.3	(115)	36.6	29.9	13.8	2.9	(174)
9분위	24.7	(89)	38.1	36.8	14.8	1.3	(156)
10분위	8.4	(83)	32.6	38.5	13.3	2.2	(135)
$\chi^2(df=9)$	40.7**	-	115	415**	9.3	3.9	-
10분위/1분위	0.4	-	0.7	2.4	1.6	1.0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V-3-1]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1, 5, 9분위에서 매우 높은 양상으로 나타나서 소득수준과 이용간의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유아는 소득 10분위별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지고, 유치원 이용은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분위와 10분위를 비교하면 보육시설은 10분위가 1분위보다 16.2%p가 낮고, 유치원은 12.6%p가 높아서 10분위가 1분위의 2.4배이다.

유아와는 달리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소득분위별로 일관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유아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에 영아의 경우 취업모 등 보육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비용

<표 IV-3-3>, <그림 IV-3-2>는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과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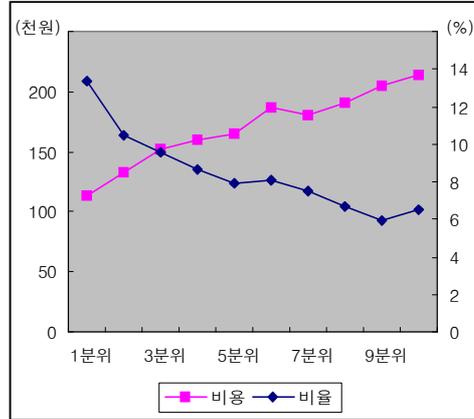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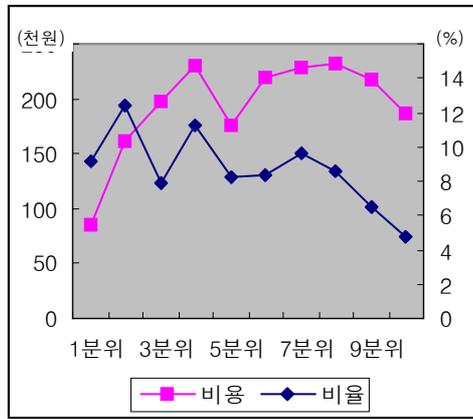
영아는 기관이용 비용이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2.2배로 매우 크지만 분위에 따라 이용률이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다. 유아의 경우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1.9배이고, 비용이 소득 10분위와는 정적인 관계이나 소득 대비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표 IV-3-3>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595)			영아(수=140)			유아(수=1,456)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평균	172.2	8.4	10.3	199.0	8.4	10.9	170.5	8.4	9.9
표준편차	78.1	5.4	5.3	81.5	4.7	5.7	78.6	5.4	5.4
1분위	110.0	12.8	11.6	85.4	9.2	7.8	113.9	13.4	12.2
2분위	134.0	10.6	10.8	161.2	12.4	12.2	132.4	10.5	10.7
3분위	154.7	9.5	11.0	198.0	7.9	17.9	151.6	9.6	10.5
4분위	164.0	8.8	10.2	229.2	11.3	13.5	159.9	8.7	10.0
5분위	166.6	7.9	10.0	175.0	8.2	11.1	165.4	7.9	9.9
6분위	189.7	8.1	10.3	219.2	8.3	11.7	187.2	8.1	10.2
7분위	184.1	7.7	9.5	227.6	9.6	10.8	181.0	7.5	9.4
8분위	194.5	6.9	9.4	232.2	8.6	11.8	190.6	6.7	9.2
9분위	206.7	6.0	8.7	216.7	6.5	9.4	205.0	5.9	8.6
10분위	212.5	6.4	8.0	186.8	4.7	6.2	214.3	6.5	8.1
F	26.7**	22.9**	5.7**	6.3**	2.0*	3.5**	23.1**	22.8**	5.8**
10분위/1분위	1.9	0.5	0.7	2.2	0.5	0.8	1.9	0.5	0.7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V-3-2]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2) 지역별 차이

가) 이용

4종류 기관 서비스의 총괄 이용률은 읍·면이 도시보다 높다. 그러나 이 4가지 기관은 기관별로 세분해서 보면 보육시설만 읍·면이 도시보다 높고 이외 3개 기관 이용률은 읍·면보다 도시가 높다. 읍·면 대비 대도시의 이용률이 보육시설은 0.6인데 비하여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1.4이다. 선교원은 대도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IV-3-4〉 영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대도시	24.9	16.6	8.3	2.9	(1,396)
중소도시	26.2	18.7	9.4	1.2	(1,028)
읍·면	39.1	12.2	5.9	0.7	(539)
$\chi^2(df=2)$	41.5**	10.6**	5.7	13.8**	-
대도시/읍·면	0.6	1.4	1.4	4.1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3-5〉 영아와 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8.9	27.2	13.4	2.9	(1,792)
대도시	12.5	(575)	33.6	28.1	14.0	4.0	(821)
중소도시	9.6	(406)	37.0	30.7	15.3	1.8	(622)
읍·면	10.5	(190)	54.7	18.9	8.9	1.1	(348)
$\chi^2(df=2)$	2.1	-	47.4**	16.3**	8.2*	14.1**	-
대도시/읍면	1.2	-	0.6	1.5	1.6	3.6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보면 영아 보육시설 이용은 중소도시에서 이용률이 가장 낮고 대도시가 가장 높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읍·면이 54.7%로 도시보다 크게 높고, 유치원은 반대로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9.2~11.8%p가 낮다. 반일제 이상 학원과 선교원 이용률도 도시가 농촌보다 높다. 읍·면 대비 대도시의 이용률이 보

육시설은 0.6인데 비하여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1.5~1.6이다. 농어촌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이 도시보다 낮다.

나) 비용

4개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또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본 경우, 모두 도시에 비하여 읍·면에서 비용 수준이 낮다.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비용 차이가 다소 커서 읍·면 대비 대도시의 비용이 영아 1.1배, 유아 1.3배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유아는 읍·면이 도시보다 낮지만 영아는 읍·면과 중소도시가 유사한 수준이고 대도시가 이보다 낮게 산출되었다(표 IV-3-6 참조).

〈표 IV-3-6〉 영유아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595)			영아(수=140)			유아(수=1,456)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172.2	8.4	10.3	199.0	8.4	10.9	170.5	8.4	9.9
대도시	180.3	8.6	10.1	195.9	7.4	11.0	178.5	8.7	10.2
중소도시	180.0	8.8	8.9	186.0	9.8	10.4	179.5	8.7	10.1
읍·면	137.8	7.5	9.6	175.5	9.4	11.6	135.0	7.4	8.7
F	36.9**	5.8*	7.8**	0.6	4.0*	0.4	37.4**	6.7**	10.9**
대도시/읍·면	1.3	1.1	1.1	1.1	0.8	0.9	1.3	1.2	1.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3) 모 학력별 차이

가) 이용

4개 기관 이용에서의 모 학력별 차이를 보면 보육시설은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에 비하여 이용 비율이 11.7%p가 낮고, 반일제이상학원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과 선교원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 비율에서 반일제이상학원이 0.3으로 중학이하의 저학력자의 이용이 두드러짐을 나타냈고, 보육시설과 선교원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치원은 차이가 없었다.

영아 보육시설 이용은 모 학력 중학이하가 타 학력자에 비하여 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대학원이상 이용률이 중학이하의 1.5배 높은 이용률은 보였다. 그러나 전

체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이는 중학이하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다닐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수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IV-3-7〉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중학 이하	29.2	17.9	11.4	1.9	(106)
고등학교	28.9	15.2	9.4	2.3	(1,661)
전문대	25.9	14.5	7.4	1.4	(433)
대학	24.1	20.0	5.3	1.2	(644)
대학원 이상	17.5	17.7	3.2	1.6	(63)
$\chi^2(df=4)$	12.5**	9.3	14.4**	3.5	-
대학원 이상/중학 이하	0.6	1.0	0.3	0.8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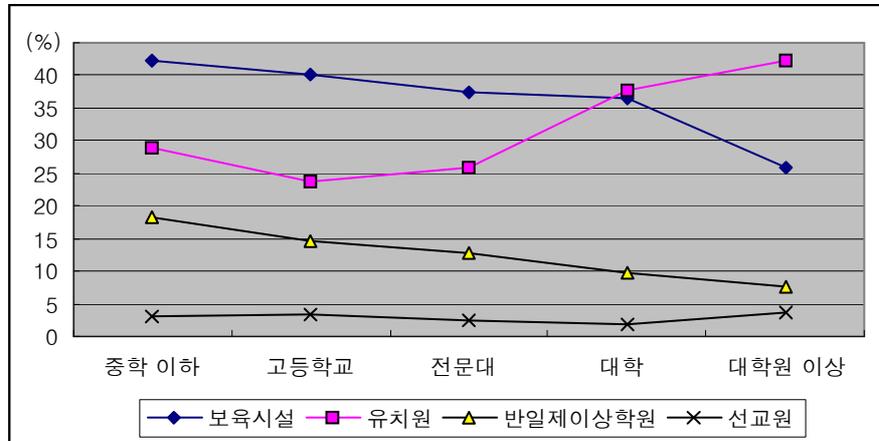
〈표 IV-3-8〉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8.9	27.2	13.4	2.9	(1,792)
중학 이하	7.5	(40)	42.4	28.8	18.2	3.0	(40)
고등학교	12.0	(602)	40.2	23.8	14.5	3.4	(102)
전문대	11.4	(193)	37.5	25.8	12.9	2.5	(193)
대학	10.0	(301)	36.4	37.6	9.6	1.7	(301)
대학원 이상	11.1	(36)	25.9	42.3	7.7	3.7	(36)
$\chi^2(df=4)$	1.3	-	4.1	28.4**	7.5	2.7	-
대학원 이상/중학 이하	1.5	-	0.6	1.5	0.4	1.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유아는 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과 반일제이상학원 이용률은 낮고, 유치원은 높아진다. 대학원 이상의 유치원 이용률은 중학이하 학력의 1.5배이다. 유치원 이용률과 모 학력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선교원은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IV-3-3]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나) 비용

기관 이용비용의 모 학력별 차이는 유아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많아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모가 대학원 이상인 유아의 이용비용은 중학 이하 학력 이용비용의 1.5배이다.

<표 IV-3-9>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수)	172.2 (1,595)	8.4 (1,592)	10.3 (1,592)	199.0 (140)	8.4 (140)	10.9 (140)	170.5 (1,456)	8.4 (1,446)	9.9 (1,552)
중학 이하	138.6	9.3	10.3	239.3	14.3	15.8	134.3	9.1	10.1
고등학교	163.6	8.5	10.0	173.7	8.5	11.1	162.7	8.5	9.9
전문대	175.6	8.0	9.9	222.3	9.2	12.2	169.7	7.9	9.6
대학	201.5	7.9	9.7	195.4	7.4	9.4	202.2	8.0	9.7
대학원 이상	211.0	9.3	8.8	227.5	5.5	9.0	207.9	10.0	8.7
F	19.2**	1.7	0.6	2.2	1.9	1.5	19.3**	1.7	0.4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1.5	1.0	0.9	1.0	0.4	0.6	1.5	1.1	0.9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는 비용의 규모는 학력과 일관성 없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나 가구지출 대비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다.

4) 모 직종별 차이

가) 이용

기관별로 모 취업여부 및 직종에 따라서 비용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는데, 모가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이용 비율이 52.1%로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비율이 낮다. 유치원은 취업중인 모의 이용률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여부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취업모 직종에 따른 차이는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이 1.7로 차이를 나타냈다. 반일제이상학원은 모가 생산노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용률이 높고, 관리전문직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관리전문직	33.8	19.5	1.5	1.9	(263)
사무직	45.9	12.2	7.1	-	(196)
서비스판매	43.4	17.5	10.1	4.7	(366)
생산노무직	52.1	11.7	18.4	0.6	(163)
무직(주부)	19.9	16.5	7.9	1.7	(1,919)
$\chi^2(df=4)$	189.6**	7.1	40.6**	na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6	1.7	0.1	3.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이러한 경향을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보면 유아에게서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은 관리전문직은 비율이 낮고 서비스판매 및 생산노무직에서 이용비율이 높다. 유아는 보육시설 이용에서는 영아와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원은 취업모 직종에 따른 차이는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이 2.5배로 직종간의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표 IV-3-11 참조).

〈표 IV-3-11〉 영아와 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확원	선교원
전체	11.2	(1,172)	38.9	27.2	13.4	2.9	(1,792)
관리전문직	15.3	(118)	49.3	35.4	2.8	2.1	(118)
사무직	26.0	(77)	58.8	20.2	11.8	-	(76)
서비스판매	36.9	(84)	45.6	22.3	13.1	6.0	(84)
생산노무직	34.6	(26)	55.5	13.9	20.4	0.7	(26)
무직(주부)	6.0	(865)	31.3	28.9	14.1	2.8	(865)
$\chi^2(df=4)$	113.7**	-	73.0**	27.4**	20.7**	na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4	-	0.9	2.5	0.1	3.0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나) 비용

4종류의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모 취업특성별로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아나 유아 모두 생산노무직의 이용비용이 가장 낮다. 관리전문직의 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전문직 비용을 생산노무직과 비교하면 대체로 1.2~1.3배 정도이다.

〈표 IV-3-12〉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수)	172.2 (1,595)	8.4 (1,592)	10.3 (1,592)	199.0 (140)	8.4 (140)	10.9 (140)	170.5 (1,456)	8.4 (1,446)	9.9 (1,552)
관리전문직	195.9	7.8	8.5	203.1	6.7	8.5	194.8	7.9	8.5
사무직	192.8	7.7	9.8	224.2	9.0	12.4	186.8	7.4	9.3
서비스판매	179.7	7.7	9.8	221.4	7.9	12.6	174.1	7.7	9.5
생산노무직	152.1	8.5	9.8	166.2	9.8	11.1	150.9	8.3	9.7
무직(주부)	167.2	8.8	10.2	159.9	8.8	10.2	167.8	8.8	10.2
F	9.7	3.5	3.0	4.7	3.0	2.2	6.0	3.3	3.3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3	0.9	0.9	1.2	0.7	0.8	1.3	1.0	0.9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5) 제 변수들이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에서 살펴본 개별 독립변수들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분위, 모의 학력, 지역 변수를 대상으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과 특기학원 등 사교육으로 하였고 선교원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다분류 독립변수는 개별 분석에서 사용한 소득 10분위, 모의 학력,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때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과 모의 취업변수를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는 <표 IV-3-13>과 같다.

<표 IV-3-13>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B(se)	Exp(β)	B(se)	Exp(β)	B(se)	Exp(β)
(상수)	-1.71(0.31)**		-4.59(0.89)**		1.28(0.41)**	
연령(연속변수)	0.32(0.03)**	1.38	1.58(0.20)**	4.84	-0.25(0.05)**	0.78
모취업(1= 취업)	1.12(0.10)**	3.08	1.85(0.25)**	6.34	0.92(0.11)**	2.50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39(0.21)*	0.68	-1.07(0.51)**	0.34	-0.23(0.25)	0.79
3분위	-0.49(0.22)*	0.61	-0.93(0.50)**	0.39	-0.42(0.26)	0.66
4분위	-0.69(0.22)**	0.50	-1.51(0.53)**	0.22	-0.60(0.26)*	0.55
5분위	-0.61(0.21)**	0.54	-0.39(0.45)	0.68	-0.74(0.25)**	0.48
6분위	-0.74(0.21)**	0.48	-1.24(0.48)**	0.29	-0.75(0.25)**	0.47
7분위	-0.81(0.23)**	0.44	-1.56(0.55)**	0.21	-0.74(0.26)**	0.48
8분위	-0.78(0.22)**	0.46	-1.37(0.53)**	0.25	-0.77(0.26)**	0.46
9분위	-0.61(0.23)**	0.54	-0.71(0.50)	0.49	-0.68(0.27)**	0.51
10분위	-0.97(0.25)**	0.38	-2.00(.59)**	0.14	-0.90(0.29)**	0.41
모학력(준거: 중학이하)		.				
고등학교	0.37(0.26)	1.45	0.42(0.80)	1.52	0.24(0.29)	1.27
전문대	0.24(0.28)	1.28	0.46(0.83)	1.58	0.09(0.32)	1.09
대학	0.25(0.28)	1.28	0.37(0.82)	1.45	0.18(0.31)	1.20
대학원 이상	-0.11(0.43)	0.89	-0.16(1.02)	0.85	-0.20(0.53)	0.82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55(0.11)**	0.58	0.38(0.29)	1.47	-0.81(0.13)**	0.45
중소도시	-0.57(0.11)**	0.57	-0.06(0.30)	0.94	-0.70(0.13)**	0.50
-2 Log Likelihood	2244.6		367.0		1182.8	
$\chi^2(df=17)$	1829.3**		206.8**		164.4**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을 유아로 한정할 경우는 전체 영유아 대상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영아로 한정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별로 방향성을 보면 모 취업, 소득 10분위, 지역은 모두 영유아,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즉, 모가 취업할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변수는 영아와 유아의 방향성이 다르다. 즉 영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지만 유아가 되면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IV-3-14〉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분류 회귀분석

구분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B(se)	Exp(β)	B(se)	Exp(β)
(상수)	-5.83(0.53)**		-3.38(0.60)**	
연령(연속변수)	0.90(0.06)**	2.47	0.22(0.07)**	1.25
모취업(0, 1= 취업)	-0.58(0.13)**	0.56	-0.24(0.16)	0.79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12(0.36)	1.13	0.37(0.41)	1.45
3분위	0.81(0.35)*	2.26	0.24(0.42)	1.27
4분위	1.19(0.34)**	3.29	0.40(0.417)	1.50
5분위	1.01(0.34)**	2.73	0.64(0.40)	1.89
6분위	1.19(0.34)**	3.28	0.48(0.40)	1.61
7분위	1.16(0.35)**	3.18	0.21(0.43)	1.24
8분위	1.21(0.34)**	3.35	0.50(0.41)	1.64
9분위	1.26(0.35)**	3.53	0.67(0.41)	1.96
10분위	1.42(0.36)**	4.15	0.57(0.44)	1.77
모 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39(0.34)	0.68	-0.58(0.38)	0.56
전문대	-0.14(0.37)	0.87	-0.73(0.43)	0.48
대학	0.15(0.36)	1.16	-1.15(0.43)	0.32
대학원 이상	0.63(0.55)	1.87	-2.23(1.10)	0.11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20(0.16)	1.22	0.95(0.23)**	2.58
중소도시	0.28(0.16)*	1.33	1.04(0.22)**	2.82
-2 Log Likelihood	984.6		766.3	
$\chi^2(df=17)$	341.3**		711.9**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표 IV-3-14>에서 유아의 유치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수준 중 10분위의 1분위 대비 β 값은 4.15이다. 그러나 모의 학력은 보육시설 이용과 같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 보육시설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연령, 모취업, 소득수준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모가 취업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 아동은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일제 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소득수준 역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지만 유의하지는 않으며, 모의 학력은 여기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회귀분석에서 모 학력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모 학력변수와 소득변수와의 상관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 유아 사교육 이용 및 비용 격차

1) 소득계층별 격차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와 같은 유아 사교육⁵⁰⁾의 경우 4종류의 이용률이 모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 이용률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이다. 방문지도나 그룹지도는 10분위가 각각 8.1%, 5.2%로 타 분위 이용률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다.

다음으로 4종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소득분위별로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용도 높아진다. 10분위의 비용은 1분위 비용의 2.0배이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낮아져서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각각 0.3, 0.6이다.

즉,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의 이용률이 높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투자하는 비용도 많으며,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 사교육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이나 가구지출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서, 소득수준이

50) 유아 사교육은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의 4종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음. 유사보육교육 기능을 하는 반일제이상학원은 기관 이용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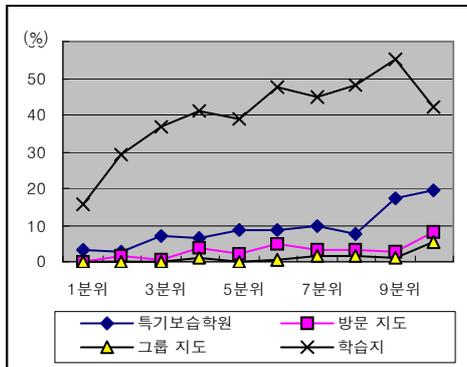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5〉 소득계층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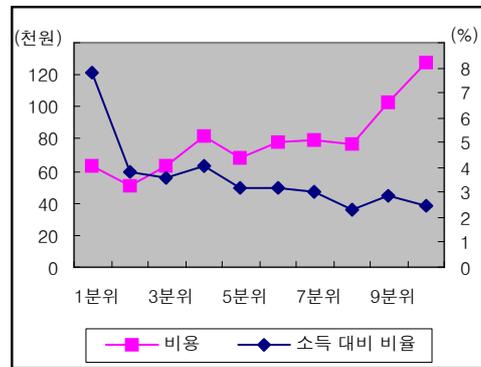
단위: %, 천원(명)

구분	이용					이용 시 비용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그룹 지도	학습지	(수)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수)
전체	8.7	2.9	1.0	40.1	(1,730)	81.3	3.3	4.5	(818)
1분위	3.4	-	-	15.9	(145)	63.4	7.8	7.7	(26)
2분위	2.7	1.5	-	29.1	(197)	50.7	3.8	4.0	(63)
3분위	6.8	0.6	-	36.9	(176)	63.7	3.6	4.1	(75)
4분위	6.7	3.8	1.1	41.2	(183)	82.2	4.1	5.2	(89)
5분위	8.7	2.0	-	38.8	(201)	68.7	3.2	4.3	(95)
6분위	8.5	4.6	0.5	47.4	(194)	78.1	3.2	4.6	(109)
7분위	9.7	3.0	1.8	45.0	(169)	79.7	3.0	4.2	(89)
8분위	7.6	3.4	1.7	48.3	(174)	76.5	2.3	3.7	(95)
9분위	17.2	2.6	1.3	55.1	(155)	102.5	2.9	4.7	(97)
10분위	19.7	8.1	5.2	42.2	(136)	128.0	2.5	4.3	(81)
F	82.7**	25.6(9)**	32.4(9)**	72.1(9)**	-	8.9**	11.7**	3.4**	-
10분위/ 1분위	5.8	5.4	(4.7)	2.7	-	2.0	0.3	0.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이용률>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그림 IV-3-4] 소득계층별 사교육 이용률과 사교육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2) 지역별 차이

학원, 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4종류 사교육의 이용률은 모두 도시보다 읍·면에서 낮다. 이용률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높는데, 학원은 읍·면이 중소도시 대비 6.4%p가 낮으며, 개별방문지도도 1.6%p가 낮고 학습지 구독은 13.1%p가 낮다. 읍·면 이용 비율 대비 대도시의 이용 비율이 그룹지도는 2.3배이다(표 IV-3-16 참조).

4종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읍·면이 다소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즉, 읍·면이 유아 사교육 이용률이 다소 낮지만,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나 그 비용이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도시와 차이가 없다.

〈표 IV-3-16〉 지역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이용					이용 시 비용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그룹 지도	학습지	(수)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수)
전체	8.7	2.9	1.1	40.7	(1,792)	81.1	3.3	4.5	(857)
대도시	14.4	2.4	0.7	42.3	(820)	80.6	3.2	4.5	(400)
중소도시	16.7	3.9	1.9	44.1	(623)	84.9	3.3	4.5	(327)
읍·면	10.3	2.3	0.3	31.0	(349)	73.1	3.2	4.3	(131)
F	7.4*	3.1(2)**	7.3(2)**	17.3(2)**	-	1.5	0.1	0.2	-
대도시/읍·면	1.4	1.0	2.3	1.4	-	1.1	1.0	1.0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3) 모 학력별 차이

4종류 사교육의 이용률의 모 학력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중학이하의 학력과 고학력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방문지도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대학원 이상은 14.8%로 타 학력자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고, 중학이하 이용률의 9.9배이다. 특기보습학원은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이 비교되고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학습지도 중학이하의 학력에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대학원 이상 학력의 1/2 정도이다(표 IV-3-17 참조).

이용 시 비용은 전문대와 그 이상 학력이 차이를 보이는데, 중학 이하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이용하는 소수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V-3-17〉 모 학력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이용					이용 시 비용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그룹 지도	학습지	(수)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수)
전체	8.9	2.9	1.1	40.7		81.1	3.3	4.5	
중학 이하	-	1.5	-	16.4	(66)	97.7	6.1	7.1	(11)
고등학교	7.9	1.5	0.8	40.7	(1,060)	74.1	3.2	4.3	(492)
전문대	13.4	4.2	1.7	50.0	(240)	74.4	3.2	4.2	(136)
대학	12.9	5.8	1.5	44.2	(343)	100.4	3.2	4.9	(196)
대학원 이상	7.9	14.8	-	33.3	(27)	107.4	3.1	4.1	(13)
F	26.5*	32.7(4)**	2.9(4)	26.6(4)**	-	6.8**	3.1*	2.6*	-
대학원이상/ 중학이하	-	9.9	-	2.0	-	1.1	0.5	0.6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4) 모 직종별 차이

〈표 IV-3-18〉에는 모의 사교육 이용 및 비용의 직종별 차이를 제시하였다.

〈표 IV-3-18〉 모 직업특성별 특기/보습학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이용					이용 시 비용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그룹 지도	학습지	(수)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수)
전체	8.9	2.9	1.1	40.7		81.1	3.3	4.5	
관리전문직	12.2	4.2	0.7	36.8	(144)	92.3	2.4	4.0	(74)
사무직	10.2	1.7	0.8	37.8	(119)	97.5	2.5	4.5	(54)
서비스판매	11.0	1.4	0.7	36.3	(281)	81.1	2.9	4.0	(120)
생산노무직	6.7	-	0.7	26.1	(138)	59.1	2.5	3.7	(41)
무직(주부)	7.8	3.7	1.2	46.1	(1,054)	79.6	3.5	4.6	(558)
F	9.8*	10.0(4)*	1.0(4)	27.8(4)**	-	2.6*	5.5**	1.4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8	3.0	1.0	1.4	-	1.6	1.0	1.1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모의 직종별 차이는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모의 영유아가 특기보습학원과 학습지에서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방문지도 이용은 관리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리전문직과 생산노무직을 비교해 보면 특기보습학원은 전자의 이용률이 후자 이용률의 1.8배이고, 학습지 구독도 1.4배이다.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비용 역시 사무직이 높고 생산노무직이 가장 낮다. 관리전문직의 비용이 생산노무직 비용의 1.6배이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대비 비율은 별 차이가 없다.

다. 영유아 개인서비스 이용 및 비용

1) 소득계층별 차이

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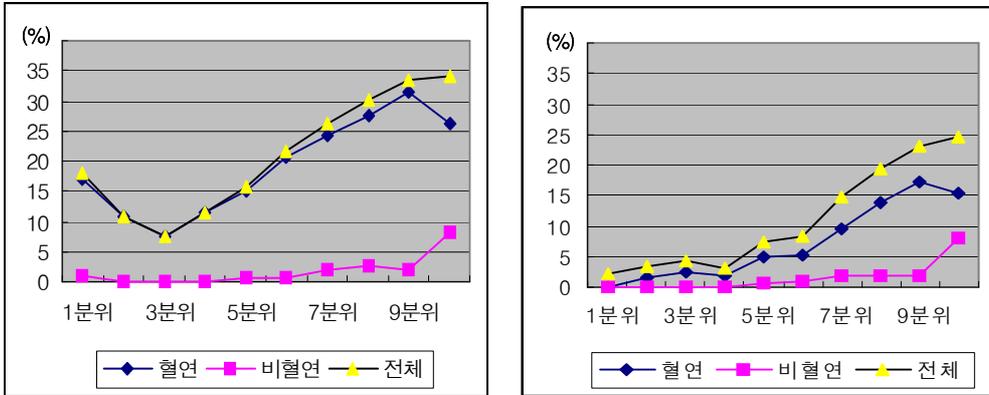
개인서비스 이용률은 일반적 이용과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개인서비스 이용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은 1분위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비교적 높고 3분위까지 점차 낮아져서 최저 이용률은 3분위이고 이후 점차 높아져서 9분위가 가장 높고 10분위는 이보다 다소 낮아지는 모양을 나타냈다.

〈표 IV-3-19〉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8.7	1.5	20.2	6.9	1.4	10.5	(2,940)
1분위	16.9	1.0	17.9	-	-	2.1	(195)
2분위	10.8	-	10.8	1.5	-	3.4	(324)
3분위	7.5	-	7.5	2.5	-	4.4	(320)
4분위	11.5	-	11.5	1.9	-	3.1	(321)
5분위	15.1	0.6	15.7	4.9	0.6	7.3	(344)
6분위	20.8	0.8	21.6	5.3	0.8	8.3	(361)
7분위	24.2	2.0	26.3	9.6	2.0	14.7	(293)
8분위	27.6	2.6	30.3	13.8	2.0	19.4	(304)
9분위	31.6	2.0	33.6	17.2	2.0	23.2	(250)
10분위	26.3	8.3	34.2	15.4	7.9	24.6	(228)
$\chi^2(df=9)$	112.8**	91.9**	151.5**	147.2**	93.5**	190.6**	-
10분위/1분위	1.6	8.3	1.9	(10.3)	(13.2)	1.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그림 IV-3-5] 전체 및 비용지불 아동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비혈연은 소득 7분위를 넘으면서 비율이 2% 수준으로 증가하고 10분위는 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전체적인 이용률은 3분위까지 낮아진 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은 전체 이용률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혈연은 일반 이용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 비용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체적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를 보면 비용은 5.0배, 소득 대비 비율은 0.7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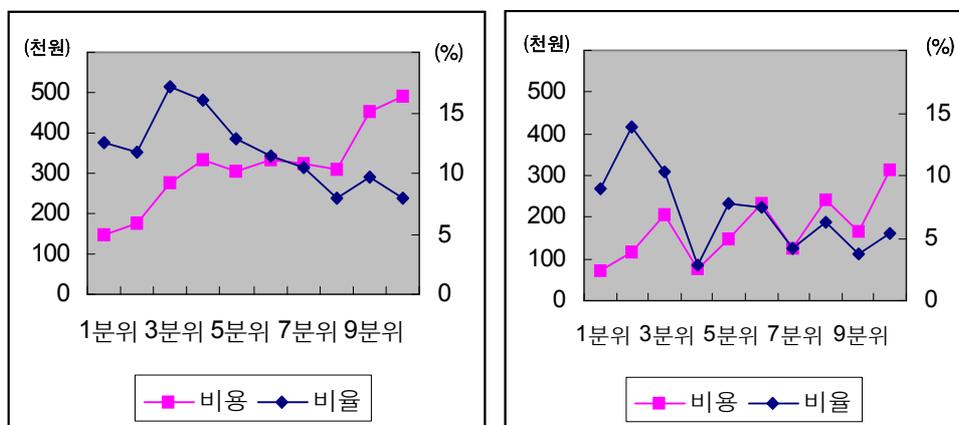
아동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유아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개인양육지원에는 소득이나 취업 요인 이외에도 가족특성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아에게 개인양육지원 기관 이용에 대한 보조적 또는 중복되는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표 IV-3-20〉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295.2	8.4	13.9	372.7	10.0	17.2	203.6	6.4	10.0
1분위	80.1	9.3	9.3	150.0	12.5	12.5	72.3	8.9	8.9
2분위	125.2	13.5	15.6	176.7	11.8	17.4	115.3	13.9	15.3
3분위	238.3	13.4	17.1	277.3	17.1	17.7	204.8	10.3	16.6
4분위	257.6	12.1	17.6	335.7	16.1	23.6	74.1	2.8	3.5
5분위	224.2	10.2	14.7	303.7	12.8	19.6	146.5	7.7	9.9
6분위	281.6	9.4	14.2	331.4	11.5	18.2	234.9	7.5	10.5
7분위	243.9	8.0	12.0	323.3	10.5	15.2	127.4	4.2	7.3
8분위	283.2	7.2	14.4	310.0	8.0	16.0	243.7	6.2	12.0
9분위	345.6	7.6	12.7	450.3	9.7	15.9	164.5	3.8	7.1
10분위	400.4	6.6	14.4	488.9	7.9	19.6	312.9	5.3	9.3
F	4.2**	3.0**	0.5	2.34*	2.5*	0.6	4.0**	3.1**	1.3
10분위/1분위	5.0	0.7	1.5	3.3	0.6	1.6	4.3	0.6	1.0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IV-3-6] 개인양육지원 비용지불 영아와 유아 비용 및 비율

2) 지역별 차이

가) 이용

전체 이용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에 의한 지원은 전체 이용 및 비용지불 이용 모두 이용률이 도시가 높고 읍·면이 낮다. 읍·면 대비 대도시 이용은 각각 1.3, 1.9배이다. 한편으로 비혈연은 읍·면 대비 대도시 이용은 각각 1.3, 1.6배이기는 하지만 전체 아동 및 비용지불 아동 모두 이용률이 중소도시가 가장 낮다.

〈표 IV-3-21〉 지역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용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9.0	1.7	20.6	7.0	1.5	10.8	(3,022)
대도시	20.4	2.3	22.4	8.6	2.2	12.2	(1,097)
중소도시	19.7	1.1	20.8	7.3	0.9	10.9	(1,125)
읍·면	16.1	1.8	17.9	4.6	1.4	8.6	(800)
$\chi^2(df=2)$	6.1*	4.9	5.9	11.1**	6.5*	6.2*	-
대도시/읍·면	1.3	1.3	1.3	1.9	1.6	1.4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나) 비용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비용 수준의 지역 차이가 있다. 영아와 유아 모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서로 액수가 낮아지는 차이를 나타냈다. 읍·면 대비 대도시 이용은 각각 1.3, 1.8배이다.

〈표 IV-3-22〉 영아와 유아 지역별 개인양육지원 이용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수=324)			영아(수=176)			유아(수=148)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301.4	8.5	14.2	383.5	10.2	17.8	204.2	6.3	9.9
대도시	335.1	8.6	14.5	413.6	10.5	18.1	233.1	6.0	9.9
중소도시	290.7	9.0	15.1	352.4	10.0	17.8	203.5	7.6	11.3
읍·면	191.9	6.7	10.3	315.2	9.3	15.1	127.9	5.3	7.9
F	7.8**	1.9	2.9	0.2	0.1	0.1	0.3	0.1	0.1
대도시/읍·면	1.7	1.3	1.4	1.3	1.1	1.2	1.8	1.1	1.3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읍·면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3) 모 학력별 차이

가) 이용

모의 학력별 혈연 및 비혈연의 개인양육지원 이용은 전반적으로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혈연의 지원이 중학이하에 비하여 대학원 이상은 3.8배이고 비혈연은 전문대이상의 학력부터 1% 수준을 넘는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비율은 모 학력간의 격차가 더욱 더 크게 벌어져서 대학원 이상에서는 40.6%로 중학이하 학력의 비율 1.1%, 고등학교 7.1%와 비교된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의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의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표 IV-3-23〉 모 학력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9.0	1.7	20.6	7.0	1.5	10.8	(3,022)
중학 이하	13.3	-	13.3	-	-	1.1	(90)
고등학교	15.0	0.7	15.7	4.6	0.6	7.1	(1,678)
전문대	23.1	1.0	24.1	10.3	1.0	13.8	(477)
대학	19.6	4.2	23.5	9.6	3.7	16.2	(668)
대학원 이상	50.0	7.8	56.3	26.6	7.8	40.6	(64)
$X^2(df=4)$	65.7**	52.2**	85.9**	74.5**	50.9**	116.8**	-
대학원이상/ 중학이하	3.8		4.2			37.0	-

주: ** $p < .01$

나) 비용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의 모 학력별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3-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유아 전체 비용은 중학이하에 비하여 대학원 이상에서 4배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고, 지출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에 비하여 대학 이상이 4배 정도로 높으나 유의성은 없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는 중학이하를 제외하고는 전문대이하와 대학이상에서 지출하는 비용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유아는 중학이하, 고등 및 대학, 대학원 이상으로 격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IV-3-24〉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301.4	8.5	14.2	383.5	10.2	17.8	204.2	6.3	9.9
중학 이하	100.0	3.1	4.0	-	-	-	100.0	3.1	4.0
고등학교	249.1	8.2	13.7	317.5	9.0	16.7	189.3	7.4	11.1
전문대	275.6	8.0	13.8	330.9	9.9	16.6	209.0	5.7	10.4
대학	352.1	8.8	14.6	445.2	11.5	19.1	208.8	4.6	7.6
대학원 이상	400.0	9.2	16.1	438.2	9.9	18.3	299.1	7.7	10.4
F	5.2**	0.5	0.6	4.2**	1.5	0.6	1.0	1.5	1.0
대학원이상/ 중학이하	4.0	3.0	4.0	-	-	-	3.0	2.5	2.6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4) 모 직종별 차이

가) 이용

개인양육서비스 이용과 비용에서 모의 취업 및 직종별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표 IV-3-25〉를 보면 비용 지불에 관계없는 혈연 양육지원 비율은 생산노무직이 관리전문직이나 사무직의 약 1/2 수준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의 직종별 격차는 더 커 관리전문직이 생산노무직의 3.8배이다.

〈표 IV-3-25〉 모 직업특성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혈연	비혈연	소계	
전체	19.0	1.7	20.6	7.0	1.5	10.8	(3,022)
관리전문직	50.0	11.2	60.0	29.2	10.4	45.4	(260)
사무직	57.8	5.0	62.8	36.2	5.0	44.2	(199)
서비스판매	40.5	1.8	42.3	10.7	1.5	20.8	(336)
생산노무직	24.5	0.6	25.2	7.7	-	9.7	(155)
무직(주부)	5.7	0.2	5.9	0.5	0.1	1.4	(2,026)
$\chi^2(df=4)$	720.8**	401.2**	859.6**	598.2**	181.6**	776.4**	-
관리전문직/생산노무직	2.0	18.7	2.4	3.8		4.7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비혈연은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이라 하겠는데, 관리전문직의 이용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나) 비용

비용을 지불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 수준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보거나 관리전문직이 가장 높다. 생산노무직 대비 비율이 전체는 1.4배이고, 영아는 1.1배, 유아는 2.9배이다(표 IV-3-26 참조).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3-26〉 영아와 유아 모 직업특성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전체	301.4	8.5	14.2	383.5	10.2	17.8	204.2	6.3	9.9
관리전문직	343.8	8.0	14.4	409.3	9.6	17.9	222.8	5.0	8.0
사무직	327.5	8.5	15.6	404.3	10.0	18.8	239.0	6.6	11.9
서비스판매	240.6	8.9	12.7	325.5	11.7	16.0	190.0	7.3	10.7
생산노무직	246.6	8.8	16.2	358.6	10.2	22.3	75.6	6.5	6.9
무직(주부)	234.5	8.7	11.6	311.0	11.4	15.2	79.2	3.2	4.2
F	3.7**	0.3	1.1	1.2	0.7	0.7	2.8*	1.2	1.7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4	0.9	0.9	1.1	0.9	0.8	2.9	0.8	1.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4. 정책시사점

아동과 가구 단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아동수, 모의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용에서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별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 부모의 제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

용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3배, 개인양육지원은 약 2배이다.

둘째, 소득 10분위로 분석한 가구의 소득 수준은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도 많아진다. 비용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육아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전체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14.7%로 가장 높고, 10분위는 7.2%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득 10분위 변수의 소요 비용에 대한 설명력은 15.3%이다. 즉, 이용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용에 따른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 기회 보장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유아수는 소득 다음으로 5.9%의 설명력을 추가한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가구당 영유아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1.75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1.88배가 된다.

넷째, 소득 이외에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 변수도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업모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전체 평균 9.6%로 전체 평균 6.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취업모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현재 제도권 육아지원서비스로 중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자는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진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 높은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반일제이상미술학원 이용에서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고, 읍·면에 비하여 도시가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이용에서는 소득계층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내용과 질적 측면도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육시설은 취업모가 선호하여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서, 유아 사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등 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이다.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이다.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다.

일곱째,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과 혈연 모두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으로 무급으로 육아지원을 하는 조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여, 이 역시 기회와 더불어 질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다.

V. 외국의 육아비용 지원

제5장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호주, 일본 4개 국가의 아동 가족정책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를 선정할 때 어떠한 이유로 특정 국가를 선택하였는가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러한 기준은 이들 국가의 정책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4개 국가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일찍이 양성평등을 추구하면서 포괄적 가족지원정책과 보편적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온 국가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이상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통합한 피르스콜라가 연중 운영되면서 여성 취업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 공보육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로 가족지원과 출산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급여와 보편적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출산율 유지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이다. 호주는 OECD 가입 국가로,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체계와 종일제 보육시설의 70% 이상을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등 구조적 특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따라서 민간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지도·감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한 국가로 평가되어서 평가인증제, 아동별 지원 등 주요 보육정책은 우리 보육정책의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일본은 보육지원이 취업모 중심이면서도 설치와 운영, 재정 부분에서 국가의 개입이 비교적 많은 독특한 보육정책을 추진한 국가이다. 그러나 가족수당 등 현금급여 제도는 미미하다. 출산력 1.59 쇼크 이후 저출산 방지를 위하여 3회에 걸친 특별한 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력이 2003년 1.29로, 출산력 제고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과 교육이 연령 중복 이원화된 국가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육아재정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출산력 제고 및 여성취업률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각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다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전반적 정책 배경 및 개요, 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보편적 양육비 지원제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이 주는 정책시사점을 기술하였다.

1. 스웨덴의 육아비용 지원

가. 육아지원정책의 배경 및 개요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특성하에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은 아동정책과 통합적인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보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 부담해야 하고, 사회기관으로서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여성을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있다. 스웨덴은 가족수당과 공보육을 동시에 제공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수당보다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보육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스웨덴의 보육·교육 행정체계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어 스웨덴 교육과학부가 관장한다. 1996년 7월부터 보육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교육 주관 부처로 이관되고 1998년에 관련법규가 사회사업법(Social Service Act)에서 교육법(Education Act)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부터 국가수준의 보육목표와 지침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피르스콜라에서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육의 활동 관리지침은 취약한 편으로 별도의 교과과정은 없고, 지침서만을 발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1990년에 들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점차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현재 중앙 정부는 지침만 제공하고 실무적인 모든 일은 289개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과정에 따른 보육과 교육 실시 책임, 교사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침을 정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두 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소관인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평가, 연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을 두어 종전에 국립교육원에서 하던 지원 활동을 담당하게 하였다(한유미 외, 2005)

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스웨덴 보육·교육대상은 1~12세 아동이며, 서비스는 기관보호와 가정보호(Family day car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기관은 1~5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Preschool) 및 개방형 유아학교(Open Preschool)와 초등학생을 위한 레저타임센터(Leisure time center) 및 개방형 레저타임센터(Open Leisure time center)로 구분된다.⁵¹⁾ 가정보육은 1~12세 아동을 위한 것이다. 취학전에는 초등학교 안에 개설된 유아학급에 다닌다. 1998년 이후 모든 6세 아동에게는 연간 최소 525시간의 무상학급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아동 기관 이용률은 8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V-1-1〉 스웨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영아			유아		전체
	1-2세미만	2세	소계	3세	4세이상 취학전	
이용률	45	85	65	89	91	81

자료: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다. 정부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분담

보육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⁵²⁾은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등과 각 지방에 따라 그리고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1999년부터 부모비용 상한제(Maxatasa)를 실시하고, 2002년에 법제화하였다. 비용 상한제는 지자체간의 부모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로, 부모부담이 스웨덴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부모협동, 직원협동, 기업운영 사립 시설은 물론 소수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족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비용을 일정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 보육료 부담 때문에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51) 개방형 시설은 미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것임.

52) 기관보육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750~1000달러 정도가 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아동보육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충당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표준액을 산정함.

〈표 V-1-2〉 스웨덴 부모부담 비용

단위: 크로나

자녀의 출생 순위	0~3세 보육료(월)	4~5세 보육료(월)
1	1,260 또는 소득의 3%	840 또는 수입의 2%
2	840 또는 소득의 2%	420 또는 수입의 1%
3	420 또는 소득의 1%	420 또는 수입의 1%
4	무료	무료

주: 2006년 4월 현재 1크로나 125원
 자료: <http://utbildning.regeringen.se>

비용은 정부가 80% 이상을 책임진다. 가정보육 이용 아동도 시설 이용 아동과 마찬가지로 1985년 이래 부모는 가정보육 이용비용의 약 15% 정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불한다. 〈표 V-1-3〉은 스웨덴과 일부 국가들의 가구특성별 부모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이다. 스웨덴은 양 부모 두 자녀 가정이고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가정은 소득 대비 4.0%를 부담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부모 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비례하여,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표 V-1-3〉 가족 및 소득특성별 부모부담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

단위: %

	소득	핀란드	퀘벡 주	스웨덴	영국
한 부모, 1자녀	0.67	4.7	4.8	2.7	18.2
한 부모, 2자녀	0.67	5.8	9.5	2.7	24.3
한 부모, 1자녀	1	7.9	8.8	3.4	23.4
한 부모, 2자녀	1	11.2	9.3	3.4	30.8
양 부모, 1자녀	1.33	6.9	3.9	3.9	7.1
양 부모 2자녀	1.33	10.7	7.7	3.9	9.9
양 부모, 1자녀	1.67	5.9	3.4	4.0	11.8
양 부모, 2자녀	1.67	10.8	6.8	4.0	16.5

자료: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한편, 비영리 단체나 부모협동 등에 의해 운영하는 사립보육시설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보조 방식은 인건비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방식은 시설보조금 지원이 주된 방법이지만 1993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아동별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2개 지역에서 아동별로 지원되고 있다.

라. 아동 수당 등 현금 지원

아동수당은 대규모의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스웨덴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보편급여이다. 이는 1947년 최초로 제정된 제도로, 한 자녀당 950크로네가 지급되었으나 2005년 10월부터 100크로네가 올라 2006년 현재 한 자녀당 1,050크로네가 지급되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겐 2,100크로네가 지급된다. 1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적용되지만, 자녀가 학생의 신분일 경우는 20세까지, 정신지체자를 위한 특별학교에 등록된 경우는 23세까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비자산조사 급여이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는 다자녀 가구 추가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이 부가적으로 주어진다. 이는 1996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다. 다자녀 가구 추가 수당 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부터 한 자녀당 100크로네가 올랐으며, 자녀가 미혼일 경우, 아직 부모와 함께 살 경우, 학업 중일 경우에 20살까지 지급된다.

〈표 V-1-4〉 스웨덴 국가 지원 아동수당: 2006

단위: SEK

구분	월간 총 아동수당	다자녀 가구 추가 수당	합계
아동 1명	1,050	-	1,050
아동 2명	2,100	100	2,200
아동 3명	3,150	454	3,604
아동 4명	4,200	1,314	5,514
아동 5명	5,250	2,364	7,614

자료: Stockholm Social Insurance Office(2006). URL:<http://www.rfv.se>

이외 현금급여로 출산(입양)급여, 장애아를 둔 부모를 위한 특별수당, 아픈 자녀를 둔 임시 육아 수당이 있다.

마. 육아지원 재정

2002년 현재 스웨덴에서 공공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 대비 1.4%이다. 취학 전 교육과 방과후에 각각 0.2%, 0.4%가 들어가서 모두 2.0%가 투자되고 있다(표 V-1-5 참조).

공적 투자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복지위원회를 통해 보육부담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거나 지방세 중 보육부담금 및 기타 지방세를 통하여 충당한다. 예산은 주에서 편성하여 하부 지방정부에 정액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제공한다. 스웨덴은 지역간 세율 차이에 의한 재정 상태의 지역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 동일화(Income Levell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표 V-1-5〉 육아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단위: %, 불

구분	핀란드 (2002년)	퀘벡 주 (2001년)	스웨덴 (2002년)	영국 (2003년)
GDP 대비 예산 비율	1.1	0.8	2.0	0.4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0.9	0.6	1.4	0.1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0.1	0.12	0.2	0.2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0.03	0.01	0.4	-
가족에 사용하는 총 예산 비율	38	37	44	16
등록아동 1인당 연 비용(단위: USD)	7,665	-	6,496	2,629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11,251	8,791	10,074	1,529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2,823	-	4,096	3,986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5,427	5,981	3,057	-
등록아동 1인당 비용 GDP 대비 비율	29	-	24	9
아동 보호와 교육(Child care)	42	32	37	5
취학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11	-	15	14
방과후(Out of school hourd care)	20	21	11	-

주: 스웨덴의 육아는 preschool 전부 포함하고 취학전 교육은 만 6세아 유치반만을 포함 한 것임.
 자료: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이외에도 가족을 위해 주어지는 각종 사회급여의 지출구조를 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가 GDP 대비 1.8%이고, 가족관련 급여전체에 이루어지는 지출은 모두 GDP대비 3.42%이다(OECD, 2006).⁵³⁾

2. 프랑스의 육아비용 지원

가. 육아지원정책의 배경 및 개요

프랑스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은 친가족 및 친출산 정책으로 특징지워진다(Gauthier, 1996).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저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는 1901~1905년 사이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았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30여년동안 인구가 정체상태를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임신 초기부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직·간접지원제도, 정부가 모든 보육과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공교육제도가 그 뼈대이다.

교육의 기회평등, 자유존중 이념을 근거로 아동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영유아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육의 기본방

53) 노르웨이, 덴마크가 4%가 넘어서 가장 높음.

침은 특수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 보육이라기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되어 있다.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3세 아동은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모성학교도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되며 보호와 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적으로도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육은 노동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관할이며,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 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의 사회보건국(DDASS: Direction Departemental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에서 관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보육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나 운영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세계적으로 가장 확고한 공보육체계가 확립된 프랑스의 만 3세 이상 유아의 모성학교 취원율은 2002년 기준으로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3개월 이상 2세 이하 아동은 약 36%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영아의 8%는 보육시설(Crèches)을 이용하고 4% 정도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보며, 6%는 기타 인력, 나머지 64%는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즉, 유아는 공교육이 담당하고, 영아는 다수는 부모가 돌보지만 그 이외 대리양육이 필요한 아동 중 약 1/2은 가정보육이 담당하고 있다(표 V-2-1 참조).

〈표 V-2-1〉 프랑스 영아보육 유형 분포

단위: %					
유형	가정보육	보육시설	조부모	기타	부모
비율	18	8	4	6	64

자료: OECD(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재구성.

다. 정부의 육아지원서비스 지원

육아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1인당 연간 비용은 보육시설 12,700유로, 가정보육 6,600유로이다. 총 비용은 보육시설이 20억유로, 가정보육이 17억유로이고, 모성학

교 106억유로로 총 143억유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보육 이외에 가정내 보육은 연간 1인당 비용이 17,200유로로 비싼 편이다.

이들 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모성학교는 공공 유아프로그램의 세계적인 모델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만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공적 투자 규모는 초등학생 연간 비용이 4,320유로인데 모성학교 1인당 비용도 4,040유로로 최근에 그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보육시설 비용도 정부가 차등하여 받는데, 보육비용은 모든 운영주체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현재 ECEC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교육지원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이다. 이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지난 5년 중 2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지난 10년 중 2년은 일을 했어야 한다. 최대 지원 비율은 484,97유로이며 만 2세(3번째 생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유아지원수당(APJE)과 함께 받을 수 없으며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출산여성고용지원(AFEAMA: 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이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정보육모를 고용하는 경우는 비용의 100%, 내니(nanny)⁵⁴를 고용하는 경우는 비용의 50%까지 보조한다. 지급액은 연령과 가족의 연 수입에 따라 다르다. 0세에서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의 연수입이 12,912유로 미만은 203유로, 연 수입 12,912~17,754유로 미만은 160유로, 연수입 17,754유로 이상은 133유로를 지급받는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금액의 1/2을 지급받는다.

셋째, 양육보조원 고용지원(AGED: 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이다. 부모가 취업 중이며 한 명 이상의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 내 양육자(in-home caregiver)를 고용한 가족은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agency, URSSAF)으로부터 직접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자녀의 연령과 가족 수입에 따라 다양하다. 자녀가 3세 미만이고 가족수입이 34,744미만인 경우, 보조금은 3개월마다 최대 1,548유로까지 지출되는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contribution expense)의 75%가 지급된다.

54) 육아 및 가사를 보조하는 파견인력임.

넷째, 유아지원수당(APJE: Allocation pour jeune enfant)으로, 가족수입보조금(income subsidy)과 아동보육수당(child care allowance)이 모두 고려되어 지급되며 교육지원수당(APE)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임신 5개월부터 만 2세까지(3세 생일 전까지) 지급된다. 현재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족의 80%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섯째, 부모는 세금혜택(Tax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이외에 유아지원에 따른 현금지출(out-of-pocket)의 25%, 최대 연 575유로까지 환급해 준다. 가정내 양육자 고용 비용은 현금지출의 50%, 최대 연 3,450유로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라. 유아지원 재정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아 공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1.0%이다(OECD, 2006).

유아지원서비스 비용분담은 기관 이용이나 가정보육 보육비용의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는 부모가 부담한다(OECD, 2004).

〈표 V-2-2〉 프랑스 보육 유형별 이용률 및 비용: 2002

단위: 유로

	유형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보육	가정내보육
이용률	3세 미만	만2세아의 34.7%	10%	20%	1.5%
	3세 이상	거의 100%	극히 소수	10%	2.0%
비용	1인당 연간 비용	4,040	12,700	6,600	17,200
	연간 총 비용	106억	20억	17억	12억
비용 분담		가족수당기금, 지방정부, 가정	인건비: 중앙정부 설비/운영: 지방정부	가족수당기금, 가정	가족수당기금, 가정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 70%, 비영리단체 28%	부모	부모
보육교육비		NA	월소득의 12%	최고 월 22유로	월 750유로

자료: OECD(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재구성.

보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동 월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01년 기준으로 집단보육시설은 1,166유로, 가정보육은 707~900유로이고, 가정내 보육은 1,671유로이다. 영아는 연간 세금공제 이전 기준으로 연 평균 2,100유로를 사용하는데, 분포상으로 보면 40%가 1,000유로 미만, 25%가 1000유로 이상 2500유로 미만, 25%가 2500유로 이상 5000유로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prince, 2003; OECD, 2004 재인용).

마. 가족수당

프랑스 가족지원제도는 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를 띤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수당이다. 현재 정부 지원의 28%를 차지하며, 현재 총 4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양육수당(Maintenance Allowance)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가족보조수당(Supplementary Family Allowance)이 있다. 가족수당은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아동수와 아동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가구수당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서, 두 자녀 가구 14%, 세 자녀 가구 29%,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의 49%를 차지한다.⁵⁵⁾

〈표 V-2-3〉 프랑스 아동 및 가족 수당제도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조건	부담자	도입연도
두 자녀 이상 가정 20세 미만 아동	- 신생아 환영수당(0~3세): 월 162유로(19만원) - 출산 보너스(자녀1인당): 808유로(95만원) - 가족 수당 · 첫째, 둘째: 월 113.15유로(13만원) · 셋째: 월 258.12유로(30만원) - 11세이상: 월 31.82유로 추가(3.7만원) - 16세이상: 월 56.57유로 추가(6.7만원)	보편적	고용주, 정부	1932

자료: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가족보조수당은 1985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최소 3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지급 대상이며, 자산조사에 기초하고 있고, 상한 연령이 2000년에 20세에서 21세로 확대하였다.

출산 및 영아관련수당은 2004년 1월부터 제도가 개편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임신 7개월에 800유로를 출산 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산 후부터 3세까지 월 150유로를 지급한다. 선택 보조금(self-select supplement)은 6세미만 아동양육을 위하여 직업을 중단하면 취업중단 보조금(stop work supplement)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면 자녀양육 보조금(childcare supplement)이 제공된다. 취업중단 보조금(stop work supplement)은 만 3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1994년 이후 둘째 아동을 가진 여성 중 1/3이 취업을 중단하는 데서 시작된 조치로 당초에는 두 자녀 이상 출산으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도 종전 첫 자녀는 2년간 2년, 둘째아는 4년간 2년, 셋째아 이상은 5년간 2년으로 종전에

55) URL:<http://www.childpolicyintl.org/countries/france.html>

비하여 완화되었다.⁵⁶⁾ 넷째아는 3번째 출산부터 계산하여 만 3세까지, 세쌍둥아부터는 만 6세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시간제 근무 및 직업 훈련 시에도 지급한다. 금액은 취업 완전 중단은 493유로, 시간제 근무 시 단축 비율 50%는 216유로, 50~80% 단축근무는⁵⁷⁾ 124유로를 지급한다. 이는 부부 모두에게 해당된다.

또한 한부모 관련 수당으로 한부모수당(Single Parent Allowance)과 가족지원수당(Family Support Allowance)이 있다.

가족을 위해 주어지는 각종 사회급여의 지출구조를 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가 GDP 대비 1.5%이고, 가족관련 급여전체에 이루어지는 지출은 모두 GDP 대비 3.2%이다(OECD, 2006).⁵⁸⁾

3. 호주의 육아비용 지원

가. 육아지원행정체계의 개요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각기 별도의 제도와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보육 주무 부처이고, 교육과학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유아교육 담당 부처이다. 그러나 보육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최근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경계가 다소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기존 활동을 극대화하고 이원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Early Childhood)를 구축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련부서가 상호협력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위원회(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를 설치하여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이익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OECD, 2006).

나.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및 이용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급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유치원은 대체로 학교 부설이다. 호주의 학교 70% 정도는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설치주체이고 20%는 가톨릭 등 종교 단체이며 10%가 사립이다(OECD, 2006).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 및

56) 종전은 5년간 2년의 취업을 증명하여야 하며, 2번째는 5년간 2년, 3번째 이상은 10년간 2년임.

57) 1998년 법으로 3~5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58) 이 비율은 노르웨이, 덴마크가 4%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OECD, 2006).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공보육시설은 종일보육시설 11.1%, 일시보육시설 22.9%, 학교 밖 시설 21.0%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시설 중 15.5%가 공공시설이고 이외는 민간시설로 민간의 비중이 매우 크다.

호주의 공립 유치원은 대체로 학교 운영시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등이 다양하다.⁵⁹⁾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은 개원시간이 대체로 오전 7시 전후이고 폐원시간은 오후 6시 전후로 종일체제로 운영한다.

〈표 V-3-1〉 호주의 3~5세 유치원 이용률과 0~4세미만 아동 보육 이용률: 1996~2005

단위: %

구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유치원이용률				
0~3세	7.0	6.0	4.8	4.9
4세	46.1	50.9	57.6	62.0
5세이상	4.7	17.9	17.0	18.9
보육이용률(0~4세)				
보육이용률	53.8	58.9	55.8	59.9
- 공식보육만	13.7	15.8	19.1	21.5
- 비공식보육만	30.1	31.7	24.1	24.7
- 두가지 이용	10.0	11.4	12.6	13.7
미이용	46.2	41.1	42.2	40.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호주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2005년부터 공식보육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조사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

2005년도 보육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⁶⁰⁾에 의하면 동 조사가 실시된 1주일 동안 유치원을 이용한 만 4세 아동 비율은 62.0%이었다(표 V-3-1 참조).⁶¹⁾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 취학전 1년인 만 4세아 유치원 교육은 대개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모는 학용품비 등 일부 비용만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보육시설 이용은 0~3세아의 경우 이용률이 59.9%이다. 1996년 이후 비공식보육

59) South Australia의 경우 유치원은 대체로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 운영함(URL:<http://www.sa.gov.au>).

60) 200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유치원 관련 자료도 제시하였음.

61) 그러나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 시간은 짧음. 조사대상 기간인 1주일 동안 유치원 이용 아동 25만 7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은 10~14시간 40.7%로 가장 많고, 15시간 이상이 27.4%, 5시간미만 10.6%, 5~9시간 21.3% 등임.

의 이용은 감소하고 공식보육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3-1 참조).

2004년 보육서비스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s) 결과 주당 평균 보육료는 공공보육시설 211불, 사립보육시설 208불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별로 규정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차이가 있지만⁶²⁾ 아동연령별 보육료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러한 평균 보육료는 1995년 이후 연평균 5.3%, 7.3%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 비용의 증가율이 높다. 호주의 1989~1990 회계년도 대비 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54.3으로 지난 15년간 연 평균 약 3.6%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컸다고 하겠다(표 V-3-2 참조). 학자들은 보육료의 높은 상승 이유를 대규모 영리자본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V-3-2〉 호주의 연도별 종일제 보육시설 1주일 보육료: 1995~2004

단위: 호주 불, %

구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4년	1995~2004년 연 평균증가율	1989~1990년 대비 2005~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
공공 보육시설	163	162	171	188	211	5.3	154.3
사립 보육시설	142	152	161	184	208	7.3	
가정보육/50시간	122	130	139	163	185	7.0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각 연도).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June 2005), <http://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

〈표 V-3-3〉 호주의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단위: %(개소)

구분	170불 미만	170~ 179불	180~ 189불	190~ 199불	200~ 209불	210~ 219불	220~ 229불	230~ 239불	240~ 249불	250~ 259불	260불 이상	계(수)
공공 보육시설	4	7	14	20	17	11	8	5	3	3	8	100(2,515)
사립 보육시설	6	6	12	13	14	12	11	6	6	5	7	100(1,217)

자료: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childcare>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 편차가 크다. 2004년의 경우도 170불 미만에서부터 260불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공공과 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표 V-3-3 참조).

62) 0~1세아는 4~5명, 2세아는 10~12명, 3~4세아 10~15명임.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불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주는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 재정이 2005-6 회계년도의 경우 연 5,700호주불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중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보육시설(Multifunctional Aboriginal Care Service), 연방정부가 공급하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지역사회 중일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며, 이외에 장애아동 가정보육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New Southern Wales, Northern Territories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OECD, 2002).

호주의 현재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새로이 정비된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제도로,⁶³⁾ 그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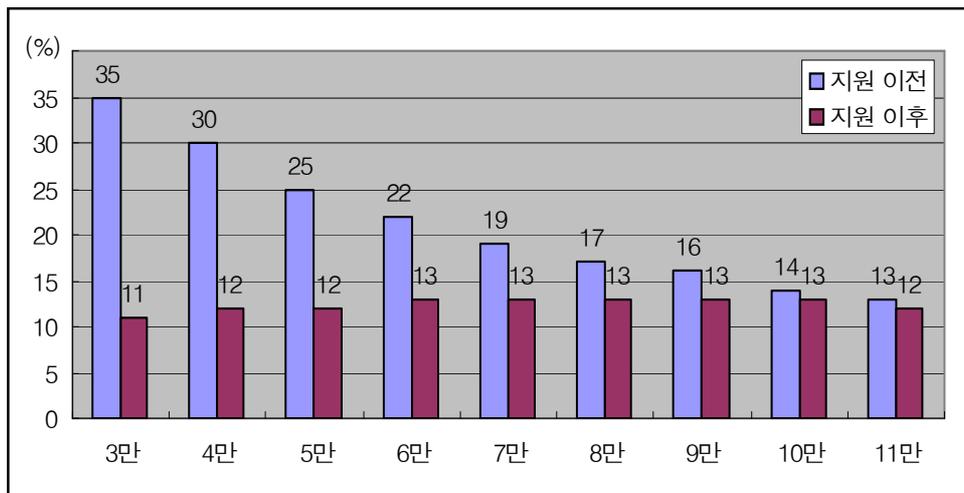
호주 보육급여 수급 여부 및 수준은 가정에서 신고하는 소득수준 추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본으로 주당 20시간까지를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혹은 50시간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⁶⁴⁾ 최근에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63) 종전에 중산층 이하 가정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료 보조제도(Childcare Assistance)와 모든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육료 환불 제도(Childcare Cash Rebate)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것임. 보육료 보조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로 한정하였고, 보육료 환불제도는 공식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육 이용자에게도 제공되어 보육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메디케어(Medicare)에 아동의 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었음.

64) 50시간은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자원봉사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 관련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보호자인 조부모가 노령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보육급여율보다 높은 조부모 급여율(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자에 의한 보육 이용자도 주당 50시간까지 또는 그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는 세 가지 아동보육급여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모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해당 보육급여 전체를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보육료에서 보육급여를 제외한 비용을 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보육료를 모두 부담한 후에 회계연도 말 이후에 정부로부터 해당 보육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최저 수준의 아동보육급여만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게 하고 가정에서는 그만큼 감소된 보육료를 낸 후, 회계연도 말 이후에 나머지 보육급여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법이다. 한편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전에 가족지원국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고 급여를 받는다.



자료: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FaCS Annual Report 2004-5.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childcare>

[그림 V-3-2] 호주의 아동보육급여 지급 전후 주당 가처분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비 비율

보육급여 수준을 보면 한 자녀가 종일제 보육을 한다고 할 경우 연소득 수준이

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이고,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임.

33,000불 정도인 저소득 가정은 보육센터 보육료의 67%, 가정보육은 보육비의 76%를 지원 받고, 가구소득이 45,000불 정도인 중류 가정은 각각 56%, 63%를 지원 받게 된다. 그 결과 2004-5년의 경우 아이 1명을 둔 가정에서 자녀를 종일제로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료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1-13% 수준이 된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저소득계층의 부담 비율이 35%에 이르지만 보육급여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그림 V-3-2 참조).

그러나 호주 보육시설 이용시간 20시간 이상은 취업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제 이용시간은 짧아서, 대부분의 아동 이용시간은 20시간 미만이고, 따라서 비용도 아동 평균 49불 정도를 지불한다(표 V-3-4, 표 V-3-5 참조).

〈표 V-3-4〉 호주의 0~12세 아동 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별 부모 부담: 2005

단위: 호주 불

구분	5시간미만	5~9시간	10~19시간	20~29시간	30~34시간	35~39시간	40~44시간	45시간이상	전체
주당 평균	13.0	30.5	49.2	84.1	101.6	122.1	137.6	148.9	49.4
중위	10	28	46	81	87	85	130	150	31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

〈표 V-3-5〉 호주의 영유아 이용서비스별 주당 비용 부담 분포: 2005

단위: %

구분	미지불	1~9불	10~19불	20~39불	40~59불	60~99불	100불이상	계
공식보육 또는 유치원	5.8	10.5	13.5	20.7	15.0	15.1	19.0	100.0
공식보육	6.3	10.3	12.8	21.0	15.8	14.8	18.6	100.0
공식보육/유치원과 가정내보육	4.8	10.0	13.2	18.2	13.7	16.9	22.6	10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

보육급여 등 정부 지원으로 영유아 부모는 전체 보육비용의 31%를, 방과후 아동은 35%를 부담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은 2002년 기준으로 GDP 대비 0.45%로 추정된다(OECD, 2006).

라. 가족 조세 급여(Family Tax Benefit)

보육과 유아교육 이외에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와 연계한 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A형은 21세 이하(학생은 24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조세와 연계한 급여로, 일정 금액을 2주에 1회 지급하고 회계연도말에 소득수준을 따져서 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가급여는 반드시 회계연도말에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급여는 연령별로 연 소득이 4만불이하면 최고액을 받고 그 이상은 한 자녀 기준으로, 88,622불까지는 40,000불 이상 1불당 20센트씩 낮아지고 그 이상은 1불당 30불씩 낮아진다. 소득 상한선은 0~17세 아동수와 18~24세 자녀수에의 혼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18세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할 때 연 92,546불이다. 동일조건인 경우 연 소득 94,817불부터는 부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대가족 부가급여, 다태아 출산 수당 등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표 V-3-6〉 호주의 가족조세급여 A형 최대 수준: 2005~2006

단위: 호주 불

구분	주당 지급	연간 지급	부가
13세 미만	140.84	3671.90	4317.95
13~15세	179.76	4686.60	5332.65
15~17세	45.36	1182.60	1828.65
18~24세	61.04	1591.40	2237.45
승인된 보호기관 0~24세	45.36	1182.60	N/A

자료: 〈표 V-3-1〉와 동일

급여는 2주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 연중에 전체를 받고 연말에 부가급여를 받는 방법, 급여 중 일부분을 연중에 받고 나머지를 연말에 부가급여와 함께 수령하는 방법, 급여와 부가급여를 모두 회계연도말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법 세 가지이다.

다음으로 B형은 16세 이하(학생은 18세까지)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 취업하는 경우가 급여 대상이다. 한부모는 급여의 최대액을 적용받지만, 두 부모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아동 5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나누어 상한선을 달리하여 급여기준액이 결정된다. B형 급여는 전체를 2주일에 한 번씩 받거나 아니면 전체를 회계연도말에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4. 일본의 육아비용 지원

가. 육아지원 행정체계의 개요

일본의 보육시설⁶⁵⁾과 유치원은 각기 별도의 제도와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 보육은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은 학교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보육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주무 부처이고, 유아교육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담당 부처이다. 지방정부에서 보육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보육을 실시할 책임을 맡고 있다. 유아교육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은 도도부현 소관이다(日本 保育研究所, 2006). 보육의 경우 중앙정부는 법적 기준 및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국가 기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시·정·촌 행정기구가 실제 보육 책임을 지고 실시한다. 정책 시행, 예산 지원, 이외에 시설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다가 소강상태로 들어갔었으나, 출산율 저하로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0년 전후로 다시 논의가 활발해져서 보육과 유아교육이 통합된 형태의 인정어린이원이 설치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학령전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就學前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나.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및 이용

일본의 인가보육시설은 2005년 12월 현재 22,243개소로 공립시설이 53.4%, 사립시설이 46.4%이다. 일본의 사립시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보육시설이다. 국가 기준의 인가보육시설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보육서비스와 미인가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존재한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법규로 별도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시설이나 가정보육 등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 밖의 보육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⁶⁶⁾ 이 목적은 대기아동 해소와 이들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이다. 이렇게 제도화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수준이 인가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되고 있어서 보육료 수준은 높다. 이외에도 베이비호텔, 직장보육으로 사업소 보육시

65) 일본에서는 ‘보육원’과 ‘보육소’라는 말이 혼용되는 듯하나, 법률에는 ‘보육소’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본 교에서도 ‘보육소’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66) 동경도가 0세 보육과 13시간 운영 의무화하고, 보육사 수와 면적 등은 보육원에 준하는 인정보육소를 인정하고, 요코하마시 등에서는 보육실, 가정복지원 등을 시 요강에 의거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치원은 2005년말 현재 13,949개소로 국립 49개소, 공립 6,269개소, 사립 8,903개소이다. 사립유치원 역시 주로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日本 保育研究所, 2006).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계의 주요 정책적 관심은 인정어린이원의 등장과 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이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는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공설민영시설과 법인에 건물 대여 및 양도로 완전히 시설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보육 당국에서는 일시보육과 연장보육의 실시를 조건화하여 보육의 다양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 추진 결과로 2005년 4월 현재 700건으로 공립시설의 약 5%가 민영화되었다(日本 保育研究所, 2006).

다음으로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 또는 보육소 등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 이외에, 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을 함께 행하고 보육소는 3세이상 아동에게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법적 시설을 의미한다. ‘인정어린이원’은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상호 제휴·협력하는 ‘유보(幼保)제휴형’, 유치원이 보육 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보육소형’,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공동으로 가지는 시설을 새로이 마련하는 ‘지방재량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인정어린이원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문부과학성 장관과 후생노동성 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인정기준을 밝히게 하고 있다. 지방재량형의 경우 동경도는 동경도 인정보육소 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일본의 유치원은 주로 반일제로 운영되며, 보육소는 전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보육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정하고, 유치원비도 사립유치원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2005년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와 2003년 후생노동성의 ‘사회복지시설조사’ 통계에 의하면, 3세아의 36.0%, 4세아의 54.7%, 5세아의 58.2%가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고, 3세아의 33.2%, 4세아의 39.0%, 5세아의 38.8%가 보육소에 다니고 있다.

다.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원

먼저 보육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는 인가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⁶⁷⁾라고 하고, 이 비용은 보육단

가제도를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응능(應能)부담원칙이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을 보면 <표 V-4-1>과 같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보육료 징수 기준을 7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는 무상이고, 그 이외는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차등하여 받도록 정하고 있다.⁶⁸⁾ 아동연령별로는 교사 1인당 아동수가 0세아 3명, 1~2세아 6명, 3세아 20명, 4세 이상 30명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3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표 V-4-1>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

단위: 엔

계층구분	정의		월액	
	구분	세액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7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 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대상	19,500	16,500
제4계층		64,000엔 미만	30,000	27,000 (보육단가한도)
제5계층		64,000~160,000엔 미만	44,500	41,500 (보육단가한도)
제6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소득세 과세세 대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160,000~408,000엔 미만	61,000	58,000 (보육단가한도)
제7계층		408,000엔 이상	80,000 (보육단가한도)	77,000 (보육단가한도)

자료: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03). 保育年譜.

그러나 국가 기준에서 정부 부담금 이외에 보육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대부분의 지방자치 정부에서 지원하여 각각 다른 징수 체계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요코하마시는 26 단계를 적용하고,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25단계를 적용하며 동경도 세다가야구는 3세아와 4세 이상아 보육료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녀 및 세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를 크게 낮추어

67)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렀음.

68)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2002년도 10월 현재의 계층 구분을 보면 제1계층이 1.3%, 제2계층이 14.9%, 제3계층 15.4%, 제4계층 19.1%, 제5계층이 20.6%, 제6계층 20.5% 제7계층 8.2%이다. 제2계층 중에는 모자세대가 반이 넘는 8.0%를 차지하고 있음(日本 全國保育協議會, 2003).

준다.

한편 인정보육소와 보육실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시설은 응익(應益)부담 원칙으로 정부의 비용 지원은 차이가 있다. 지방재량형 인정어린이원도 보육의 응익(應益)부담화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보육료 등급 결정 기준은 전년도 세액이 기준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당해 연도에 이혼과 결혼 등으로 보호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육료를 감액,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호주처럼 당해년도 소득에 따라 연말에 보육료를 정산하는 제도는 없다.

인가시설 보육료는 시정촌에서 수납한다. 인가보육시설에는 수납한 보육료와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과 합하여 보육시설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비로 지급한다.⁶⁹⁾ 사립보육시설의 일시보육, 연장보육은 대체로 보육소에서 직접 수납한다.

유치원은 보호자와 유치원이 직접 입원을 계약하여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교육비는 5계층으로 나누어 차등화하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 차이가 크다. 공립이 연간 최대 77,000엔인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연간 최대 285,000엔이다 (표 V-4-2 참조).

〈표 V-4-2〉 연간 일본 유치원 교육비

단위: 천엔

구분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제1자	제2자	제3자	제1자	제2자	제3자
생활보호세대	56	33	11	143	85	28
연소득 290만엔 이하				177	105	35
연소득 360만엔 이하	77(보조 대상외)			201	120	40
연소득 680만엔 이하				225	135	45
연소득 680만엔 이상				285(보조 대상 외)		

주: 2005년도 자녀순위는 유치원 이용 자녀 순이며,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로 변경되었음.
 자료: 日本 保育研究所(2006). 保育白書.

라. 육아지원 재정

일본 정부는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지원하며, 50%는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부담 중 1/2은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정한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6년에 2,982억엔이다(日本 保育研究所, 2006).

그러나 일본에서 실제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

69) 공립보육시설은 원장교사가 공무원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립보육시설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급함.

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이외에도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의 1.5~2.0배 정도를 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 차이가 심각하다. 한 예로 요꼬하마시의 경우 보육아동은 약 42,000명이며, 총 보육예산은 486억 7천만엔(약 4040 억원)이다. 보호자 부담은 20.2%이고 중앙정부는 예산의 12.6%만을 부담한다(표 V-4-4 참조).

〈표 V-4-3〉 일본 보육시설의 운영비 부담 기준

구분	중앙	도도부현	시정촌	보육료 징수 (지방자치단체 보조)
도도부현 설치	1/4	1/4	-	1/2
시정촌 설치	1/4	1/8	1/8	1/2

〈표 V-4-4〉 일본 요꼬하마시 보육운영비: 2006

단위: 억엔, %

구분	국가 기준 운영비 295.9억(60.8%)					연장, 일시보육		보육수준 제고 부담		계
	법정부담			국가기준 보육료 징수						
	시립공설 민영분(시)	국	시	보육료	시	국	시	시	보호자*	
예산	32.6	61.4	61.4	99.2	41.4	9.8	10.2	170.4	1.2	486.7
비율	6.7	12.6	12.6	20.4	8.5	1.8	2.1	36.7	0.2	100.0

주: *는 시립보육소 시간연장 보육비 등임. 요꼬하마시는 지정도시로 가나가와현 지원금 없음.
 자료: 日本 요꼬하마시(2006).

공립과 사립의 정부 비용 지원의 격차는 매우 크다. 운영주체별로 부모부담이 각각 9.9%, 59.4%로 차이가 있고, 1인당 교육비용과 정부지원의 차이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표 V-4-5 참조).

〈표 V-4-5〉 유치원 비용 분담: 2003

단위: %, 엔, 명

구분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보호자	계	금액	아동수 (2002. 5)
공립	-	-	90.1	9.9	100.0	2751억	432,085
사립	8.1	26.1	6.3	59.4	1000.0	5683억	1,399,011

자료: 〈표 V-4-2〉와 동일

마. 아동수당

일본의 아동수당은 1971년에 처음으로 5세 미만 셋째이상아에 적용한 이래 1974년 15세미만 셋째 이상아, 1986년 15세미만 둘째이상아, 1991년 3세미만아 241만명, 2000년 6세 이하 578만명, 2004년 9세 이하 940만명에게로 확대·적용하여 왔다.

현재는 9세미만 아동 중 첫째아와 둘째아는 월 5천엔, 셋째이상아는 월 1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선별적으로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 서구 여러나라와는 달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정책시사점

공보육·공교육 국가들의 영유아 보육·교육 공적재정 투자 규모는 매우 크다. 스웨덴은 육아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 대비 1.4%(2002년)이다. 취학전 교육과 방과후를 포함하면 2.0%로, 총비용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다. 부모 보육료 상한선으로 평균소득 3%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보육비용 중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를 부모가 부담한다. 유아교육은 무상 공교육으로 1인당 공적비용은 초등학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는 소득수준별 차등 보육급여로 보육비용의 6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육시설은 영리 민간 시설이 다수인데, 철저하게 시간단위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치원은 지역 차이가 있으나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된다. 일본은 보육에 따른 중앙 기준으로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으로 지역에 따라 비용의 20% 미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지역도 상당수이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크지만 사립유치원도 총 교육비용의 40% 정도는 정부가 분담한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뿐 아니라 검토한 4개 국가 모두 수당이나 조세제도를 통하여 일반 양육비도 현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육아지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보육·공교육을 실현하여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에 적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령기 전의 육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VI.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계획과 과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정부부처가 추진하여야 할 보육과 유아교육 등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방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제1차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인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두 가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육아지원방안은 거의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유아기 국가인적자원개발전략을 위하여 「비전 2010」(정미라 외, 2005)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⁷⁰⁾

본 고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2010년까지의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을 추정하여,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육아비용 지원

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를 추정하였다. 본 수요 아동수 추정에 사용된 기초 인구통계는 통계청이 2000년도 인구 총조사에 기초하여 2004년에 수정 추계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이다. 이에 의하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 28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표 VI-1-1 참조).⁷¹⁾

〈표 VI-1-1〉 영유아 인구수 추정: 2006~2010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473,986	469,477	466,246	463,728	460,774
1세아	475,927	470,851	466,377	463,172	460,675
2세아	477,020	474,841	469,778	465,317	462,121
3세아	478,184	476,189	474,016	468,963	464,513
4세아	513,034	477,360	475,376	473,210	468,167
5세아	593,649	512,070	476,471	474,497	472,337
계	3,011,800	2,880,788	2,828,264	2,808,887	2,788,587

자료: 통계청(2004). 장래인구 특별추계.

7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본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수용하였음.

71) 장래인구 특별추계는 출산율의 증가를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 출산율은 2003년 이후 계속 낮아졌으므로 과추계로 생각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의 연령은 만 5세아를 넘는 경우도 있다.⁷²⁾ 그러나 본 보고서의 수요 및 소요예산 추계 시 대상아동은 만 5세아 이하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1) 보육수요율 및 수요아동수

보육수요율은 인구추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 그리고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된 보육수요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도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중기수요율과 단기수요율을 추정하였는데,⁷³⁾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이용률 변화를 고려하여 2004년에 추정된 아동연령별 중기수요율을 영아는 2008년 보육수요율로 설정하고 유아는 2009년 보육수요율로 설정한 후에 2006년 6월 현재 보육통계와 유치원 수요율을 고려하여 연도별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⁷⁴⁾⁷⁵⁾

〈표 VI-1-2〉 보육수요율 추정: 2006~2010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6.8	8.5	10.1	11.8	13.5
1세아	18.1	21.7	25.4	29	32.6
2세아	39.3	48.5	57.7	58.7	60.0
3세아	47.4	52.9	58.5	64	64.8
4세아	43.0	44.2	45.5	46.7	48.7
5세아	34.5	33.9	32.8	32.8	32.8
계	31.8	35.3	38.4	40.6	42.1

주: 2006년은 2006년 6월 보육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함.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2010년 보육수요율은 42.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0세아의 수요는 13.5%이고, 만 1세아는 32.6%, 2세아와 3세아의 수요가 60~65%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5세아의 수요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I-1-2 참조).

72) 2006년 6월 보육통계에 따르면 방과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상아가 49,600명이고, 2006년 4월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유치원 취원아 중 만 6세 이상아는 4,585명임.

73)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 이용희망 월령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연령으로 환산하여 현재 연령과 동일 연령인 경우만을 특정 연령의 단기 추가 수요로 파악하고,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 이용희망 시기가 1년 이내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중기적인 추가수요로 파악하였음. 수요추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문희 등(2005)의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를 참조

74) 연령별로 2006년도 이용률이 2004년에 추계된 중기 추정치를 이미 넘은 경우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수요율의 합이 100%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음.

75) 2004년도 추계에서는 단기수요를 2~3년, 중기수요는 2004년을 기준으로 5년 정도 후에 도달하여야 할 목표로 가정하였음. 그런데 0세아 보육이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고, 만 5세아 이용률도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와 다르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이를 조정한 것임.

보육수요율 증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수요 아동수는 2010년에 122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0세아는 6만 2천여명으로 증가하고, 1세아는 15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만 2세아와 만 3세아의 수요가 27만 7천명, 30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5세아의 보육아동 규모는 아동인구수 감소에 의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VI-1-3 참조).

〈표 VI-1-3〉 보육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32,065	39,906	47,091	54,720	62,204
1세아	86,123	102,175	118,460	134,320	150,180
2세아	187,367	230,298	271,062	273,141	277,273
3세아	226,705	252,093	277,156	300,136	301,004
4세아	220,373	211,009	216,066	220,989	227,997
5세아	204,604	173,645	156,282	155,635	154,927
5세 이상아	49,605	50,000	50,000	50,000	50,000
계	1,006,842	1,059,124	1,136,118	1,188,941	1,223,585

주: 2006년은 2006년 6월 보육통계임.

2) 유아교육 수요율 및 수요아동수

유아교육 수요율도 보육수요율과 유사하게 2006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과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한 중기 수요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유아교육 수요 추계는 보육수요 추계 시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추정된 중기 수요율을 2009년 수요율로 보고 2006년 이용율을 2006년 수요율로 설정하여 연차별로 균등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유아교육 수요율은 연도별로 제시하였다.⁷⁶⁾ 여기서도 보육 수요 추정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율의 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연도별 추정치를 보정하였다.⁷⁷⁾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유아교육 수요율은 2008년 44.7%, 2010년에 52.6%로 추정된다(표 VI-1-4 참조).

추정한 유아교육 수요율에 의한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9년 71만 3000여명, 2010년 기준으로 74만여명이 될 전망이다(표 VI-1-5 참조).

76)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일환으로 추정된 유아교육 수요는 유치원 이용아동 추계로는 다소 과추계되었다고 판단되었음. 최근 수년간 유치원 원아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고, 유아교육 수요의 상당수를 학원이 잠식하고 있는 현실 등이 그 이유가 됨. 그러나 유아교육 정책 여하에 따라서 학원 이용 아동이 유치원 수요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 추정된 유치원 중기 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77) 연령별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수요율의 합이 100%를 넘는 경우 이를 동일한 비중으로 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음.

〈표 VI-1-4〉 유아교육 수요율 추정: 2006~2010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16.2	22.8	29.4	36.0	36.0
4세아	33.3	39.9	46.6	53.3	53.3
5세아	49.3	53.1	56.8	60.6	67.2
계	34.4	39.3	44.7	50.4	52.6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표 VI-1-5〉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 추정: 2006~2010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77,669	108,706	139,428	168,827	167,225
4세아	170,652	190,668	221,626	252,221	249,533
5세아	292,870	271,854	270,848	287,545	317,410
만 5세 이상아	4,585	5,000	5,000	5,000	5,000
계	541,191	576,228	636,901	713,593	739,168

주: 2006년 4월 유치원 통계임.

나. 육아비용 지원 계획 내용 및 소요예산

육아비용 지원은 기본보조, 차등보육·교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장애아 무상보육, 입양아 무상보육, 직장보육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비용 지원에 따르는 소요예산의 추정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나누고, 다시 각각 국공립과 민간을 나누어 추정한 후 이를 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공립과 민간의 아동 분담 비율은 국공립기관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연 10%씩 증가를 전제로 하였고,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 지원방식은 현재의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방식이 각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 지원

가) 배경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민들의 육아지원기관 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소 높지만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생각

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표 VI-1-6, 표 VI-1-7 참조).

〈표 VI-1-6〉 보육시설 이용여부별 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가구)

구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계	(수)	$\chi^2(df)$
전체	0.4	30.0	45.3	4.7	19.2	100.0	(2,228)	87.0(8)**
이용	0.4	41.3	47.1	4.4	6.9	100.0	(550)	
미이용	0.4	26.8	44.8	4.8	23.2	100.0	(1,678)	

주: ** $p < .01$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VI-1-7〉 유치원 이용여부별 유치원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가구)

구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계	(수)	$\chi^2(df)$
전체	0.8	34.3	38.8	4.2	21.9	100.0	(2,228)	55.4(4)**
이용	1.3	49.2	38.0	3.3	8.2	100.0	(305)	
미이용	0.7	31.9	38.9	4.4	24.1	100.0	(1,923)	

주: ** $p < .01$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렇게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는 다수인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서비스 수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게도 국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기본보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간 육아지원기관에도 기본보조를 지원하는 제도는 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총 보육·교육 비용 중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최소한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여성부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정한 바에 의하면 「표준보육료·교육비」⁷⁸⁾는 보육비와 교육료가 다르고,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표 VI-1-8〉은 산출된 「표준보육료·교육비」를 나타내는데,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시설 아동 1인당 비용 수준과 유사하고, 민간기관의 아동 1인당 보육 비용보

78) 「표준보육료·교육비」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이라 함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을 감안, 제 법령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수준을 의미함.

다는 훨씬 높다. 2004년 6월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산출할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이 없는 계층의 0세아 보육료는 70만원이상이 된다.

〈표 VI-1-8〉 표준보육료 및 교육비

단위: 원

구분	보육료(97인 기준)		교육비(95인 기준)	
	종일제	연장제	종일제	연장제
1세미만아	788,973	527,684	-	-
만 1세아	524,938	418,358	-	-
만 2세아	403,333	321,983	-	-
만 3세아	267,143	232,512	310,818	252,119
만 4세아	247,529	221,254	274,450	237,955
만 5세아	249,503	211,541	276,424	228,175

주: 박기백 등(2005)이 산출한 표준보육비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및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이러한 보육·교육비용의 시설유형별 차이는 서비스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건비 미지원 기관의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표준보육료·교육비」를 적용하여 비용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부모 부담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중산층 이상이라도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육료·교육비의 가계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8.3%인데, 비용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58.1%로 과반수가 넘는다.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의 다수는 젊고 취업 연한도 짧기 때문에 경제 부담 능력도 제한적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비용부담은 더욱 증가한다(표 VI-1-9 참조).

〈표 VI-1-9〉 보육·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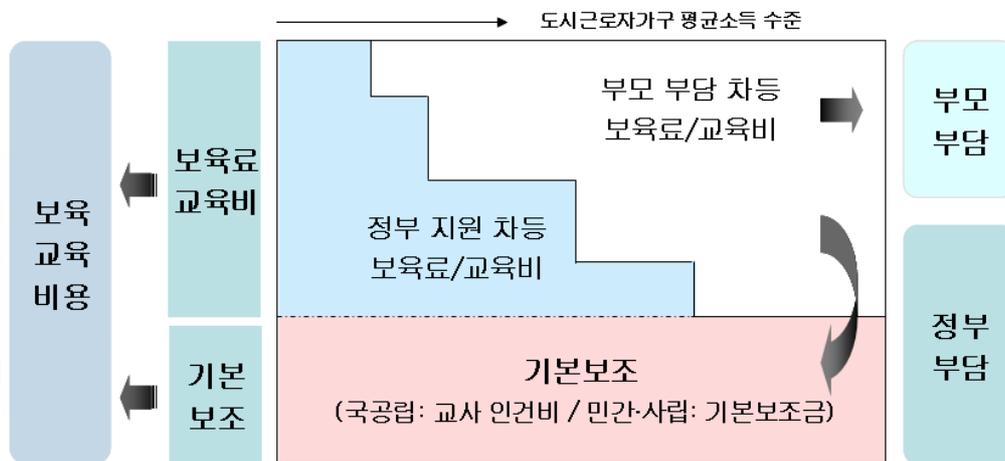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 안됨	완전 면제	전체	(수)
전체	12.7	45.4	31.1	7.6	3.1	100.0	(1,609)
보육시설	13.5	45.6	29.4	7.3	4.3	100.0	(610)
유치원	11.5	43.6	30.9	11.3	2.7	100.0	(397)
반일제이상학원	14.3	50.6	33.5	1.2	0.4	100.0	(181)
선교원	5.3	35.1	39.1	8.8	1.8	100.0	(33)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므로 인상된 아동 1인당 보육비용·교육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모 부담 수준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부모 부담의 절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아동의 보육비용·교육비용과 부모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차액은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 개선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개선 비용」,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는 의미에서 일반명사로서 「기본보조금」으로 지칭한다.

즉,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기본보조 지원이 종전에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에 인건비 형태로만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타 민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도 국공립기관에 상응하는 기본보조 비용을 아동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그림 VI-1-1 참조).



[그림 VI-1-1]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구성도: 2007

이러한 민간 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 성격에 대하여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보조금이 개념적으로 기존의 인건비 지원을 아동별로의 전환하는 것, 또는 보육시설에서 직접 수령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시설별 지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김현숙(2006)은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의 이중적 성격으로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못 살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제도의 설계와 시행 상의 괴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05년에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방안 보고 시 기본보조금은 차등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아동 보육료 보조금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을 아동별 지

원으로 전환하여 지원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은 시설별 지원이 유지되면서 기본보조금이 민간시설 기본보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국공립시설 시설별 지원의 대체 용도로 자리매김을 하는 경향이어서, 아동별로 금액은 산정하되, 내용상으로는 시설보조금의 성격을 갖게 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의 관계에 대한 논의였다. 기본보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부 지원을 모두 차등보육료 개념으로 흡수할 수 있다. 기본보조는 지원금 중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특히 영아 보육료는 보육료 수준이 높으므로 기본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계층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차등보육료 지원이 없는 경우 연령별로 40~70만원 이상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 부담이 가구 평균소득의 3%를 넘지 않게 하는 보육료 상한제도(Maxtaxa)를 채택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상의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것이 기본보조인 것이다.

이렇게 부모에게 적정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은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기본보조 제도에 대해서 시장경제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강화나 공급자간의 경쟁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육아지원기관 선택 시 지리적 접근성을 중시하고 아동이 시설을 옮기기 쉽지는 않은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비시장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경제적 원리 적용에 한계가 있다.

나) 추진계획 및 방법

이러한 민간 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금 지원 계획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료·교육비」와 부모부담 보육료·교육비와의 차액(서비스개선비용 또는 기본보조금)분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2010년에 「표준보육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영아는 종전의 영아 지원을 2006년부터 기본보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의하였다(표 VI-1-10 참조).

〈표 VI-1-10〉 연차별 민간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금 지원 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영아	영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비율	80%	85%	90%	95%	100%

〈표 VI-1-11〉 연차별 시설유형별 영아 보육비용

단위: 천원

연도	인건비지원시설			민간시설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0세아						
2005년	724	299	425	500	350	150
2006년	746	350	396	597	350	247
2007년	783	350	433	666	350	316
2008년	822	368	454	740	368	372
2009년	863	386	477	820	386	434
2010년	906	405	501	906	405	501
만 1세아						
2005년	500	299	271	440	350	90
2006년	515	300	215	412	308	104
2007년	541	300	241	460	300	160
2008년	568	315	253	511	315	196
2009년	596	331	265	566	331	235
2010년	626	348	278	626	348	278
만 2세아						
2005년	385	247	198	348	288	60
2006년	397	250	147	318	254	69
2007년	417	250	167	354	250	104
2008년	438	263	175	394	263	131
2009년	460	276	184	437	276	161
2010년	483	290	193	483	290	193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표 VI-1-12〉 연차별 시설유형별 유아 보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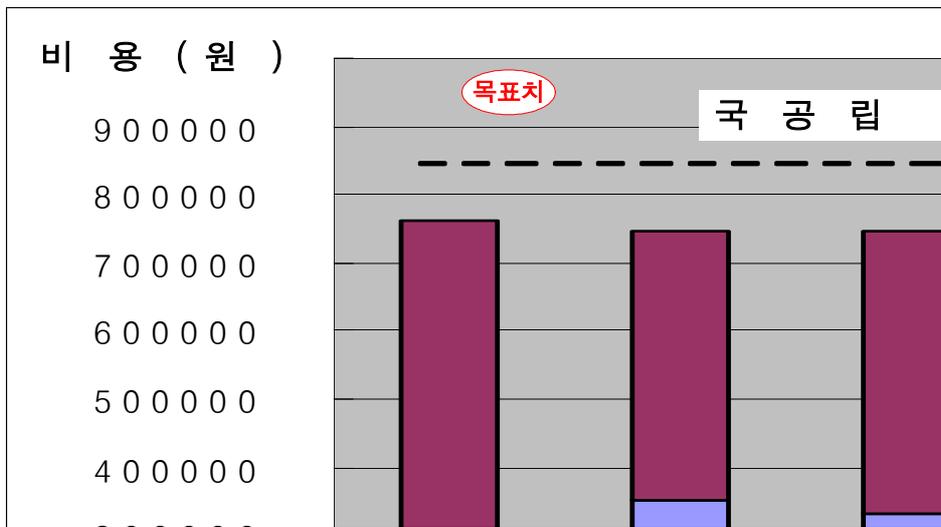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인건비지원시설			민간시설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총비용	부모부담	기본보조
만 3세아						
2005년	247	153	55	198	198	0
2006년	253	180	73	202	202	0
2007년	266	180	86	226	226	0
2008년	279	189	90	251	189	62
2009년	293	198	95	278	198	80
2010년	308	208	100	308	208	100
만 4, 5세아						
2005년	228	153	46	198	198	0
2006년	235	170	65	188	188	0
2007년	247	170	77	210	210	0
2008년	259	179	80	233	179	54
2009년	272	188	84	258	188	70
2010년	286	197	89	286	197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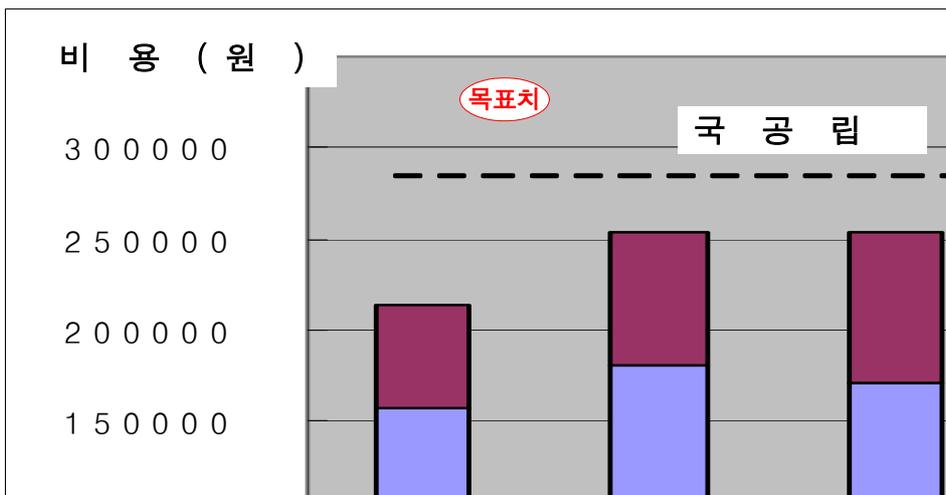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05), 내부자료.

유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본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수준을 2008년 국공립보육 시설 대비 90%, 2009년 95%, 2010년 100%로 맞추어 간다.

각 세별 보육비용, 부모 및 정부부담 조정 과정은 <표 VI-1-11, VI-1-12>와 같고, <그림 VI-1-2>와 <그림 VI-1-3>은 각 0세아와 만 3세아의 사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1-2] 0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분담 비율 변화



[그림 VI-1-3] 만 3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분담 비율 변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표준보육료는 조세연구원(박기백 외, 2005)에서 제시한 표준보육료·교육비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비용에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시설로 건축비를 보육비용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다소 과도하게 추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급간식비 등을 여성가족부 판단으로 다소 조정한 것이다.

두 번째, 새싹플랜에서 추정한 유아에 한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상인 상위 고소득계층에는 기본보조 지급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이후 보육 기본보조 제도와 더불어 논의된 정책이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개인시설은 선택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보육료·교육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기관 이용 아동에게 기본보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⁹⁾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는 1985년에 이미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육비 자율화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니다(나정 외, 2005).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선택으로 가격규제와 기본보조금 수용이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2004년 제1차 육아지원방안에서 보고한 아동별 지원으로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시설별 지원을 유아는 2005년에 인건비 지원비율을 45%에서 30%로, 영아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낮춘 부분만큼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비율은 다소 더 낮출 수 있겠으나, 시설별 지원을 아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정부이므로 어느 정도는 운영에 안정을 기하도록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기본보조금 실시 시 가격 규제 예외를 선택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본 분석에서는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그 규모를 추계해 보았다. 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중 30% 정

79) 단, 이 시설들도 정부가 정한 각종 시설, 인력 기준 등은 준수해야 함.

도는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아보다는 영아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VI-1-13 참조).⁸⁰⁾

〈표 VI-1-13〉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는 비율

구분	영아				유아				전체
	0	1	2	소계	3	4	5	소계	
더 부담할 의사 없음	66.7	67.9	63.4	64.4	69.6	69.9	73.6	71.3	70.1
더 부담할 의사 있음	33.3	32.1	36.6	35.6	30.4	30.1	26.4	28.7	29.9
부담 가능 금액									
20만원 이하	-	17.8	12.8	13.6	11.5	14.8	14.1	15.4	15.5
21-25만원	-	3.6	2.1	2.3	4.4	7.8	3.9	4.9	4.2
26-30만원	33.3	7.1	12.8	12.1	8.3	3.9	5.4	5.3	6.4
31-40만원	-	3.6	5.9	5.3	2.2	2.2	1.4	1.4	2.1
41-50만원	-	-	1.0	0.7	2.8	1.2	1.3	1.4	1.2
51만원 이상	-	-	2.0	1.4	1.0	-	0.3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계는 고위와 중위 추정의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먼저 저위 추정은 2004년 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이상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가격규제 미적용 보육시설 잠재 이용자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비용을 더 부담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고위추정 비율은 0세아와 만 1세아는 없고 만 2세아는 5%, 유아는 12.0%로 전체 10.6%이다. 보육아동 약 100만명 중 12만명 정도에 해당된다.

〈표 VI-1-14〉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비용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

유형	구분	비율	기준
고위 추정	0, 1세아	-	- 표준보육비용 이상 부담 가능 · 0세아 72만원, 1세아 50만원, 2세아 38만원, 3세아 25만원, 4세아 23만원
	2세아	5.0	
	유아	12.0	
	전체	10.6	
중위 추정	0, 1세아	-	- 표준보육비용+10% 이상 부담 가능
	2세아	3.0	
	유아	8.0	
	전체	6.9	

80) 경기도 보육시설 조사 결과 기본보조금을 안 받고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비율이 민간보육시설의 약 25%, 놀이방의 15%로 나타났음(서문희 외, 2006).

다음으로 중위 추정은 가격규제 미적용 시설 가격을 최소 표준보육비용의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가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연령별 표준보육비용의 10% 이상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가격규제 미적용 시설 잠재 이용자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중위추정치는 0세아와 만 1세아는 없고 만 2세아는 3.0%, 유아는 8.0%로 전체 6.9%이다. 보육아동 약 100만명 중 6만 9천명이 이에 해당된다(표 VI-1-14 참조).

다) 소요예산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의 추정은 두 가지 가정을 모두 적용하여 두 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1) 추정1

추정1은 추가비용부담 비율 중위추정을 적용하여 만 2세아 3%, 유아 8%가 기본보조 적용 예외 시설을 다닌다고 가정한 것이다.

정부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지원 소요예산은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는 2008년 2조 2765억원이고, 2009년 약 2조 8733억원이고, 2010년에 3조 543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국고는 약 1조 7700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표 VI-1-15〉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1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					
국공립시설 인건비	301,007	340,493	392,139	436,276	493,928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292,016	516,096	1,039,215	1,370,212	1,782,593
소계	593,023	856,589	1,431,354	1,806,488	2,276,521
유아교육					
국공립유치원 인건비	407,000	470,085	540,598	621,687	683,855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	304,586	445,143	582,758
소계	407,000	470,085	845,184	1,066,830	1,266,613
총계	1,000,023	1,326,674	2,276,538	2,873,318	3,543,134

보육만 보면 2010년에 2조 276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이 투입되는 2008년에 소요예산은 1조 4300억원이 되고, 2009년 1조 8065억원이 된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특히 만 2세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본보조 소요예산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VI-1-15, 표 VI

-1-16 참조).

유아교육 기본보조는 사립유치원도 보육시설과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미적용 비율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는 원아수가 연 10% 정도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⁸¹⁾ 국공립 교사 인건비 등 시설별 지원을 포함하면 2010년에 1조 266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은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첫 해인 2008년에는 3046억원이고 점차 증가하여, 2009년 4451억원이고 2010년에는 582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I-1-15, 표 VI-1-17 참조).

〈표 VI-1-16〉 연령별 보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1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103,729	159,167	216,701	288,935	373,970
1세아	129,278	215,046	294,013	387,970	501,000
2세아	191,967	323,974	446,066	531,033	626,945
3세아	62,026	62,438	216,017	283,578	339,244
4세아	54,979	52,643	150,036	184,814	279,562
5세아	51,045	43,321	108,522	130,158	155,799
소계	593,023	856,589	1,431,355	1,806,488	2,276,520

주: 2007년 시범사업 예산은 제외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표 VI-1-17〉 연령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소요예산 추정1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	-	73,978	116,118	146,235
4세아	-	-	117,591	173,476	218,211
5세아	-	-	113,028	155,550	218,312
소계	-	-	304,597	445,144	582,758

주: 2007년 시범사업 예산은 제외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표 VI-1-18〉 영아와 유아 기본보조 소요예산 총괄 추정1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아	424,973	698,187	956,780	1,207,938	1,501,916
유아	575,050	628,487	1,319,758	1,665,380	2,041,218
계	1,000,023	1,326,674	2,276,538	2,873,318	3,543,134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81) 2006년 22%인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이 2010년에 30%가 된다고 가정함.

〈표 VI-1-18〉에서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유아에 들어가는 기본보조 예산 금액이 영아에 들어가는 기본보조 비용보다 더 많다. 2010년의 경우 총 기본보조 예산 중 42.4%가 영아 기본보조 예산이고 57.6%가 유아 기본보조 예산이다. 이는 유아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인건비 형태의 기본보조 예산액이 크기 때문이다.

(2) 추정2

추정2는 기본보조 적용제외 대상 고위추정을 적용하였다. 즉, 만 2세아 5%, 유아 12%가 기본보조 적용 예외 시설을 다닌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외 가정은 제1안(추정1)과 같다.

기본보조 총 소요예산은 2010년에 3조 4832억원이다. 2006년 1조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보육의 경우 기본보조 예산은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여 2010년에 2조 241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투입되는 2008년에 1조 4113억원이 되고, 2009년 1조 7802억원이 된다.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은 국공립 교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면 2010년에 1조 2413억원이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은 지원 첫 해인 2008년에는 2914억원, 2009년 4258억원이고 2010년에는 557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I-1-19 참조).

〈표 VI-1-19〉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2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					
국공립시설 인건비	301,007	340,493	392,139	436,278	493,928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292,016	516,096	1,019,167	1,343,877	1,747,964
소계	593,023	856,589	1,411,306	1,780,154	2,241,892
유아교육					
국공립유치원 인건비	407,000	470,085	540,598	621,687	683,855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	291,354	425,790	557,421
소계	407,000	470,085	831,952	1,047,477	1,241,276
총계	1,000,023	1,326,674	2,243,258	2,827,631	3,483,168

〈표 VI-1-20〉은 연령별 보육 기본보조 소요예산을 나타내고, 〈표 VI-1-21〉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예산을 나타낸다.

〈표 VI-1-20〉 연령별 보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2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세아	103,729	159,167	216,701	288,935	373,970
1세아	129,278	215,046	294,013	387,970	501,000
2세아	191,967	323,974	439,333	522,695	616,799
3세아	62,026	62,438	209,748	274,819	328,263
4세아	54,979	52,643	145,947	179,394	270,892
5세아	51,045	43,321	105,565	126,341	150,968
소계	593,023	856,589	1,411,307	1,780,154	2,241,892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아동별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는 제외함.

〈표 VI-1-21〉 연령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소요예산 추정2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세아	-	-	70,762	111,069	139,877
4세아	-	-	112,478	165,933	208,724
5세아	-	-	108,114	148,787	208,820
소계	-	-	291,354	425,790	557,421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아동별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는 제외함.

〈표 VI-1-22〉 영아와 유아 구분 기본보조 소요예산 총괄 추정2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아	424,973	698,187	950,047	1,199,600	1,491,769
유아	575,050	628,487	1,293,212	1,628,031	1,991,399
계	1,000,023	1,326,674	2,243,258	2,827,631	3,483,168

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아동별로 환산하여 포함.

아동연령별로 보면 영아보다는 유아에 들어가는 기본보조가 더 많다(표 VI-1-22 참조).

〈표 VI-1-23〉은 제1안과 제2안 소요액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인데, 추정1에 비하여 추정2가 연도별로 330억에서 600억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3〉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비교: 0~5세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안(A)	1,000,023	1,326,674	2,276,538	2,873,318	3,543,134
2안(B)	1,000,023	1,326,674	2,243,258	2,827,631	3,483,168
차이(B-A)	-	-	▽33,280	▽45,687	▽59,966

2)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

가) 추진계획

정부는 부모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완화해 주기 위하여 0~4세아 보육료·교육비 재정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상은 모든 비용을 부모 부담으로 한다.

〈표 VI-1-24〉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아동 비율 ¹⁾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3.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11.5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10.0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25.0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20.0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10.0	-	-	-	-	-	-	30	30
7층	130%초과	20.0	-	-	-	-	-	-	-	-

주: 1) 아동비율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참조함.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정부는 모든 시설에 평가 인증 기회가 주어진 2008년 이후부터 정부 재정 지원과 평가 인증을 연계한다는 계획인데, 기본보조 지원도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요예산

차등보육료·교육비 확대에 따른 0~4세 아동의 차등 비용 지원은 2006년 7410억

원이, 2010년에는 1조 98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국고와 지방비는 분담이 대략 50:50이므로 국고 지원은 2010년에 9937억원 정도가 된다(표 VI-1-25 참조).

보육 차등보육료는 2010년에 1조 55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투입되는 2008년에 1조 1457억원이 되고, 2009년 1조 3646억원이 된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기본보조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 2세아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교육 차등교육비는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2008년 3209억원, 2009년 4196억원이고 2010년에는 435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차등보육료와 교육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영아와 유아의 배분을 보면 영아보다 유아에게 다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VI-1-26 참조).

〈표 VI-1-25〉 보육과 유아교육 차등보육료·교육비 소요예산 추정: 0~4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					
0세아	43,095	66,204	91,500	119,128	142,086
1세아	101,859	145,293	197,023	250,754	294,761
2세아	182,748	272,903	376,408	425,182	453,508
3세아	137,546	202,372	276,580	335,168	353,114
4세아	133,705	170,031	204,208	234,319	308,877
소계	598,956	856,803	1,145,718	1,364,551	1,552,346
유아교육					
3세아	43,843	81,417	122,464	166,337	172,625
4세아	98,230	145,561	198,405	253,267	262,516
소계	142,073	226,978	320,868	419,604	435,141
계	741,029	1,083,781	1,466,586	1,784,154	1,987,487
국고	370,515	541,891	733,293	892,077	993,744

주: 물가상승률 반영

〈표 VI-1-26〉 영아와 유아 차등보육료·교육비 소요예산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¹⁾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영아	327,703	484,400	664,930	795,064	890,355
유아	413,324	599,381	801,656	989,090	1,097,132
전체	741,029	1,083,781	1,466,586	1,784,154	1,987,487

주: 물가상승률 반영

3)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가) 추진계획

만 5세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농어촌 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아동 규모로 보면 2006년 전체 만 5세아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07년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로 만 5세아 전체 아동의 70%를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체 아동의 80%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 소요예산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아동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06년 5027억원이 2010년에는 7772억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유아교육 4842억원, 보육이 2930억원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유치원 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다(표 VI-1-27 참조).

〈표 VI-1-27〉 5세아 무상보육·교육 소요예산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	232,758	247,965	234,986	280,890	292,998
유아교육	269,909	313,535	328,755	418,758	484,190
전체	502,667	561,500	563,741	699,648	777,188
(국고)	(251,333)	(280,750)	(281,871)	(349,824)	(388,594)

주: 추정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동일한 비용 적용

4)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가) 추진계획

정부는 2003년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장애등급(중증/경증)에 따른 지원 단가를 일원화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연령 대상을 12세까지로 확대하였다. 새싹플랜(안)에서 제시된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수는 2010년 25,000명이다. 장애아 유아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소요예산

소요예산은 2010년도 25,000명의 장애아동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12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⁸²⁾

〈표 VI-1-28〉 장애아 보육 지원 비용 추정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수	15,000	18,000	20,000	23,000	25,000
예산	61,043	76,914	89,733	108,353	123,664
국고	30,522	38,457	44,867	54,177	61,832

주: 추정 물가상승률 반영

5) 다자녀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가) 추진계획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형제·자매 2명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가정이 지게 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부모를 지원하는 동시에 비용에 따르는 가정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기관 이용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는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 비율을 현행 비용의 20%에서 2007년부터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50%까지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소요예산

다자녀 가정 육아비용 지원 예산은 2006년 40,000명에 261억원이므로 아동수 및 지원비율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에는 993억원이 소요된다.

82) 장애아동 무상교육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표 VI-1-29〉 다자녀 육아지원 비용 추정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수	40,000	40,000	40,000	50,000	50,000
지원비용 비율	20	30	40	50	50
예산	26,140	41,174	57,634	94,563	99,292
국고	13,070	20,587	28,817	47,282	49,646

주: 추정 물가상승률 반영

6) 농어민자녀 육아 지원

가) 추진계획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임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 농지 소유 농·어업인에 대해 부가적으로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지원 대상 농지 규모 기준은 5ha미만이며,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 지원 기준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이다.

나) 소요예산

농림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7년 442억원, 2010년 약 398억원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예산의 재원은 농특회계이다.

〈표 VI-1-30〉 농어촌 육아지원 비용 추정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수	27,826	26,000	24,000	23,000	22,000
예산	31,484	44,200	42,400	41,200	39,800
국비(농특회비)	15,742	22,100	21,200	20,600	19,900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⁸³⁾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육아지원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83) 농림부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함.

7)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가) 추진계획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규모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다. 국내입양 아동수가 해외입양아동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입양이 1,461명인데 비하여 국외입양아는 2,101명이다. OECD 가입국가로서 이렇게 해외입양아수가 많다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나,⁸⁴⁾ 국내입양의 증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VI-1-31〉 국내외 입양아수

단위: 명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국내	1,647	1,025	1,686	1,770	1,694	1,564	1,641	1,461	774
국외	2,962	2,180	2,360	2,436	2,365	2,287	2,258	2,101	988
계	4,609	3,20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1,76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따라서 국내입양 촉진 또는 입양한 아동을 잘 기르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입양아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영유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싹플랜(안)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양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07년도부터 입양아동 무상보육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나) 소요예산

입양의 대부분이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고 공개입양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대상 아동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새싹플랜에서는 약 2,000~2,500명의 아동을 목표로 하였다.

2007년에 2,000명 대상으로 만 3세아 보육료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소요예산이 약 42억원이다.

84) 1995년 제1차 및 2001년 제2차 유엔 아동권리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표 VI-1-32〉 연도별 입양아 무상보육·교육 대상 아동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규모	-	2,000	2,500	2,500	2,500
예산	-	42.4	55.7	58.5	61.4
국고	-	21.2	27.9	29.3	30.7

8) 직장보육 인건비 지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직장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매분기 말일 현재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및 보육교사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재원이 고용보험이므로 전체 보육아동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비용이 소요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공립기관의 증개축, 종일제 유치원과 야간보육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시간 연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과 개선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 측면에서의 소득수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격차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가.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신개축

1) 추진계획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새싹플랜에 의하면 국공립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달성 연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아동의 30%까지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에는 122개에서 신축 이외에 약 237개소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화한다는 계획이다.⁸⁵⁾

교육인적자원부도 연차별로 구체적 병설유치원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병설유치원을 계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 소요예산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모두 2007년부터 이용아동이 전년도 대비 연 10%씩 확대된다고 가정하였다.

유치원 신증설 예산으로는 2006년도에 75억원이었다. 이 역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 이상 확대하면, 2010년 예산은 132억원이 된다.

보육시설 증개축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건축비 예산이 2006년도에 448억원이었고, 2007년에는 664억원이다. 이후 2010년까지 연 10%씩 증액하여 확충하면 2010년 소요예산은 1010억원이 된다. 여기에 부지 비용을 개소당 3억원을 포함하면 2010년 예산은 1588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VI-2-1〉 연도별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확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치원	7,508	8,671	9,972	11,467	13,188
보육시설	77,800	104,404	120,065	138,074	158,785
계	85,308	113,075	130,037	149,541	171,973
국고	26,154	37,563	43,197	49,677	57,128

주: 보육시설 설치비는 건축비 이외에 매년 순 신축은 110개로 가정하고 개소당 3억원의 부지구입비를 포함함. 물가상승률 적용함.

나. 종일제 유치원 확대

1) 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취업모 자녀를 위한 종일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가정의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유치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3년부터 추진한 종일제 확대정책은 해마다 약 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고 지방비와 원 자체 경비 등의 추가투입으로 인해 급

85) 최근의 확충실적을 보면 2004년 48개소, 2005년 134개소가 확충되었고 2006년에는 110개소가 목표였음.

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1993년 정책수립 당시 전체 8,540개원 중 29개원으로 시작한 종일제 운영 유치원은 2005년 62.5%로 증가했으며 이용 유아는 29.7%에 이르고 있다(나정, 2006). 따라서 시설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강사 수당은 2007년부터 적용한다.

2) 소요예산

2006년도 중앙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100억원의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책정된 바 있으므로, 이후에도 2010년까지 동일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아울러 강사 수당으로 종일제 아동 비율 60%로 가정하고 학급당 20명으로 하면 총 교사수가 산출된다. 종일제 유치원의 확대를 감안하여 2007년은 대상의 90%, 2008년부터 대상자에게 모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총비용은 2010년에 1431억원이 된다.

정미라 등(2005)은 2010년 종일제 아동 약 75만명을 가정으로 종일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으로 499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고, 이외 추가 교육비용 바우처 지원 비용 2848억원, 강사수당 128억원을 추정한 바 있다.⁸⁶⁾

〈표 VI-2-2〉 연도별 종일제 운영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환경 개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강사					
종일제 학급수(개)	16,260	17,290	19,110	21,410	22,175
적용 비율(%)	-	(90)	(100)	(100)	(100)
예산	-	93,366	114,660	128,460	133,050
계	10,000	103,366	124,660	138,460	143,050

다. 시간연장형 보육 확충

1) 추진계획

정부는 2002년부터 시간연장형 교사를 지원하여 왔으나, 2003년 이전 200명, 2004년 600명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다가 2005년 2,000명, 2006년에 3,000명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앞으로도 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86) 정미라 등(2005)은 아동 1인당 지원액은 박기백 등(2004)의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의 1인당 표준보육비 1안을 적용하고, 종일제 이용 유아는 매년 10% 증가하며, 학급당 원아 수는 평균 15명, 시설개선비는 1개 학급당 50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함.

2) 소요예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여 2007년 520억원 규모이지만 대상 교사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VI-2-3〉 연도별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수	3,000	4,000	7,000	9,000	10,000
예산(중앙 및 지방 정부)	39,000	52,000	95,000	129,000	150,000

라.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1) 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간의 봉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및 인구 30만명이하 소도시 소재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11만원의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원 대상 교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늦어도 2010년까지는 모든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비전 2010」에서 정미라 등(2005)은 201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 소요예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담임수당을 2008년에 교사의 50%, 2009년 75%, 2010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연도별 유아교육 수요 아동 중 70~77%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학급당 아동수를 20명으로 추정하여 유치원 교사수를 추정하고, 단가는 월 11만원을 적용하였다. 2010년의 경우 유아교육 아동을 74만명으로 가정하고 사립유치원 아동이 다소 감소하여 70%가 되고 아동수를 반당 20명으로 가정하면 해당 유치원 교사수는 약 25,871명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에게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342억원이 소요된다.⁸⁷⁾

87) 국공립유치원 아동수가 연 10% 정도 확대되면 사립유치원 이용비율이 약 2% 포인트씩 정도 낮아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표 VI-2-4〉 연도별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상 유치원교사수 추정	20,830	22,190	23,247	25,342	25,871
적용 대상	농어촌 및 소도시	농어촌 및 소도시	교사 50%	교사 75%	교사 100%
예산	4,350	4,350	15,343	25,078	34,150
국고	2,175	2,175	7,672	12,539	17,075

정미라 등(2005)은 사립유치원의 아동을 106만명으로 가정하고 취원아 분담율이 2010년까지 2005년도 수준인 77%를 유지하고 학급당 평균 원아수는 3~5세를 통합하여 15명으로 계산하여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 수당을 725억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3. 성과와 과제

앞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한 육아비용 지원 정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육아지원 재정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의 비용 분담비율이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가구 단위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예산 지원의 효과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시설이나 부모, 아동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모두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육아지원기관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과

1) 재정 규모 및 분담

가) 총 예산 규모의 증가

앞에서 설명한 정책방안을 모두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규모로 증가되어야 한다. 〈표 VII-3-1〉은 앞에서 제시한 보육·교육정책 방안에서 추정된 소요예산을 모두 합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2010년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교육비,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 등 7가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규모는 6조 5767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VI-3-1〉 보육·교육비용 소요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용 지원					
기본보조 ¹⁾					
- 보육	593,023	856,589	1,431,354	1,806,488	2,276,521
- 유아교육	407,000	470,085	845,184	1,066,830	1,266,613
차등보육료·교육비					
- 보육	598,956	856,803	1,145,718	1,364,551	1,552,346
- 유아교육	142,073	226,978	320,868	419,604	435,141
만 5세아무상보육·교육					
- 보육	232,758	247,965	234,986	280,890	292,998
- 유아교육	269,909	313,535	328,755	418,758	484,190
장애아보육지원	61,043	76,914	89,733	108,353	123,664
다자녀육아지원	26,140	41,174	57,634	94,563	99,292
농어촌육아지원	31,484	44,200	42,400	41,200	39,800
입양아무상보육·교육	-	4,240	5,570	5,850	6,140
소계	2,362,386	3,138,483	4,502,202	5,607,087	6,576,705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국공립기관 설치 ²⁾					
- 유치원	7,508	8,671	9,972	11,467	13,188
- 보육시설	77,800	104,404	120,065	138,074	158,785
운영시간 연장					
- 종일제 유치원 확대	10,000	103,366	124,660	138,460	143,050
- 야간보육 확대	39,000	52,000	95,000	129,000	150,000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4,350	4,350	16,183	27,199	37,565
소계	138,658	272,791	365,880	444,200	502,588
계	2,501,044	3,411,274	4,868,082	6,051,287	7,079,293

주: 1)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과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포함
 2) 보육시설 설치비는 건축비 이외에 매년 순 신축은 110개로 가정하고 개소당 3억원의 부지구입비를 포함함.

〈표 VI-3-2〉 보육·교육비용 지원 소요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기본보조	차등보육료/ 교육비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	다자녀 육아지원	농어촌 육아지원	입양아 무상 보육교육	계
예산	3,543,134	1,987,487	777,188	123,664	99,292	39,800	6,140	6,576,705
비율	53.9	30.2	11.8	1.9	1.5	0.6	0.1	100.0

보육·유아교육 지원 사업 내용별로는 기본보조 지원에 53.9%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등보육료·교육비용 지원에 30.2%가 소요되며,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에 11.8%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신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국공립 유치원 설치, 종일제 유치원 및 연장보육,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등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2010년 기준으로 약 5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예산을 모두 합하면 약 7조원에 된다. 이러한 규모는 GDP 성장률을 연 5%로 가정했을 때⁸⁸⁾ 약 0.65% 수준이 된다.⁸⁹⁾

또한 여기에는 단가로 정해진 보육료나 교육비 이외의 특별활동 등에 의한 추가 비용은 제외되었고, 만 5세를 넘은 아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인프라 비용에서 기능보강, 기관 평가, 정보화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예산을 모두 합하면 예산의 규모는 현 추정치보다 크게 증가될 것이다.

나)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교육비에 의한 국가의 비용 부담률 증가

정부가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교육비 등 계획대로 지원할 경우 부모와 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비용 부담은 어떠하겠는가?

먼저 보육의 경우 추정 결과를 보면,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2006년 2조 9597억원이고, 이중 정부가 48.1%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총 보육비용과 정부 부담률은 점차 증가하여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2008년에는 정부 예산이 4조 4077억원으로 정부의 부담비율이 62.5%가 되고, 2010년에는 총 보육 비용은 6조 98억원인데 이 중에서 68.6%인 4조 1219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31.4%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I-3-3〉 보육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부담비율
2006년	1,424,735	1,534,974	2,959,709	48.1
2007년	1,961,357	1,635,463	3,596,820	54.5
2008년	2,812,058	1,595,621	4,407,679	62.5
2009년	3,451,929	1,657,472	5,109,400	67.6
2010년	4,121,864	1,887,950	6,009,814	68.6

주: 기본보조금 지급은 2~5세아 소득별 상위계층 제외하였으며, 부모 추가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음.

88)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 2006~201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9%로 추계하였음.

89) GDP는 2004년 806조 6000억원(통계청 Kosis)을 기준으로 연 5%의 상승을 가정하여 추정함.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는 2010년 GDP를 경상가격으로 1조 2620억불로 추정하였음.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보육 단가를 유치원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소요예산은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6년에는 총비용은 1조 1044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정부가 37.3%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교육 비용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총 교육비용과 정부 부담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유아교육비용은 2조 1645억원인데 이 중에서 69.4%를 정부가 부담하고 30.6%를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표 VI-3-4 참조).

〈표 VI-3-4〉 유아교육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부담비율
추계1				
2006년	411,982	692,458	1,104,439	37.3
2007년	540,513	724,666	1,265,178	42.7
2008년	954,221	573,404	1,527,625	62.5
2009년	1,283,505	616,568	1,900,073	67.6
2010년	1,502,088	662,413	2,164,501	69.4
추계2				
2006년	818,982	731,880	1,550,861	52.8
2007년	1,010,598	694,785	1,705,382	59.3
2008년	1,494,819	511,115	2,005,933	74.5
2009년	1,905,192	519,177	2,424,369	78.6
2010년	2,185,943	593,344	2,779,287	78.7

주: 추계2는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 등 시설별 지원을 포함하였음. 현재 인건비 등 2006년 시설별 지원 규모 수준 유지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부모 종일제 등 추가 비용 미고려

국공립유치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6년에는 총비용은 1조 5509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정부가 52.8%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총 유아교육비용은 2조 7793억원인데 이 중에서 78.7%를 정부가 부담하고 21.3%를 부모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표 VI-3-5〉는 2010년 정부와 부모의 연령별 보육비용 부담을 나타낸다. 만 5세 아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비율이 84.4%로 가장 높고, 그 이외 아동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용 부담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0세아의 경우 76.3%이고 만 4세아가 61.7%이다.

유아교육 비용도 연령별로 부담을 보면 보육과 유사하여 만 3, 4세아가 60~61% 수준이고, 만 5세아는 83.4%이다(표 VI-3-6 참조)

〈표 VI-3-5〉 연령별 보육비용 분담 추정1: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비율
0세아	516,057	160,225	676,282	76.3
만 1세아	795,762	332,390	1,128,152	70.5
만 2세아	1,080,453	526,622	1,607,074	67.2
만 3세아	692,357	420,153	1,112,511	62.2
만 4세아	588,439	365,647	954,086	61.7
만 5세아	448,797	82,912	531,709	84.4

주: 2010년 보육 기본보조 지원은 시설유형별 차이가 없음

〈표 VI-3-6〉 연령별 사립유치원 비용분담 추정1: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비율
만 3세아	318,859	207,378	526,237	60.6
만 4세아	480,727	315,004	795,731	60.4
만 5세아	702,502	140,031	842,533	83.4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교사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정부의 부담이 69% 수준이고 부모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 산출된 비용에는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및 부모 부담은 증가하고 정부 분담 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추정된 2010년 부모의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 분담률은 프랑스의 25% 보다는 낮다. 호주와 비교하면 보육과 유아교육 부모 분담비율 25%보다는 낮고 보육비용 분담률 31% 수준과는 유사하다.

이러한 수준은 국민들의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도 조사에서는 당시 보육비용 지원비율인 34% 수준이 정부 부담으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다빈 응답인 23.8%가 보육비용 중 41~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의 60% 이상은 27.3%로 나타났다. 대체로 최연소아동이 어릴수록 정부의 높은 비용부담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보육비용 중 91% 이상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2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보다 많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다. 현재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정부 부담 인상에 대한 욕구는 미취업모가 약간 더 높았다(표 VI-3-7 참조).

〈표 VI-3-7〉 제 특성별 보육·교육 비용 중 정부 부담의 적정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가구)

구분	34% 미만	34~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 이상	모르겠다	계	(수)	$\chi^2(df)$
전체	1.8	13.0	23.8	20.9	7.4	3.2	2.0	14.7	13.2	100.0	(10,424)	
최연소아동												
영아	0.7	7.0	23.7	27.2	10.2	3.5	3.9	21.6	2.2	100.0	(961)	645.3 (24)**
유아	0.8	10.4	24.7	23.3	10.6	4.9	2.3	20.6	2.3	100.0	(1,064)	
초등학생	2.1	13.7	27.3	20.9	8.0	4.9	1.9	15.5	5.7	100.0	(1,631)	
아동없음	2.0	14.1	22.9	19.6	6.4	2.4	1.7	12.6	18.3	100.0	(6,769)	
현재 모취업												
취업	1.7	12.4	25.5	22.3	9.7	5.0	2.2	17.7	3.6	100.0	(1,552)	43.5 (16)**
미취업	1.1	10.1	26.2	24.2	9.0	4.4	2.8	19.0	3.2	100.0	(1,944)	
모부재	-	8.5	22.7	19.9	9.2	2.1	2.8	23.4	11.3	100.0	(141)	

주: ** $p < .01$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가구소득 대비 부모 부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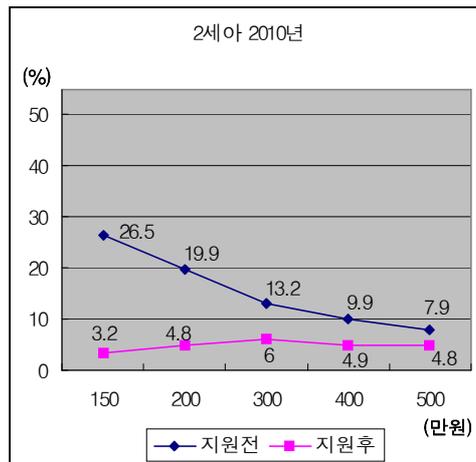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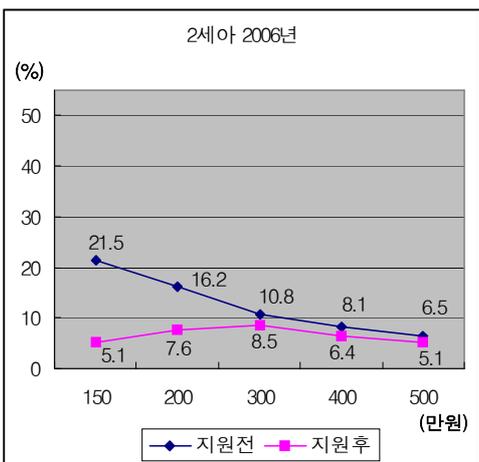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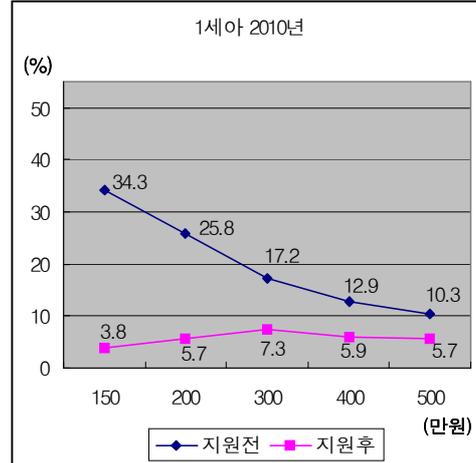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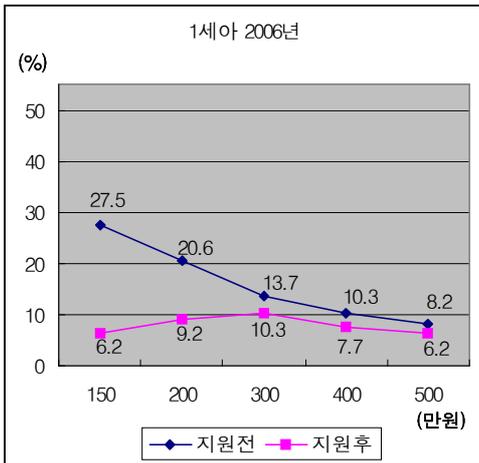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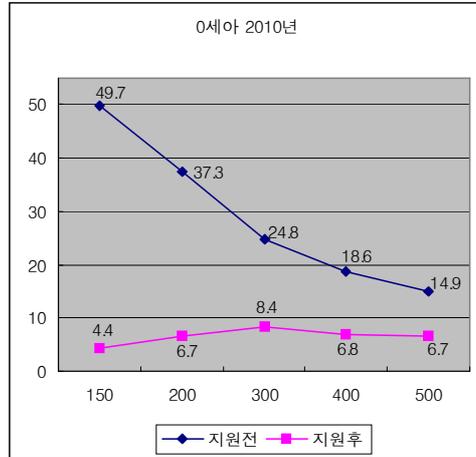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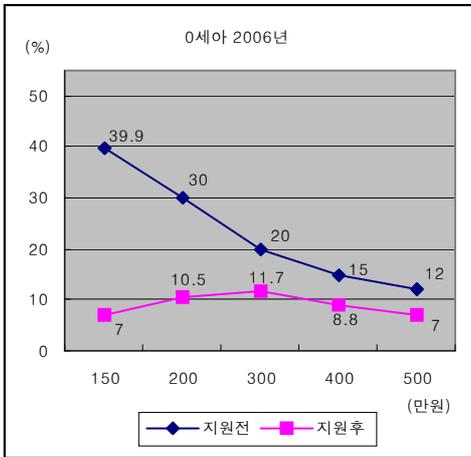
육아비용 정부 지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부모 부담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표 VI-3-8〉과 〈그림 VI-3-1〉은 소득 수준을 편의상 2006년 기준으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및 500만원의 5단계로 나누어, 정부의 비용 부담 전과 후로 나누어 소득수준별 부모 부담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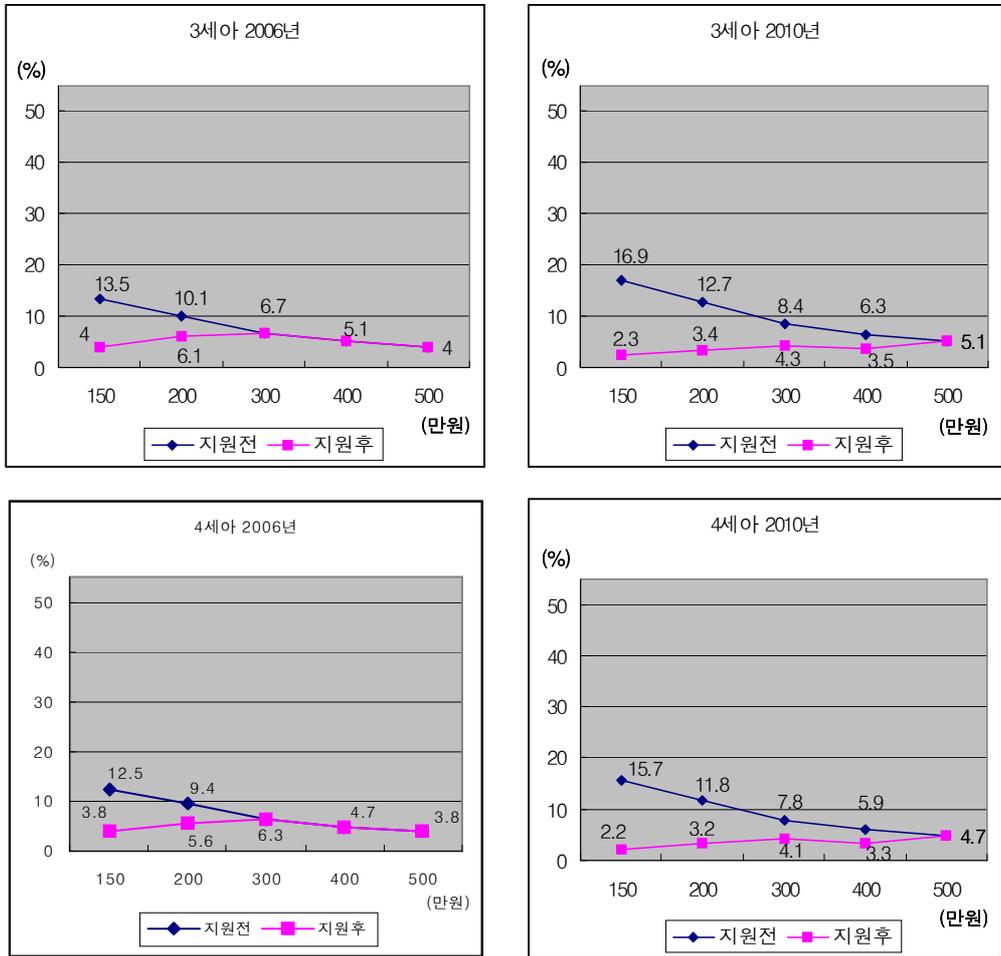
〈표 VI-3-8〉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부담 비율: 2006, 2010

단위: %

월 가구 소득(만원)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5세아	
	지원 전	지원 후	지원 전	지원 후						
2006년										
150	39.9	7.0	27.5	6.2	21.5	5.1	13.5	4.0	12.5	3.8
200	30.0	10.5	20.6	9.2	16.2	7.6	10.1	6.1	9.4	5.6
300	20.0	11.7	13.7	10.3	10.8	8.5	6.7	6.7	6.3	6.3
400	15.0	8.8	10.3	7.7	8.1	6.4	5.1	5.1	4.7	4.7
500	12.0	7.0	8.2	6.2	6.5	5.1	4.0	4.0	3.8	3.8
2010년										
150(182)	49.7	4.4	34.3	3.8	26.5	3.2	16.9	2.3	15.7	2.2
200(243)	37.3	6.7	25.8	5.7	19.9	4.8	12.7	3.4	11.8	3.2
300(365)	24.8	8.4	17.2	7.3	13.2	6.0	8.4	4.3	7.8	4.1
400(486)	18.6	6.8	12.9	5.9	9.9	4.9	6.3	3.5	5.9	3.3
500(608)	14.9	6.7	10.3	5.7	7.9	4.8	5.1	5.1	4.7	4.7

주: ()는 물가상승률 반영 가격





[그림 VI-3-1] 각 연령별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부모부담 보육료 비율: 2006, 2010

예시로 사용한 각 소득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구분한 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대상자와 차상위를 제외한 소득구분 각 계층의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 수준이다.

계획대로 지원할 경우 0~4세 아동보육료와 기본보조 지급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비용 비율은 크게 감소한다. 이 표를 보면 정부의 기본보조와 아동보육료 지원에 의하여 부모 부담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0세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의 비율이 14.9%~49.7% 수준이지만 정부가 지원한 결과 소득수준별로 4.4%~8.4%에 분포한다. 2006년 불변가격으로 300

만원 소득이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만 3세아는 2010년 지원이 없다면 16.9%~5.1%인 것이 지원의 결과로 2.3%~5.1%로 낮아질 전망이다. 만 4세아도 정부 지원으로 2.2%~4.7%에 분포하고, 2006년 가격으로 400만원 소득계층은 4% 이하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중산층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와 유아를 비교해 보면 영아는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아 모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계층의 비용 지원 비율이나 단가의 조정 필요성을 나타낸다.

〈표 VI-3-9〉 월평균 가구 지출 대비 양육지원서비스 비용 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 가구

구분	5% 이하	6~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 이상	모름	계	(수)	$\chi^2(df)$
전체	17.7	31.7	10.7	13.3	3.2	4.5	1.2	1.9	15.7	100.0	(10,424)	-
최연소아동												
영아	19.3	34.8	13.3	17.6	3.5	6.3	1.1	2.4	1.7	100.0	(961)	795.1 (24)**
유아	23.7	37.7	12.2	12.4	4.7	4.7	1.5	1.4	1.6	100.0	(1,062)	
초등학생	21.5	38.4	11.8	13.6	3.1	4.9	1.0	2.3	3.4	100.0	(1,630)	
아동없음	15.6	28.8	9.9	12.8	3.0	4.2	1.2	1.9	22.8	100.0	(6,769)	
현재 모취업												
취업	21.0	37.2	12.4	13.9	3.7	6.3	1.2	2.1	2.2	100.0	(1,552)	61.9 (16)**
미취업	21.3	37.7	12.2	15.0	3.9	4.7	1.2	2.0	2.0	100.0	(1,944)	
모부재	31.2	34.8	12.1	9.9	-	2.1	-	-	9.9	100.0	(141)	

주: ** $p < .01$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들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04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17.7%만이 월평균 가계지출의 5% 이하를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고, 31.7%가 월평균 가계지출의 6~10% 이하를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최연소 아동이 영유아인 가구가 양육비용의 적정수준을 월평균 가계 지출의 10%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영아 54.1%, 유아 61.4%로 유아가 최연소 아동일 경우가 더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차이가 없다(표 VI-3-9 참조).

육아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정책의 추진 결과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비용 규모 및 부담의 적정성 논의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이 육아지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여 2010년이 되면 추정된 소요예산 7조는 2010년 추정 GDP 대비 0.65% 정

도로 추정된다. 또한 보호자는 육아 비용의 31~32% 정도만을 부담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즉 2004년 정부와 부모 3:7 분담 구조가 2010년에 7:3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가구소득 대비 육아지원 비용도 일부 영아 8%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6% 미만이 된다.

이러한 육아지원 비용의 규모나 정부와 보호자의 부담이 적정한가? 사실 정부의 비용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가치에 기초하므로 무엇이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육아정책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과 부담률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06)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를 2005년에 20,935불로 기록하고 있으나,⁹⁰⁾ 정부는 16,000불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에서 2010년 우리나라 GDP 규모를 경상가격 26,000불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0년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앞에서 검토한 4개국의 2000년경의 GDP 수준과 유사하다(표 VI-3-10 참조).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2000년 전후 비용 분담 수준과 2010년 우리나라의 목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3-10〉 각국의 연도별 국민 1인당 GDP 비교

단위: 불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호 주	17303	18205	19055	20146	20963	22074	23225	24511	25666	26730	27900	29243	..
프랑스	19264	19609	20254	21029	21816	22884	23927	24788	26323	27594	28085	28432	29711
일 본	20842	21320	21940	22725	23968	24796	24758	25020	26354	27070	27643	28496	..
스웨덴	18443	18269	19622	20766	21516	22241	23163	24855	26718	27075	28071	28982	30711
한 국	9841	10572	11593	12774	13790	14512	13422	14872	16281	17230	18475	19299	20935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자료: OECD(2006).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이러한 단순한 비교를 해보면 2010년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규모나 부모와 정부의 부담, 가구소득 대비 비율, GDP 대비 비율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호주 육아지원 수준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표 VI-3-11 참조). 호주는 국민 1인당 GDP가 28,000불 수준인 2002년도에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은 GDP 대비 0.45%로 추정된다(OECD, 2006). 스웨덴 역시 1998년 기준으로 3세 이상아에 GDP의 0.6% 정도를 투자하였으며(OECD, 2001), 2002년에 국민 1인당 GDP가 28,000불 수준인데, GDP 대비 유아

90) 최근의 GDP 상승 추세는 생산성 증대보다는 환율 하락에 의한 부분이 큼.

교육·보호에 1.6%이고 방과후 비용은 포함하면 2.0%로 추정되었고(OECD, 2005), 2004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보호·유아교육 비용이 1.7%로 보고하였다. 프랑스는 1998년 기준으로 3세이상 취학전 아동에 GDP의 0.66%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OECD, 2001), 2004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전체에 GDP의 0.1%를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OECD, 2006).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가 조세 부담률을 고려하면(표 VI-3-12 참조), 2010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육아지원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VI-3-11〉 각국의 연도별 육아지원 재정의 GDP 대비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연도	GDP 대비 비율	기준
호 주	2002 ¹⁾	0.4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프랑스	1998 ²⁾	0.66	3세~취학전 교육
	2004 ¹⁾	1.0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스웨덴	1998 ²⁾	0.59	3~취학전 교육
	2002 ³⁾	1.6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004 ¹⁾	1.70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한 국	2006 ⁴⁾	0.3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2010 ⁴⁾	0.65	0세~취학전 교육과 보호

자료: 1) OECD(2006). Start Strong II.

2) OECD(2001). Start Strong

3)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4) 본 추정치

〈표 VI-3-12〉 각국의 평균 근로비용 대비 조세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호주		29.3	29.6	30.2	30.4	27.4	27.8	28.3	28.3	28.6
프랑스	49.1	49.7	48.7	47.6	48.1	48.2	48.3	48.2	48.3	47.4
일본	19.5	19.4	20.7	19.6	24.0	24.1	24.2	29.8	26.7	26.6
스웨덴	49.3	50.2	50.7	50.7	50.5	49.5	48.5	47.6	47.9	48.0
한국	6.9	6.3	12.4	14.7	16.1	16.5	16.6	16.1	16.3	16.6
OECD 평균	37.7	37.5	37.7	37.4	36.8	37.0	36.6	36.4	36.3	36.5

자료: OECD(2006).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한편 이들 국가들이 취업모 등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육아지원 정책의 비용 효율성은 낮다고 하겠다.

2) 서비스 수준 제고

정부의 보육비용, 특히 기본보조 지원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개인 육아지원기관의 운영을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게 된다.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임금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교사도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상호작용의 증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 감독이 필수적이다. 민간개인 보육공급자를 공공의 대행자(Public Agent)로 개념화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들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아동, 부모 및 시설간의 형평성 증가

이러한 재정지원정책의 결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아동 1인당 공적재원 투입, 부모 부담,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비용 등이 모두 동일한 수준이 되어 아동과 부모의 형평성이 유지된다.⁹¹⁾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아동 1인당 총비용과 부모 부담 격차가 축소되고, 부모가 어느 기관을 선택하여도 국공립 수준의 동일한 부담으로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 유형간의 형평성이 확립된다.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증가로 시설간의 교사 인건비와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유형간 운영상태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민간시설의 덤핑으로 인한 서비스 수준의 악화가 해소될 것이다. 가격 차이로 인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간의 불공정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미달하는 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그대로 남을 것이다.

4) 가격규제 예외 등 육아지원기관의 다양성 확대

기본보조가 고소득계층에도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일부 고소득계층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91) 이 논의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제외됨.

이를 희망하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은 비용을 자율화하여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의 선택으로 보육료를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책정한 보육료 이상을 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단, 이 시설들도 보육료 상한선 이외에 정부가 정한 각종 시설, 인력 기준 등은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규모는 앞에서 고위 추정과 중위 추정이 각각 2세아는 3%, 5%를 적용하고 유아의 경우는 8%, 12%를 가정하였다. 실제로는 기본보조금 지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연령별로도 영아는 기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도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유아는 기본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가격규제 예외 시설 이용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이 모두 동일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이 있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우려되는 바는 사회적 위화감이나 격차, 서비스의 질에 대한 왜곡현상과 이에 따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사회적 격차 완화라는 정책의 목적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적 부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검토할 사항

이상과 같은 육아비용 지원 확충에 따르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더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표준보육, 단가의 항목과 단일화

2004년에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기준을 모두 반영하고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행법 기준 이외에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표준보육비용에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단가는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건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대체교사나 초과근무수당 등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선은 시설간의 형평성 제고가 정책우선순위를 갖지만, 장기적으로 절대적 수준의 제고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

〈표 VI-3-13〉 일본 표준보육단가 산출 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 급여(특수업무수당, 부양수당, 조정수당), 기말근무수당, 관리직 수당,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사업주부담금, 통근수당, 주거수당, 촉탁의 수당, 피복수당, 사무직원고상비, 연휴대체직원비, 비상근보육사임금(90인 이상 시설), 비상근 조리원 임금(151인 이상 시설)	- 조정수당, 기말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 사업주 부담금은 지역별 차등을 둠
관리비	- 여비, 청비, 수선비, 보건위생비, 직원 연수비, 특별관리비, 직원건강관리비, 근무조건개선비	- 지역별 차이 없음
아동 일반생활비	- 월 정액	- 지역 및 시설규모별 차이 없음

자료: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03). 保育年報.

둘째, 인력 배치기준의 문제이다. 현재 인력배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여유가 없는데, 원장, 교사 이외에 보조인력이나 사무원 등 지원인력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취사부도 없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여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급여수준도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히 보육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표준보육비용은 가정보육시설 이외에는 시설규모별 특성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단일 단가를 모든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표준보육단가를 4세아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⁹²⁾ 아동연령, 지역, 시설의 규모 민간시설 개선비 등을 가산금으로 제시하고 있다.⁹³⁾

2)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별화

현재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조건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 아니다. 보육료 지원 조건도 모부자 가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만을 고려하고 그 이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요인은 모의 취업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중심이므로 이용이나 비용 지원 조건으로 모의 취업여부를 엄격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⁹⁴⁾ 이는 보육료, 교육비 지

92)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1~2세아, 3세아, 4세 이상아의 4가지로 구분하고 지역은 특별구, 특감지역, 지급할합계 정지역, 갑지역, 을지역, 병지역의 6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규모에 따라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 31~45인, 46~60인, 61~90인, 91~120인, 121~150인, 151인 이상 시설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여기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급여 등 개선비를 각각 12%, 10%, 8%, 4%를 추가 산정하고 있음.

93)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아동연령별로 3세아는 아동 6.0명당 1인, 1~2세아는 아동 7.5인당 1인, 0세아는 아동 3.3인당 1인의 가산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94) 유치원의 경우 이용 희망률이 매우 높은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종일제인 에듀-케어는 모의 취업여부를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음.

원이 저소득층 지원이고, 또한 이들이 대부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기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당초의 가정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원 조건으로 모의 취업여부를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활동을 희망한다는 전제와 보편적 보육 정책의 후퇴라는 비난이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여성 취업의 특성상 취업 및 취업훈련 등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은 육아 지원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을 지원의 조건으로 하거나 우선하고 있다. 호주는 취업여성 및 구직, 직업훈련 여성자녀는 주 50시간,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하나, 미취업 자녀는 주 20시간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일본은 시설 입소 시 모의 취업 여부나 개호 등 가정 사정이 중요한 선별 기준이 된다. 캐나다도 취업 및 직업훈련, 가정내 장애인여부 등이 보육료 지원의 조건이 된다.

한편으로 취업모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 모의 취업이 육아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소득이 미취업모 가구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간의 이원화 문제

현재 정부의 보육비용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이와 다르다. 아동의 상당수가 6시간 정도를 이용하고 귀가하고 있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련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서, 집이나 근처에 조부모 등 유희인력이 있는 경우 아동이 일찍 귀가한다. 많은 민간시설에서는 이런 아동의 보육료도 반일반 비용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기준은 동일하다. 시설에서 부모 보육료와 정부의 지원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치원 교육비는 수업료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일제 이용비용과 급식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의 종일제 이용비용과 2~3만원 내외의 급식비를 받고 사립유치원은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경우도 정부의 일률적 지원 기준은 문제가 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을 이원화하여 서비스 이용과 연동하여 비용을 수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교육은 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기타

중장기 육아지원 방안에 영유아 사교육 부분의 격차 완화 방안과 지역간 육아지원 재정 격차 완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VII.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향후 정책 대안

앞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보육·교육 발전방안에 따라서 총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전망과 효과, 추가 검토 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검토사항에 기초하여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안은 전체적이기보다는 정책 사안별로 다루고자 하였다.

1. 기본 원칙과 정책 대안 개요

가. 기본원칙

각 국가의 보육·교육정책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에 기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보육사업 실시 초기부터 저소득층 지역 우선으로 국공립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점차 그 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왔다. 그 대상을 2007년에 10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민간보육시설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더불어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보육에 대한 사회화 요구가 강해지면서 저소득 중심이 아닌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안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유아교육 정책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려는 정책이 기본 방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은 군 이하 지역의 농어촌에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를 위한 교육기회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공립유치원의 수는 수년간 답보상태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취원아 분담률이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유아교육비는 여전히 높다.

육아비용 지원에 대한 추후 정책 방안 모색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책대안 마련에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와 아동, 육아지원시설 간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계층별 격차의 완화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며 2010년에는 아동이 어느 시설을 선택하여도 동일한 비

용으로 일정한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고,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부모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나 사교육 영역에서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해소 등의 문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된다.

둘째,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사용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취업모 지원, 출산력 제고,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 등 사회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육아 요인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육아지원 비용 과부담 가정의 비용 완화이다. 정부의 계획안이 다자녀 가정, 취업모 가정 등 비용 과부담 가정의 육아지원 비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201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보편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화하고자 하는 서비스 수준의 기준 자체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교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정책 대안 개요

본 보고서에서는 형평성 제고, 비용 과부담 가정의 지원 강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목표로 하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조정의 기본 원칙에서 정책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표 VII-1-1 참조).

첫째, 형평성 차원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으로는 차등 단계와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안 중 2009년부터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과 비율을 다소 수정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지원 체계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역간 보육교육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이외에 개인에 의한 보육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모 취업 등 일정 기준으로 이용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는 2008년부터 영아는 모의 취업여부 등 조건을 두어 지원을 제한하고, 유아는 모 취업여부별로 이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육아지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영아보육료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유아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이 들어가는 2008년부터 영아는 모의 취업여부별로 지원을 제한하되, 부모 부담 보육료를 3세미만과 3세이상으로 이원화하여 0

세아와 1세아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만 2세아 보육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취업모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세제 지원을 제안하였고,⁹⁵⁾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육아서비스 이용비용을 추가로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목표로 하는 서비스의 질 수준 상향 조정 차원에서 비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2010년부터 상시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 정책대안별로 검토 배경,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1-1〉 제시된 정책 대안

구분	대안	개요
형평성 제고	1. 차등 지원 비율 부분 조정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가구 영아와 유아 차등 지원 비율 조정
	2. 기본보조와 차등지원 통합 + 소득단계 및 연령별 지원수준 세분화	- 기본보조와 차등지원 통합 - 현재 7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별로 부모와 정부 부담액을 고시
	3.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	- 지방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분담 차별화 및 적정투자 유인
	4. 사교육비 완화	- 공적 영역에서 특별활동 선별 수용으로 유아 사교육 격차 완화
	5. 육아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등록보육 수용 및 지원
효율성 제고	1.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0세아와 만 1세아 취업모 등 인정되는 가구만 지원 - 만 2세아 이상은 취업모 등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이원화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 완화	1. 영아보육료 상한제 +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영아보육료 상한제로 0세아와 만 1세아 보육료를 만 2세아 수준인 25만원(2006년 기준)으로 조정 - 0세아와 만 1세아 취업모 등 인정되는 가구만 지원 - 만 2세아 이상은 취업모 등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이원화
	2. 취업모 추가 지원	- 중산층 취업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3. 출생순위별 추가 지원	- 출생순위만으로 육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서비스 질적 기준 제고	1. 교사 근무여건 개선	- 서비스 수준 자체 상향 조정 필요 - 교사 근무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상시교사 제도 도입

95)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홑벌이 가구보다 높아서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미취업모에 비하여 모의 취업으로 인한 육아비용 증가 부분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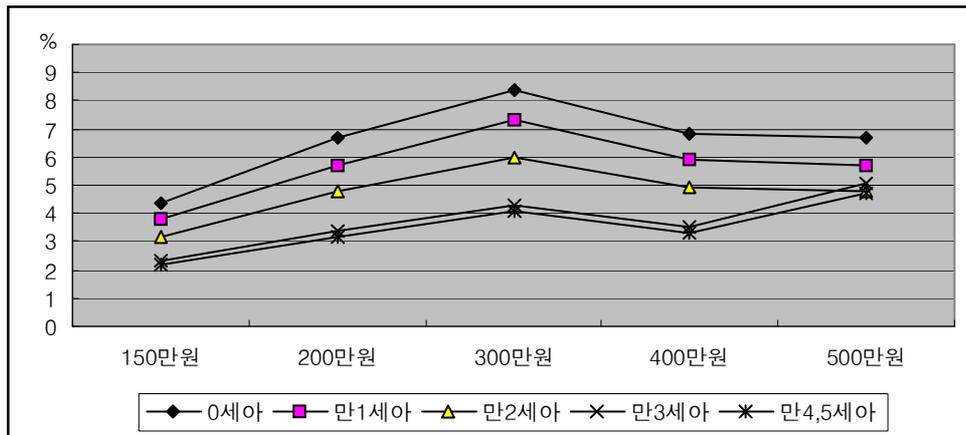
2. 형평성 제고 방안

가.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 비율 조정

1) 배경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2010년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부모 부담을 보면 0세아의 경우, 2006년 불변가격으로 300만원 소득이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반면에 유아는 2006년 불변가격으로 400만원 소득이 4%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유아에 비하여 영아의 부담 비율이 높고, 동일연령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 연령 모두 소득 300만원 기준인 경우 소득 대비 부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는 가구소득 400만원이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그림 VII-2-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영아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아 모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I-2-1] 당초안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2) 추진방안

현재 계획된 지원체계는 영아 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득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고르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층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2009년 이후 영아와 유아의 지원 비율을 <표 VII-2-1>과 같이 조정한다.

〈표 VII-2-1〉 소득수준별·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과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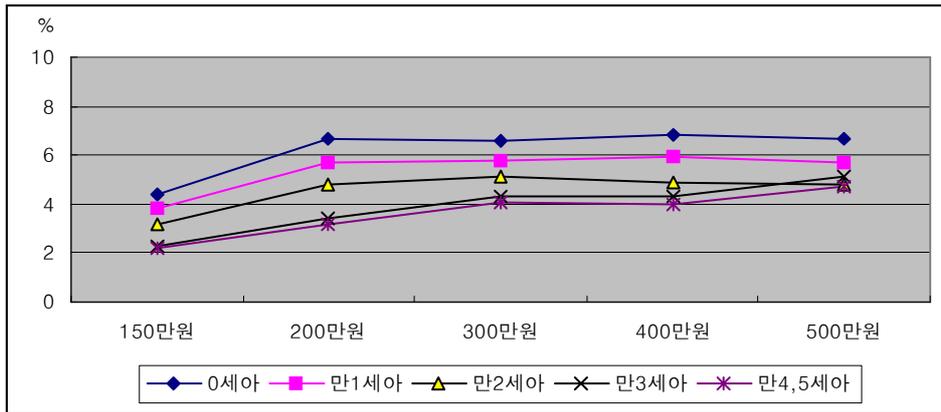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당초 지원비율 ¹⁾		변경안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100	60	100		100	
3층	50%까지	80	40	80		80	
4층	70%까지	60	60	60		60	
5층	100%까지	30	30	30	45	30	45
6층	130%까지	30	30	15	30	15	30
7층	130%초과	-	-	-		-	

자료: 1)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유아의 경우는 2009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30% 가정은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축소하고, 영아는 2009년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100% 가정은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5%로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즉, 비율상으로 영아와 유아의 특정계층 지원 비율을 15%씩 줄이고 늘렸다.

이렇게 조정하면 각 연령별로 소득 200만원이상에서는 소득 대비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앞의 그림에서 전 연령 모두 소득 300만원 기준인 경우 소득 대비 부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는 가구소득 400만원이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은 개선된다(그림 VII-2-2 참조).



[그림 VII-2-2] 대안 시 월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보육료 비율

3) 소요예산

차등지원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면 기본보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총 보육비용도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보육료로 책정된 부분의 정부와 부모의 부담이 달라진다. <표 VII-2-2>, <표 VII-2-3>은 소요예산을 나타낸다.

소요예산을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보육 1조 5881억원, 유아교육 4213억원으로 총 2조 93억원이다(표 VII-2-3 참조). 이 2010년 예산은 정부 예산이 당초안보다 보육은 35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유아교육은 139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아 예산은 감소하지만 영아 예산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총 예산은 218억원이 증가한다.

<표 VII-2-2> 보육과 유아교육 소득수준별 차등 소요 예산: 2009~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보육		
0세아	126,732	151,156
1세아	266,760	313,576
2세아	452,321	482,455
3세아	324,471	341,844
4세아	226,841	299,019
소계	1,397,125	1,588,050
유아교육		
3세아	161,028	167,115
4세아	245,184	254,138
소계	406,212	421,253
총계	1,803,337	2,009,303

<표 VII-2-3> 소득수준별 · 연도별 차등 소요 예산 비교: 2009~2010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예산(A)		수정 안(B)		차액(B-A)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보육과 교육 구분						
보육	1,364,551	1,552,346	1,397,125	1,588,050	△ 32,574	△ 35,704
유아교육	419,604	435,141	406,212	421,253	▽ 13,392	▽ 13,888
영아와 유아 구분						
영아	795,064	890,355	845,813	947,187	△ 50,749	△ 56,832
유아	989,091	1,097,132	957,524	1,062,116	▽ 31,567	▽ 35,016
계	1,784,155	1,987,487	1,803,337	2,009,303	△ 19,182	△ 21,816

나. 지원체계 일원화 및 차등 지원 단계 세분화

1) 배경

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차등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7계층으로 나누고, 실제로 2010년에 비용 지원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각 계층의 중간 소득수준으로 보면 소득 대비 비용의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다른 가구가 동일한 계층에 속하여 동일한 지원 비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동일 계층내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5계층에는 최소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1%부터 최고 100%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2010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400만원으로 추정하면 소득인정액이 281만원부터 400만원 사이에 분포함을 의미하고, 이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60%의 지원 비율이 들어가므로 만 2세아 단가를 적용하면 소득 대비 육아비용 지출 비율이 5.1%에서 7.2%에 분포하게 된다(표 VII-2-4 참조).

소득수준에 적합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원의 차등화 단계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하고,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로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이 모두 소득별로 매우 세분화된 각기 다른 부모 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20단계 이상 세분화하여 연령별로 단계마다 다른 부모 부담액을 정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VII-2-4〉 소득단계별 소득 및 소득 대비 부모 부담 비용 비율의 최소 최대:
만 2세아, 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009년	만 2세아 기준			
			가구소득 (평균 400만 추정)		소득대비 비용 비율 (비용 290만원 기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층	법정	100	-	-	-	-
2층	차상위 계층	100	-	-	-	-
3층	50%까지	80	150	200	2.9	3.9
4층	70%까지	60	201	280	4.1	5.8
5층	100%까지	30	281	400	5.1	7.2
6층	130%까지	30	401	520	3.9	5.1
7층	130%초과	-	521		-	

주: 20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400만원, 만 2세아 보육료 기준 29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2) 추진계획

정부가 소득계층을 50만원 등 일정한 액수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총 비용 중 정부와 부모의 부담을 금액 또는 비율로 연령별로 다르게 매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와 같이 아동연령별 보육료나 교육비가 다른 상황에서 일정한 지원 비율의 적용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부모와 정부의 부담액 산출이 여의치 않다. 그러므로 일률적 비율의 적용보다는 연령별로 소득계층별 기본보조와 차등지원액을 합한 정부지원액을 정액 또는 비율로 고시하고 그 이외 비용은 소득계층별로 부모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현재처럼 각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또 기본보조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보육비용의 부모와 정부의 부담내용을 각 연령 및 소득계층별로 각각 표로 만들어 제공하면 아동 1인당 1회의 고려로 행정처리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종 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본 방안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2-5〉는 2007년 기준으로 민간보육시설 정부 지원인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표이다. 각 시도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부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VII-2-5〉 영아 보육비용의 정부와 부모 부담: 2007

단위: 천원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0세아		만 1세아		만 2세아	
		정부	부모	정부	부모	정부	부모
1층	법정	653	-	451	-	348	-
2층	차상위 계층	653	-	451	-	348	-
3층	50%까지	581	상한-581	388	상한-388	296	상한-296
4층	70%까지	473	상한-473	293	상한-293	217	상한-217
5층	100%까지	364	상한-364	197	상한-197	165	상한-165
6층	130%까지	292	상한-292	134	상한-134	86	상한- 86
7층	130%초과	292	상한-292	134	상한-134	86	상한- 86

주: 부모는 상한에서 정부부담액을 빼 만큼을 부담함. 상한은 각 시도 지사가 정한 민간보육시설 상한가를 의미함. 실제는 각 시도별로 다른 수치가 들어가게 됨.

다. 지역간의 재정 격차 완화

1) 배경

현재의 정부 재정 배분 방식은 지역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육예산의 중앙 및 지방 분담비율은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를 두지 않거나 차이를 두는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분담 비율이 동일하여 지방의 재정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육예산은 학급 자원봉사 훈련비용은 중앙과 지방의 분담이 30:70이고 이외 사업은 모두 50:50으로 지역 차이가 없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보육이나 유아교육 재정 지원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 보육사업의 경우 2006년도 시·도 특별사업 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13%인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사업예산이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42.8%로 가장 높고, 광주와 충청북도는 1.0%미만으로 최저 수준이다. 2005년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아동 1인당 금액이 경기도가 30만 7천원으로 가장 낮고, 광주가 76만원으로 가장 높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지방정부 재정자주도 등 경제 상태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격차에서도 상당 부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최근에 총액(Block Grant) 방식으로 중앙정부 재원이 배분되면서 지방정부 결정에 의한 재정 사용처는 특정 사업의 지역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자체 육아지원사업 평가 등의 방법으로 육아 지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추진계획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세 체계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육아부문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보육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 상태를 반영하여 재정 분담 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도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시·도는 시·군·구 재정상태 차이를 반영하여 재정을 차등화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또는 지방교육재정도 균등화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각 지방정부가 지역 재정 상태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육아에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육아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1) 배경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제도권보다는 유아 사교육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공보육이나 공교육 영역에서는 차등보육료나 기본보조 등 재정지원 정책에 의하여 2010년경이면 사회집단간의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이 사용하지만 소요 비용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다. 구체적으로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5.8배이고, 학습지도는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가 1분위 대비 3.4배이다. 방문지도나 그룹지도는 10분위가 타 집단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다.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및 지출 대비 비율은 0.3, 0.6으로 분위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다.

즉, 소득계층별로 사교육 이용에서 차별화되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사교육의 집단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등 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추진계획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전체적인 보육이나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강화하여 부모와 아동의 건전한 특별활동 욕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거나 또는 부모와 분담이 필요할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기교육비를 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후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정미라 등(2005)은 전문화된 특기 적성 교육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고 개선방안으로 부전공제 활성화에 의한 적성 심화 유아교사 양성제도의 개발, 유아교사와 예체능 교육분야간 연계교사 양성을 위한 현직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의 적성 심화 순회 교사 제도화, 적성 심화의 지역 거점화 유치원 육성과 시설 및 인적 지원 공동 활용,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의 학교 수준간·교육분야간 특성화 유치원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인적 자원 공동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 비용 지원 대상 확대

1) 배경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비 정부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학원은 많은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교육기관이다. 유아의 약 7%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제도를 200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을 갖춘 학원이 2년 안에 유치원 설치기준에 맞추어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청의 심의를 통하여 일부 학원 이용아동을 차등보육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⁹⁶⁾

한편 영유아의 10% 이상이 이웃탁아모나 조부모가 돌보고 있다. 특히 0세아는 조부모에 의한 보육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비공식보육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과 혈연 모두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으로 무급으로 육아지원을 하는 조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여, 이 역시 기회와 더불어 질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아동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추진계획

학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여 이들이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제도화하도록 한다.

개인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의 실시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0세아와 만 1세아 취업모 자녀에 한하여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 조부모, 친인척 등이 일정 기간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을 육아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96) 2005년도 지원실적은 125개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1981명이 교육비 지원을 받았음 (교육인적자원부, 2006.2. 내부자료).

이는 기본보조 등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안정되는 2010년부터 실시한다.

3) 소요예산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티는 물론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육서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전체 영유아 중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10.5%이므로(서문희 외, 2005), 0세아와 만 1세아의 약 10%인 6만명 정도에게 보육 기본보조에 준하여 연간 약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 2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3. 효율성 제고 방안: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방안

가. 배경

수준 높은 육아서비스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인적 자원 발달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육아 지원의 발전 과정이나 현재 부모들의 요구를 보면 육아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나누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취업여성을 지원하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부모의 취업여부를 이용 및 비용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아비용 지원, 특히 영아 지원에 있어서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사회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보육지원은 저소득층 지원이었고, 저소득층 여성은 취업을 희망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취업모를 고려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VII-3-1〉 영아와 유아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소계	3세아	4세아	만 5세 이상아	소계	
취업	20.4	24.0	32.2	25.4	37.4	35.4	40.3	38.2	33.3
미취업	79.6	76.0	67.3	70.4	60.3	61.3	56.5	58.9	64.9
모부재	0.0	0.0	0.5	6.2	2.3	3.4	2.8	2.9	1.8
계	100.0 (358)	100.0 (388)	100.0 (422)	100.0 (1,168)	100.0 (441)	100.0 (506)	100.0 (837)	100.0 (1,784)	100.0 (2,952)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모의 취업률은 아동구분별로 영아의 모 25.4%, 유아의 모 38.2%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은 33.3%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취업률 영아의 모 23.8%, 유아의 모 37.9%, 영유아 전체 31.7%에 비하여 취업률이 약간 높아진 비율이다.

한편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모가 취업모인 아동비율은 영아 59.5%, 유아 49.0%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이용아동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취업모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미취업모의 자녀도 상당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표 VII-3-2 참조).

〈표 VII-3-2〉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영아 보육시설	유아 보육시설	유아 유치원
취업	59.5	49.0	32.4
미취업	39.7	48.3	64.5
모부재	0.8	2.8	3.1
계	100.0(131)	100.0(688)	100.0(482)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비용 지원대상을 연장제,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육과 교육 통합에 대비하여 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기준 통일 등이 필요하다. 미취업모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시간 내외라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표 VII-3-4 참조). 영유아의 기관 등원 및 하원 시각으로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 시간이 각각 14.6%, 19.1%로 30% 이상이다(표 VII-3-3 참조). 또한, 취업여부별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차이를 보인다(표 VII-3-4 참조).

〈표 VII-3-3〉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전체
5시간까지	8.2	10.4	16.6	10.0	25.0	14.6
5~6시간까지	13.6	22.4	20.9	10.0	6.3	19.1
6~7시간까지	23.8	25.4	11.8	-	6.3	15.1
7~8시간까지	19.0	14.9	15.7	10.0	9.4	15.7
8~9시간까지	17.0	6.0	16.1	-	28.1	15.8
9~10시간까지	8.2	13.6	11.6	40.0	3.1	11.2
10~11시간까지	9.6	4.5	6.4	30.0	15.6	7.3
11시간 그 이상	-	1.5	1.0	-	6.3	1.0
계(수)	100.0(145)	100.0(66)	100.0(512)	100.0(12)	100.0(45)	100.0(821)
평균이용시간	7시간 33분	7시간 14분	7시간 14분	8시간 23분	7시간 55분	7시간 20분
표준편차	1시간41분	1시간 51분	1시간 55분	3시간 3분	2시간 28분	1시간56분
F	2.3*					

주: * $p < .05$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VII-3-4〉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10시간 46분	8시간 39분	7시간 16분	7시간 59분	7시간 43분	7시간 5분	6시간 27분
표준편차	1시간 21분	2시간 32분	2시간 6분	1시간 55분	1시간 55분	1시간 45분	1시간 43분
(수)	(2)	(13)	(68)	(125)	(158)	(187)	(134)
미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2시간 0분	7시간 14분	6시간 23분	6시간 7분	6시간 5분	5시간 58분	5시간 53분
표준편차	-	1시간 52분	1시간 36분	1시간 23분	1시간 21분	1시간 18분	1시간 30분
(수)	(1)	(17)	(40)	(116)	(249)	(267)	(196)

주: 0세가 3명 중 1명은 하루 2시간 시간제보육이므로 전체 평균은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실상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모두 종일제로 들어간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보육시설 운영비나 종사자의 처우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는 운영비 감소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지는 않다.

나. 추진계획

제시된 대안의 추진 계획은 당초 방안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만 2세 이상아는 이용시간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모의 취업여부에 의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연장제와 종일제 아동

으로 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는 만 0, 1세아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유아교육에서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추가 발생요인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와 반일제 용어를 규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종일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7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고, 반일제는 오후 2~3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⁷⁾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에서의 반일제를 연장제 개념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 소요예산

먼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소요예산이다. 소요예산 산출 시 두 가지 요인이 고려되었다. 첫째는 종일제와 연장제 이용 아동비율인데, 각 연령별 취업모 등 종일제 보육 필요 비율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20~40%를 연장제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영아의 경우, 0, 1세아는 각각 20%와 3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만 2세아는 35%, 그 이외 유아는 40%를 연장제로 간주하여 비용을 달리 적용하였다. 종일제를 적용한 비율은 현재 취업률보다는 상향 조정된 비율이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 모의 취업률은 이 비율보다 낮지만, 모의 취업 이외에도 질병, 가족간호, 구직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자가 있고, 또한 보육서비스 지원의 강화와 모의 취업은 상호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인식되고 있어서 취업모 아동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면 이 비율도 증가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종일제 보육이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연장제 총 보육비용의 기본보조와 보육료의 비율 부분은 현재 총비용 대비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 배분 기준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가정하였다. 반일제 비용 단가는 2004년에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비용을 적용하였다.

그러면 예산규모 상의 절감은 어느 정도인가? 앞에서 산출한 예산 각세별 추정치에 소요예산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보육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의 경우 각각 얼마 정도의 예산 규모가 절감됨을 알 수 있다. 비율은 만 2세

97) 유아교육진흥법 제6조(수업과정)에서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수업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이를 승계하였음.

이상은 연령별로 0.929에서 0.958 사이에 분포한다(표 VII-3-5 참조).

〈표 VII-3-5〉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비용 절감 비율

단위: %

연령	보육				유아교육			
	종일제 비율	연장제 비율	연장제 비용의 표준비용 비율	당초안 대비 소요예산 비율	종일제 비율	연장제 비율	연장제 비용의 표준비용 비율	당초안 대비 소요예산 비율
0	80	-	66.9	0.8 ¹⁾	-	-	-	-
1	70	-	79.7	0.7	-	-	-	-
2	65	35	79.8	0.929	-	-	-	-
3	60	40	87.0	0.948	60	40	123.3	1.093
4	60	40	89.4	0.958	60	40	115.3	1.061
5	60	40	84.8	0.939	60	40	121.1	1.085

주: 1) $(0.8 \times 1) + (0 \times 0.669)$ 의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이 비율에 기존 방안에 따른 소요예산을 적용해 보면 정부 재정 부담 축소 규모는 2008년부터 3289억원, 2009년 4160억원, 2010년 5067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절감 내용을 보면 기본보조 3085억원, 차등보육료 1804억원, 만 5세아 무상보육 179억원이다(표 VII-3-6 참조).

그런데 이러한 방안은 예산 절감 효과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시설의 운영과 인력의 신분 안정 문제이다. 현재의 보육비용으로도 시설 운영이 쉽지 않은데, 반일제 아동의 감축된 비용 만큼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처우 개선과 8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환경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문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가 있다.

〈표 VII-3-6〉 취업여부별 보육시간과 비용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기본보조 지원	1,431,354	1,806,488	2,276,521
차등보육료	1,145,718	1,364,551	1,552,346
만 5세아 무상보육	234,986	280,890	292,998
소계	2,812,058	3,451,929	4,121,865
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			
기본보조 지원	1,243,985	1,564,159	1,968,027
차등보육료	1,018,627	1,208,041	1,371,967
만 5세아 무상보육	220,561	263,756	275,125
소계	2,483,173	3,035,956	3,615,119
증감(이원화 예산-당초예산)			
기본보조 지원	▽187,369	▽242,329	▽308,494
차등보육료	▽127,091	▽156,510	▽180,379
만 5세아 무상보육	▽14,425	▽17,134	▽17,873
소계	▽328,885	▽415,973	▽506,746

〈표 VII-3-7〉 취업여부별 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304,597	445,143	582,758
차등교육비	320,868	419,604	435,141
만 5세아 무상교육	328,755	418,758	484,190
소계	954,220	1,283,505	1,502,089
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328,257	479,747	628,225
차등교육비	344,360	450,522	467,208
만 5세아 무상교육	356,700	454,352	525,346
소계	1,029,317	1,384,621	1,620,779
증감(이원화예산-당초 예산)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23,660	△ 34,604	△ 45,467
차등교육비	△ 23,492	△ 30,918	△ 32,067
만 5세아 무상교육	△ 27,945	△ 35,594	△ 41,156
소계	△ 75,097	△ 101,116	△ 118,690

한편으로 유아교육은 현재 교육비가 반일제 중심이기 때문에 취업모 중심으로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보육과는 반대로 취업모의 종일제 비용을 추가되고 이 비용을 정부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유치

원 종일제와 연장제 비용의 비율이 각 연령별로 115~123% 수준에 분포하므로 이 비율 정도 비용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각 연령별로 6.1%~9.3% 정도 비용이 증가된다. 실제로 각 연령별 비용을 산출하면 <표 VII-3-7>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약 1187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3-8>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합한 소요예산을 나타낸다. 유치원 교육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 5세아의 경우는 다소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보조와 차등보육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10년에 3881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VII-3-8> 취업여부별 보육·유아교육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시 예산 비교: 2008~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기본보조	1,735,951	2,251,631	2,859,279
차등보육료	1,466,586	1,784,155	1,987,487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563,741	699,648	777,188
소계	3,766,278	4,735,434	5,623,954
시간과 보육료 이원화 시			
기본보조	1,572,243	2,043,905	2,596,252
차등보육료	1,362,987	1,658,563	1,839,175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577,351	718,108	800,471
소계	3,512,581	4,420,576	5,235,898
증감(이원화예산-당초 예산)			
기본보조	▽ 163,708	▽ 207,726	▽ 263,027
차등보육료	▽ 103,599	▽ 125,592	▽ 148,312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 13,610	△ 18,460	△ 23,283
소계	▽ 253,697	▽ 314,858	▽ 388,056

4. 육아비용 과부담 가구 부담완화 방안

가. 영아보육료 상한제 적용과 취업여부별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1) 배경

정부안에 대한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아, 특히 만 2세 미만아의 보육료가 타 연령층 보육료에 비하여 비싸고,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여도 부모의 부담이 유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이것은, 영아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된다. 특히 0세 아와 만 1세아는 부모 부담이 크다. 따라서 영아보육료가 2006년 기준으로 25만원

이 넘어가지 않도록 0세아와 만 1세아의 부모부담분을 만 2세아 비용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만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7.5%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도 교사대 아동비용은 각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보육료를 세분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호주의 아동연령별로 규정된 교사 1인당 아동수는 0~1세아는 4~5명, 2세아는 10~12명, 3~4세아 10~15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보육료의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일본⁹⁸⁾도 2세미만아와 3세아 또는 4세 이상아로 구분하여 영아의 보육료를 일원화하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계층이 젊은 계층이고 경력이 일천하여 소득수준이 낮다. 따라서 높은 영아보육부담은 이들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 여성들이 취업과 출산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비용을 낮추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기본보조 형태로 들어가는 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본보조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아에게 투입되는 정부의 비용이 많은 만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즉, 영아는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반드시 구분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안을 그대로 두고 동시에 영아보육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취업모에게 들어가는 영아 보육 지원을 감축하여 취업모 지원에 충당하는 효과가 있다.

2) 추진방안

추진방법으로 첫째, 영아 부모 부담 보육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0세아와 만 1세아의 부모부담을 만 2세아 부모 부담액과 동일하게 하고 차액은 모두 기본보조로 지원한다. 즉 0세아의 경우 정부안에 비하여 부모부담을 연도별로 2006년 96,000원에서부터 115,000원까지 축소하고 그만큼 정부 부담을 늘리며, 만 1세아는 50,000원부터 최대 58,000원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각 연령별 연도별 정부와 부모의 부담분은 <표 VII-4-1>과 같다.

둘째, 앞에서 제안한 이용시간 이원화에 따른 보육비용의 이원화를 그대로 적용한다. 아동연령별로 종일제 및 연장제 적용 비율은 앞의 <표 VII-3-5>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이 방안은 유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이 전면 도입되는 2008년부터 실시된다.

98) 교사대 아동 비율은 0세아 1:3, 1~2세아 1:6, 3세아 1:20, 4세 이상 1:30임.

<표 VII-4-2>는 각 연령별 연도별 정부와 부모의 부담분의 증감을 나타낸다.

<표 VII-4-1> 연차별 영아 기본보조 지원 계획

단위: 천원

년도	인건비지원시설			민간		
	표준	부모	기본	표준	부모	기본
0세아						
2006년	746	250	496	597	254	343
2007년	783	250	533	666	250	416
2008년	822	263	559	740	263	477
2009년	863	276	587	820	276	544
2010년	906	290	616	906	290	616
만 1세아						
2006년	515	250	265	412	254	158
2007년	541	250	291	460	250	210
2008년	568	263	305	511	263	248
2009년	596	276	320	566	276	290
2010년	626	290	336	626	290	336
만 2세아						
2006년	397	250	147	318	254	69
2007년	417	250	167	354	250	104
2008년	438	263	175	394	263	131
2009년	460	276	184	437	276	161
2010년	483	290	193	483	290	193

<표 VII-4-2> 연차별 영아 부모 비용 감소 및 기본보조 증가 규모

단위: 천원

구분	0세아		만 1세아	
	국공립	민간	국공립	민간
2006년	100	96	50	54
2007년	100	100	50	50
2008년	105	105	52	52
2009년	110	110	55	55
2010년	115	115	58	58

3) 소요예산

이 경우 0, 1세아 보육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액은 정부 계획안에 비하여 2008년 2090억, 2009년 2676억원, 2010년도에 3302억원이 감소된다(표 VII-4-3, VII-4-4 참조).

보육만을 기준으로 보면 0, 1세아 지원을 취업모 등 가정에서 보육이 어려운 가

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5067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그 지원 수준을 만 2세아 수준으로 높여도 당초 계획된 예산 중 3000억원 이상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4-3〉 영아보육비용을 만 2세 수준으로 통일 시 소요 예산: 0~1세(2008~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본보조			
0세아	173,361	231,148	299,176
1세아	205,809	271,579	350,700
소계	379,170	502,727	649,877
차등보육료			
0세아	73,200	100,955	125,457
1세아	137,916	175,528	206,333
소계	211,116	276,483	331,790

〈표 VII-4-4〉 영아보육비용 만 2세 수준으로 통일 시 소요예산 비교: 0~1세(2008~2010)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초예산			
기본보조	491,036	638,724	795,762
차등보육료	308,201	408,062	516,057
소계	799,237	1,046,786	1,311,819
취업모+보육료만 2세로 통일			
기본보조	379,170	502,727	649,877
차등보육료	211,116	276,483	331,790
소계	590,286	779,210	981,667
증감(취업모+통일시-당초예산)			
기본보조	▽ 111,865	▽ 135,997	▽ 145,885
차등보육료	▽ 97,086	▽ 131,579	▽ 184,267
소계	▽ 208,951	▽ 267,576	▽ 330,152

나. 취업모 추가 지원 방안

1) 배경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취업모 가구의 소득수준은 미취업모 가구보다 높다. 상당수의 여성취업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아동 육아지원 지출 비용의 비율은 미취업가구보다 높고, 가구의 육아지원 지출 비용이나 소득 대비 아동 육아지원 비용 비율에 대하여 모의 취업은 가구소득분위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영향력은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별 격차 해소보다는 여성 근로의 대가가 진정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취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취업모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2) 추진계획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에게 양육비 관련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조세 부담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

1) 배경

현재 정부 정책은 자녀가 2명 이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 연령이 어린 자녀의 비용을 20% 감액해 주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을 50%까지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 추진 배경을 두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출산수준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추가한다면 출생순위만으로 추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이 과거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아동 중심으로 순위를 적용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日本保育團體連絡會, 2006).

2) 추진계획

2008년부터 출생순위만으로 두 번째 자녀는 보육료·교육비의 50%, 세 번째 자녀는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3) 소요예산

2004년 전국 출산력 조사 자료(김승권 외, 2004)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자녀는 출생순위가 첫 번째가 54.2%, 두 번째 아동이 39.4%, 세 번째가 6.4%로 추정되었으므로 보육료나 교육비 중 두 번째 아동 39.4%에게는 50%, 세 번째 아동 6.4%에게는 70%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면 기존 부모 부담 중 22.7% 정도를 부모 대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이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5. 서비스 질적 기준 제고 방안: 교사근무 여건을 중심으로

가. 배경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은 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여기서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보육비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 조건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으로 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대체인력의 부재라는 두 가지 점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 이상이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보육교사회 조사(김종해 외, 2001)에서는 10.6시간, 유희정과 이미화(2004)의 연구에서는 평균 10.2시간, 2004년도 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10.05시간, 2006년 서문희 연구는 10.5시간으로 조사되어 여러 연구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변화가 별로 없음을 나타낸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도 유사하다. 2004년도 유치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균 9.3시간인데 공립교사는 8.3시간이고 사립교사는 10.3시간이다(나정 외, 2005).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대체교사이다. 교사 배치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상으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종일제 운영을 위한 1인 이상의 교사와 3학급이상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보직교사 1인 이상 배치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정도이다. 현재 육아지원 인력 인건비에도 대체교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특별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은 75.2%인데, 보수교육의 법적 기준 미준수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37.3%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서문희 외, 2006). 또한 보육시설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대체교사를 쓴다는 비율은 18.5%이고, 나머지는 교사와 원장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고 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시에도 약 40% 정도만이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⁹⁹⁾

99) 이 비율도 역시 국공립은 61.3%로 가장 높고 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25.5%, 10.7%로 낮은 수준임.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교육이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나. 추진방안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교육이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 11인당 1명의 상시 교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형 기관에는 상시 교사를 시설에 두고 소규모 기관에는 행정기관이나 정보센터 등에 소속시키고 요청되는 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한 교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여 증가되는 비용을 정부와 부모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와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부모가 반씩 나누어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

유치원교사는 종일제에 따른 지원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다. 소요예산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교사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하면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2시간이 증가된 것이다. 출퇴근 시각 앞 뒤 여유 시간 등 근로의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30분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1.5시간으로 18.75%의 추가 요인이 발생한다.¹⁰⁰⁾

또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소진을 고려한다면 교사 1인당 휴가 10일, 보수교육 등 교육 10일 이외에 질병, 출산 및 가족간호 등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일수 등을 고려하여 평균 25일 정도는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체교사에게도 동일한 휴가 등이 보장된다면 보육교사 11인당 대체교사 1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보육교사수의 9%를 상시교사로 추가 확보하여야 하고, 따라서 각종 비용 및 예산에서도 0.09의 가중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표 VII-5-1>은 앞에서 다룬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체교사 확보 2가지 요인이 보육비용 및 보육료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모두 개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는 27.8%의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즉 연령별로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27.8% 상승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00) 토요일 근무 등으로 주당으로 환산하여도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9시간으로, 4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4.5%가 더 많음. 이 문제는 추후에 검토함.

〈표 VII-5-1〉 정원 79명 보육시설 기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보육비용 상승

구분	내용	인건비 상승 비율
초과근무수당 지급	- 하루 1.5시간 연장 근무 인정	0.188
상시교사 확보	- 휴가, 교육, 출산휴가 등 년 평균 25일 인정 - 대체교사도 동일 휴가 인정	0.09
계		0.278

여기에 연령별 보육비용 중 인건비 비율을 산출하여 상승비율을 곱하면 보육료 상승비율을 산출하였는데, 보육료 지원 단가의 상승률은 아동연령별로 0세아 최고 22.1%, 최저 만 5세아 15.5% 사이에 분포한다(표 VII-5-2 참조).

이렇게 할 경우 정부의 총보육비용은 7조 5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소요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209억원이 증가되고 부모 부담은 그만큼 증가된다. 그러나 총 비용 대비 정부의 부담 비율은 2.8%가 낮아질 전망이다(표 VII-5-3 참조).

〈표 VII-5-2〉 정원 79명 보육시설 기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보육비용 상승

단위: 백만원, %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인건비(A)	608,465	385,230	289,557	161,994	134,090	134,090
표준보육비(B)	788,973	524,038	403,333	267,143	247,529	249,503
A/B	77.1	73.5	71.8	60.6	54.2	53.7
보육비용상승비율	22.1	21.1	20.6	17.4	15.6	15.5

주: 표준보육비에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적용하고 있는 보육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VII-5-3〉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위한 상시교사 도입에 따른 보육비용 부담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비율
0세	590,786	234,954	825,740	71.5
만 1세	864,015	400,643	1,264,658	68.3
만 2세	1,245,982	692,151	1,938,131	64.3
만 3세	789,145	516,941	1,306,088	60.4
만 4세	662,858	440,066	1,102,923	60.1
만 5세	490,004	124,119	614,124	79.8
계(A)	4,642,791	2,408,875	7,051,665	65.8
당초안(B)	4,121,865	1,887,949	6,009,814	68.6
증가(A-B)	△ 520,926	△ 520,926	△ 1,041,851	▽ 2.8

VIII. 맺는 말

본 보고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따르는 소득계층별, 지역별 및 모의 특성별 격차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 및 통계자료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기존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소득 등 부모의 사회적 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중장기 육아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완적인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소득수준 등 계층별로 사교육영역은 물론 공적 영역을 포함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에 격차가 존재한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차이가 있으며, 각각에서도 설치 및 운영 주체별로 또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도 시설의 설치는 물론 육아비용 지원도 지방정부 재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당 아동의 각 서비스 이용률은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다. 가구가 아동 육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15.3%로 나타났다. 이외 모취업, 도시거주, 대학원이상 학력, 4년제대 학력 변수가 유의하여 이들 변수를 포함하면 설명력은 21.5%로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적어도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상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제시한 2010년까지의 육아지원계획은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중산층까지 지원하고 기본보조를 확대하여 민간시설에도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시설 및 부모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부담 비용 없이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모두 달성하려면 2010년 기준으로 단년도에 6조 6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총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의 거의 70%를 부담하고 부모는 비용의 30%만을 부담하면서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GDP 대비 보육비용 예산의 규모는 0.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부담 비율도 영아는 특정계층은 최대 8.4%까지 부담하지만 유아는 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몇몇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계획은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별로 고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관 이용이나 지원에서 모의 취업 등으로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가정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이용시간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상당 기간 동안 간과해 왔던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문제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특별활동 등 사교육 부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려가 없다. 특기보습학원은 소득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5.8배,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는 3배이다. 또한 출생순위별 추가 지원, 지역별 재정 지원 차이에 대한 개선 등도 고려하지 않았고,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는 본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볼 때 2010년 우리는 국민 1인당 GDP가 경상가격 26,000불 수준으로 추정되고, 이는 선진국의 2000년 경 수준이다. 2010년 우리나라 육아지원 재정규모나 재정규모의 GDP 대비 비율, 부모와 정부의 부담 등이 스웨덴, 프랑스 등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호주 지원수준과는 유사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한다면 육아지원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외국 각국이 취업모 중심의 육아지원이 필요한 부모만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모의 취업이 입소 우선순위로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대리보육 필요성과 무관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종일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영아보육 지원 비용은 그 액수가 매우 크므로 효율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2010년까지의 육아지원 정책은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와 더불어 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목표가 우선 달성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책은 절대적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의 증대가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석(2001). 유치원 교육재정 분석 및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1~43.
- 강신욱·김안나(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혜·김미숙·이영·남기곤·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백성준·강경석(1995).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서울시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서혜애·김규태·권재현(2005).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서울시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한유경·장수명·허순영(2001).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예산현황 및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 연도). 유치원 현황.
- 김승권(2001). 최근 출산력 및 가족보건 수준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2004).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원·이혜영·배은주·허창수(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중해·조인숙·유정은 외(2001).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 김현숙(2006). 보육정책과 보육재정 지출방식에 대한 검토. 2006년도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홍중·김근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정(2005).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발전방향. 정책자료집 6. 열린우리당.
- 나정·김미숙(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실태 및 요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나정·류숙희·고미경·성화영(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유희정·김정래·김안나·박은실(2001).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천세영·장명림(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농림부(2006). 보도자료.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1997).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V), 제5차 대통령보고서.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4). 제1차 육아지원방안.
_____ (2005). 제2차 육아지원방안.
- 류정순(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노동사회, 2005. 11.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 백선희·김교성(2001). 아동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지원방식 연구. 보육발전기획단 공청회 자료.
-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제도 평가,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서문희·이상현·임유경·전도석(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산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 삼성경제연구소(2006). 소득 양극화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제547호.
-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제언.
- 서문희(2000). 보육비용 및 비용분담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4

- 호, 20~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01).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 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 서문희·김유경(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방안 수립. 경기도·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06). 자치단체 특수시책.
- _____(2006).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 _____(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 _____(각 연도). 보육통계.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희정·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이미화·장혜경·김경미·황정임·김영란·김영주·김혜금·나종혜·문혁준·박금희·박용임·이숙·이완정·류양임·이수현(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 이삼호·김주섭·김태종·나정·서문희·이영(2005). 인구고령화와 교육·인력개발.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현(2001). 보육인력 처우 개선방안. 21세기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연섭(1984). 사립유치원 표준 교육비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이정우(1997).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이혜영·류방란·김정원·장명립(2005).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류방란·장명립·김정원(2002). 2005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 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임재택·김은주(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부산).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_____(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새로마지플랜 2010.
- 전병유(2005).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고용전략의 모색.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통권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 정미라·천세영·신은수·문무경(2005).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비전 2010). 교육인적자원부.
- 정영숙(1996). 보육료 책정의 문제 및 합리적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집, 59~77.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정홍상(2005). 내년도 예산,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 재정포럼, 2005 10월호, 51~57. 한국조세연구원.
- 조홍식(1995). 영유아 보육시설 실태분석-운영관리 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논총, 제9집.
- 중앙교육심의회(1994). 유치원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중앙교육위원회.
- 통계청(2004). 2004년 임금구조 실태조사.
 _____(2004). 장래인구 특별추계.
 _____(각 연도). 가계조사 결과.
- 한규택(2005).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日本 全國保育協議會 編(2003). 保育年報.
- 日本 保育研究所(2006). 保育白書.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June 2005), Child Care.
 URL: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
-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각 연도).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4).
 FaCS Annual Report 2004~5.

-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childcare>.
- OECD(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ECD Country Note. URL: <http://www.oecd.org/eccc>.
- OECD(2001). Start Strong.
- OECD(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OECD Country Note. URL: <http://www.oecd.org/eccc>.
- OECD(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rance. OECD Country Note. URL: <http://www.oecd.org/eccc>.
-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ustralia, the Netherlands, Volume 1. URL: <http://www.oecd.org/eccc>.
-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Canada, Finland Sweden and United Kingdom, Volume 4. URL: <http://www.oecd.org/eccc>.
- OECD(2006).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OECD(2006). Start Strong II.
- Ozawa, Martha(2004). "Social Welfare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A Comparative Study", Family Relations Vol.53. 301~309.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Stockholm Social Insurance Office(2004). URL: <http://www.rfv.se>.
- 국세청 홈페이지: uta.go.kr
- 미국 헤드스타트 홈페이지: www2.acf.dhhs.gov
-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 www.dfes.gov.uk
- 영국 교육기술부 홈페이지: www.standards.dfes.gov.uk
- 영국 슈어 스타트 홈페이지: www.surestart.gov.uk
- 캐나다 페어 스타트 홈페이지: www.fairstart.ca

연구보고 2006-0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발행일 2006년 12월

발행인 이 옥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89-92396-01-5 93330